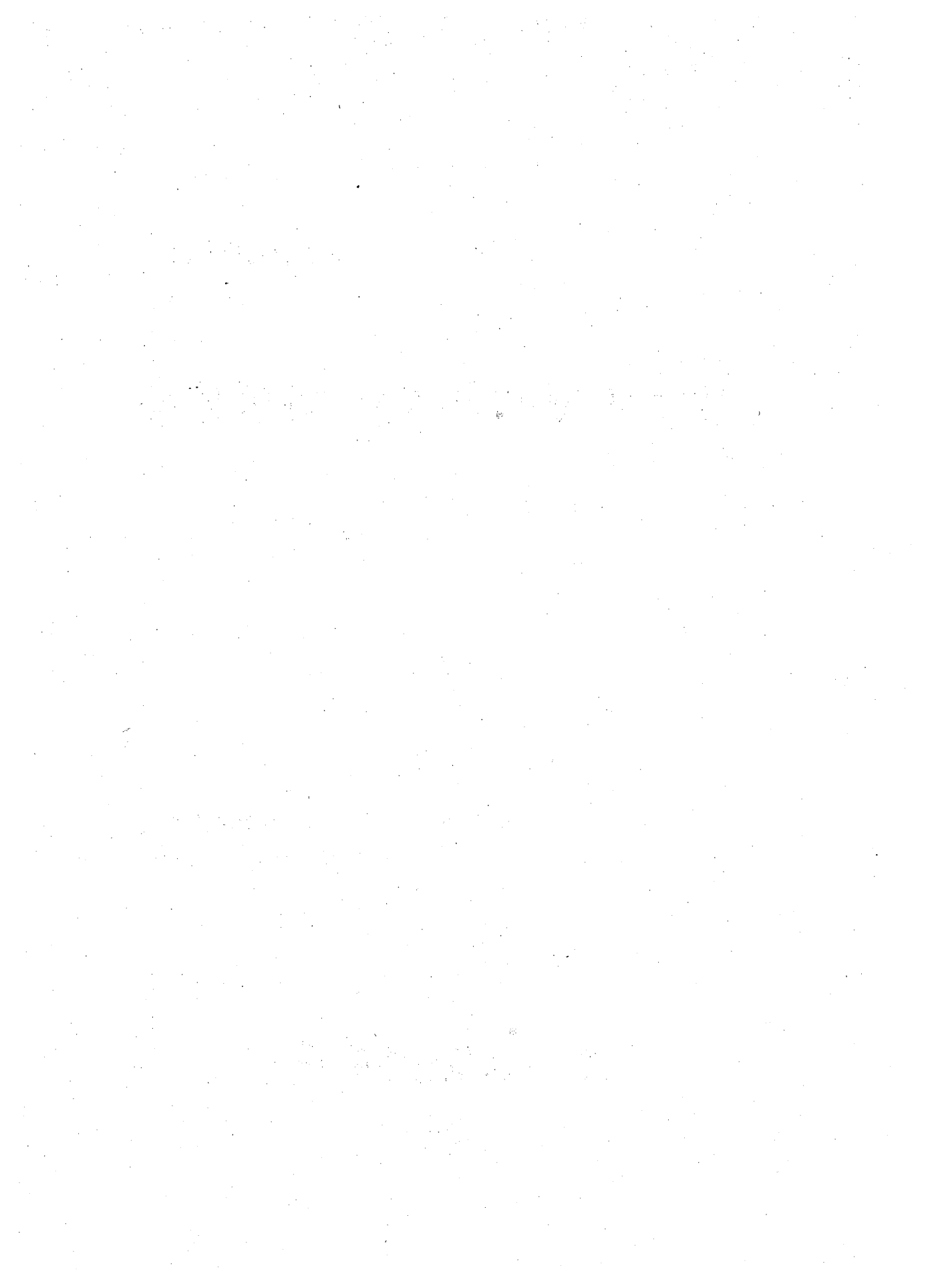


북한법제분석94-2

# 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

연구자 : 박 상 철(수석연구원)  
김 창 규(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發 刊 辭

남북한 분단이라는 한국적 상황하에서 북한법연구의 최종목표는 통일헌법안과 각 분야별 통일법제안의 마련에 그 목적을 둘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입법형식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고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북한법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없이 통일지향적인 목적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법은 제정주체나 효력발생요건 내지 그 범위가 우리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해당 법령의 제정이 없는 입법부재의 상태에서도 유사한 규범력이 발휘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법의 대체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북한법 존재형식의 독자성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와 같은 북한법의 특징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북한법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과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북한의 주요 입법분야와 그 입법목적 및 입법형식 등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북한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향후 통일전후시기에 예상될 수 있는 법체계상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방 직후 소군정기하에서 제정된 법령부터 최근(1994.10)에 이르기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법령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북

한의 헌법개정에 따른 분야별 입법동향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각종 법령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그 입법목적이나 동향에 대한 해설을 함으로써 이를 여과·해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북한법연구자나 북한관계실무자에게 북한법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라마지 않으며,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특수법제연구실의 박상철 수석연구원과 김창규 선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94. 12.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張明根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II. 소군정과 입법동향 .....	8
1.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형성 .....	8
2. 소군정기의 입법동향 .....	13
III. 1948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 .....	31
1. 1948년의 북한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 주요내용 .....	31
2. 헌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36
3. 행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43
4. 민사관계분야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85
5. 경제관계분야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97

IV. 1972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 .....	110
1. 1972년의 북한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	110
2. 헌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15
3. 행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22
4. 민사관계분야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70
5. 경제관계분야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82
V. 1992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 .....	200
1. 1992년의 북한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	200
2. 헌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208
3. 행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211
4. 민사관계분야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233
5. 경제관계분야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235
VI. 결론 : 북한법을 보는 방법 .....	245
※ 부록 :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의 강령·규약 ....	251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한 나라의 법제에는 약간씩 상이한 양상을 띠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의 모든 현실과 가치관이 대체로 잘 반영되어 나타나 있기 마련이다. 북한법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북한법제의 파악은 북한사회의 실상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비록 북한의 법이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sup>1)</sup>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북한의 법현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법연구의 대부분은 북한법을 지나치게 사회주의 국가의 법이론 내지 북한법이론의 특수성(주체사상 포함)에 집착하여 분석해 왔다. 특히 북한헌법의 연구에 있어서 북한의 헌법사와 사회주의 법이론 및 주체사상적 접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sup>2)</sup> 이는 북한법

- 
- 1) 방계문,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공화국 법은 우리 당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사회과학원 출판사(평양), 1964, 2면.
  - 2) 1992년 북한의 개정헌법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서 김영수, “북한사회주의 헌법의 주요개정내용과 그 특징”, 현대공법의 제문제<여산 한창규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삼영사, 1993, 102~134면; 장명봉, “북한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북한연구(1993년 봄호, 제4권 1호), 대륙연구소, 102~125면; 전광석, “북한헌법상 통치조직의 변천-1992년 개정북한헌법상의 통치조직”, 북한연구(1993년 여름호, 제4권 2호), 대륙연구소, 106~121면; 전인영, “헌법개정의 배경과 내용”, 북한의 개정헌법 연구,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1~46면; 김동환, “개정헌법의 구조와 특징”, 북한의 개정헌법 연구,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47~80면; 최영택, “개정헌법과 법문화”, 북한의 개정헌법 연구,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81~126면; 장석권, “북한헌법의 성립배경과 그 특성”, 한국헌법의 뿌리(한국헌법학회 학술논문발표 제1집), 한국헌법학회(1994. 12)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을 일률적으로 단정짓는 연구태도를 조장하여 심도있는 북한법제분석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헌법은 그 특성상 한 사회의 최고규범성과 정치적 결단을 주요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헌법연구가 사회주의 법이론과 주체사상의 이념성을 설명하는 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법의 연구경향은 북한의 사회주의 내지 주체사상의 이념과 논리를 가급적 충실히 분석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 그 밖의 북한법제연구의 목적지향성을 몰이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법연구는 단순한 지역연구나 비교법적 연구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헌법과 독일헌법의 연구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및 이론들을 착상하듯이 북한헌법에 대한 비교연구 내지 지역연구 또한 특정한 목적지향성이 있어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북한헌법연구는 향후 통일한국을 구성할 수 있는 통일헌법안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때에 보다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통일헌법의 구심력으로 향할 수 없는 북한헌법연구의 양산은 오히려 북한헌법의 비교법적 연구의 존재가치마저 희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sup>3)</sup> 이와 같은 연구자세는 북한법연구의 전반에 걸쳐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법제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히 북한의 현행법제와 법체계 및 그 연혁을 밝히거나 우리의 법제 내지 법체계와 단순비교를 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그 사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북한법제연구의 목표를 전제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1948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되기 이전,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질적 법적토대가 마련된 소군정기(1945년~1948년)부터 1992년의 북한헌법이 개정된 이후 1994년 10월 31일까지의 북한의 입법동향을 법분야별로 망라하여 소개함으로써 북한법제분석을 통한 북한사회의 구조와 실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둘째, 1948년·1972년·1992년 등 세차례에 걸쳐 대폭적인 헌법의 제

---

3) 박상철,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 법제연구(통권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154면.

정 및 개정을 한 북한의 헌법현실을 분석한 다음에 북한의 헌법이 하위 법령의 규범력확보의 근거 보다는 당정책의 방향설정 내지는 전환을 위한 존재근거가 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북한의 입법동향을 주요법령의 제정근거와 함께 해석하는 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북한법의 입법체계와 입법기술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셋째, 본 보고서는 북한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북한법의 입법체계와 입법기술적 특징 뿐만 아니라 북한법의 입법목적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북한법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능 및 역할과 북한법의 실체를 다양하고 심도있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넷째,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북한입법동향의 전반적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북한법을 보는 방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북한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해석론의 정립에 기여하도록 한다.

끝으로, 북한법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통일전후시기에 대비한 각 분야별 통합 내지 통일법제안의 마련에 있다고 볼 때에 본 보고서에서 북한의 입법분야·입법목적·입법형식 등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향후 통일전후시기에 예상되는 법체계상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① 소군정기의 법령(1945.8.15~1948.9.7), ② 1948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1948.9.8~1972.10.27), ③ 1972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1972.10.28~1992.4.8), ④ 1992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1992.4.9~1994.10.31)을 연구의 대상과 범위로 하는데, 북한법의 발전방향과 시기별 분류기준에 대하여는 국내의 법학자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학자까지도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문헌으로는 북한법에 대한 소련과 중공의 영향을 중심으로 ① 소련의 영향이 우세하던 시기

(1945년~1958년)<sup>4)</sup> ② 중공의 영향이 집중하던 시기(1958년~1960년) ③ 북괴 독자적인 것의 추구기(1960년 이후)로 나눈 것<sup>5)</sup>과 북한정세의 실질적 변화에 입각하여, ① 8.15해방 직후의 시기 ② 1948년 헌법의 제정·실시시기 ③ 6.25한국전쟁기 ④ 전후의 경제건설기 ⑤ 1972년 헌법의 제정·실시시기 등으로 분류한 것<sup>6)</sup>이 있다. 이와 같은 북한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시기별 분류방법은 북한법제의 실질적 입법배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북한법제의 전반적인 입법동향을 파악하는 근거를 헌법에 두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은 북한의 법학자들이 북한에서의 법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는 방법<sup>7)</sup>과 유사하여 시기별 북한법제의

4) 강구진 교수는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① 제도의 형성기(1945년~1948년) ② 1948년 9월 9일의 헌법기 ③ 한국동란기(1950년~1953년) ④ 사회주의에의 매진기(1953년~1958년)로 구분하고 있다(강구진, 북괴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 국토통일원, 1975).

5) 강구진, 북괴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 국토통일원, 1975.

6)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7) 북한의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확정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1980년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법의 발전단계를 사회주의건설과정에 맞추어 ① 민주주의적 법건설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시기(1945년까지) ② 민주개혁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독창적인 법의 제정집행시기(1946년~1953년) ③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인 법의 제정집행시기(1954년~1971년) ④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주체적인 법의 제정실시시기(1972년 이후)로 구분한 것(서창섭, 법건설 경험,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84), 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1930년~1945년) ②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시기(1945년~1947년) ③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1947년~1950년) ④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년~1953년) ⑤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1954년~1961년) ⑥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1962년~1972년) ⑦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1972년 이후)로 구분한 것(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1986) 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형사법제와 관련하여 ① 반제반봉건민주혁명시기(1947년까지) ② 사회주의에의 과도기단계(1947년~1950년) ③ 조국해방전쟁시기(1950년~1953년) ④ 전후복구건설시기와 공업화단계(1953년~1972년) 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기

고유성 내지 특수성을 밝히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북한법이 지향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법동향을 소군정기, 1948·1972·1992년의 북한헌법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헌법에 근거한 북한법제의 동향을 살피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법제의 시기별 분류에 이어 북한법령의 분야별 분류와 해설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북한법의 분야별 분류는 북한의 사회상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주요법령해설은 북한법의 시기별·분야별 특성을 전반적으로 잘 표현하는 법령을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북한의 법체계를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그 법령이 규제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통일원의 ①헌법 ②행정법 ③토지법 ④민법 ⑤가족법 ⑥형법 ⑦민사소송법 ⑧형사소송법 ⑨국제법 등의 분류<sup>8)</sup>, 법제처의 ①헌법 ②형법 ③형사소송법 ④민법 ⑤가족법 ⑥민사소송법 ⑦토지법 ⑧노동법 ⑨인민보건의법 ⑩어린이보육교양법 ⑪환경보호법 ⑫경제법 등의 분류<sup>9)</sup>, 대륙연구소의 ①헌법 ②법원·법무 ③행정일반 ④지방행정 ⑤치안 ⑥군사 ⑦재정·금융 ⑧농업·수산 ⑨양정 ⑩산업·건설·상업 ⑪교통·체신 ⑫교육·문화·과학 ⑬노동 ⑭보건·사회 ⑮사법·기타 등의 분류<sup>10)</sup>, 고려대학교 최달곤 교수의 ①헌법 ②행정법 ③경제법 ④노동법 ⑤협동조합법 ⑥민법 ⑦형법 ⑧민사소송법 ⑨형사소송법 ⑩국제법 등의 분류<sup>11)</sup>, 서울대학교 최종고 교수의 ①헌법분야 ②행정법분야 ③토지법분야 ④협동조합법분야 ⑤군사법분야 ⑥민법분야 ⑦가족법분야 ⑧상법분야 ⑨경제법분야 ⑩노동법분야 ⑪사회보장법분야 ⑫조세법분야 ⑬형법분야 ⑭소송법분야 ⑮조세

(1972년 이후)로 구분하는 것이 있다(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刑事法制, 日本論評社, 1988).

8) 통일원, 북한법에 관한 개괄적 연구, 1978.

9)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10)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1990.

11) 최달곤, “북한법의 체계”, 북한법 40년과 그 동향(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분야 ①사회보장법분야 ②조세법분야 ③형법분야 ④소송법분야 ⑤조세법분야 등의 분류<sup>12)</sup>가 있다.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모두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분류방법과 큰 차이는 없지만, 1993년에 본원에서 발간한 『북한법제관련문헌목록집』<sup>13)</sup>의 분류체계에 따라 북한법령을 크게 7개 분야의 대분류와 부문별 소분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즉, (1) 헌정관계는 ①헌법일반(근본원칙·법규범일반) ②기본권 ③권력구조(선거·인민회의·행정기관·군사기관 등의 구성·개폐) ④통일문제 등으로, (2) 국제·외무관계, (3) 행정관계는 ①행정일반(상훈·경축일의 제정 등) ②내무(중앙행정·지방행정의 집행, 행정구역의 변경 등) ③국방(동원·조달 등) ④재무(재정·조세·금융·전매·예산 등) ⑤농림수산(농업·임업·축산·수산·식량공급·현물세수납 등) ⑥건설 ⑦교통 ⑧체신 ⑨문교(교육·학술·문화·체육) ⑩과학·기술 등으로, (4) 민사관계는 ①민법일반 ②가족법 ③민사소송법 등으로, (5) 형사관계는 ①형법일반 ②형사소송법 ③법원·법무 등으로, (6) 경제관계는 ①경제(산업일반·도량형·천연자원 이용 등) ②상사(상업·가격 결정 등) ③교류협력 ④토지 등으로, (7) 사회관계는 ①사회보장(보건·사회보장일반) ②노동 등으로 분류·정리한다. 이 분류체계는 북한의 실정법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북한법에 대한 국내의 연구경향과 분야에 따랐다는 점에서 위의 분류방법들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법체계인식과 북한실정법의 체계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향후 남북한 법제의 통일 내지 통합안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류 및 정리와 함께 시기별·분야별 주요법령의 해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특성을 대변하는 법령을 선택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북한법은 그 입법형식에 있어서 우리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법은 헌법과 우리의 법률 내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령의 형식을 빌어 제정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

12)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3.

13)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제관련문헌목록집, 1993.



양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형식적 입법 보다는 실질적 입법에 주목하지 않으면 중요한 법규를 간과할 수 있다. 북한의 다양한 입법형식으로 나타난 법규정들의 제정주체를 살펴보면,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령을 포함한 법령은 최고인민회의 내지 주석이, 정령은 중앙인민회의에서, 결정은 정무원에서, 지시 등은 여러 국가기관에서 그 입법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양한 입법형식이라기 보다는 입법의 형식과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규약이 헌법보다 우선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국가의 특수한 입법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실질적 효력에서 우리나라의 법령 중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그 제정배경이 성문화된 법규를 선택하여 간략한 해설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자신의 법령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북한법의 입법동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법령의 입수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법령명을 입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부규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여 북한의 입법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따랐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방이후 북한지역에 소군정이 본격화되면서 1945년 8월 26일에 발표된 소련극동군 제25군 사령관인 치쓰짜꼬프(Ivan M. Chistiakov)대장의 포고문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정·시행된 북한의 법령들은 대륙연구소의 『북한법령집』<sup>14)</sup>에 수록된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이후(1989년1월1일~1994년10월31일)의 법령에 대하여는 한글판인 북한의 정부기관지인 『민주조선』·조선노동당의 당기관지인 『로동신문』<sup>15)</sup>과 일본판인 조선문제연구소의 『월간 조선자료』·(주) 조선통신사의 『일간 조선통신』에 게재된 법령들을 수집·정리하여 활용하였고, 또한 통일원·무역협회 등에서 발간된 북한개별 법령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14)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제1권~제5권), 1990.

15)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명(법률명 포함)을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고, 그 외는 우리나라의 맞춤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II. 소군정과 입법동향

### 1.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형성

1948년 8월 15일 해방이후 한반도에는 매우 심각한 정치 및 행정공백현상이 초래되었다. 특히 일제식민지하에서 항일독립투쟁을 하면서 성장해 온 다양한 민족해방진영이 공동의 목표아래 연합세력을 구축·규합하지 못함에 따라 해방과 동시에 38선 남북지역에 진주한 미·소 양군에 대처할 수 있는 구심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못하였다.<sup>16)</sup>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극동군 제25군 사령관인 치쓰짜꼬프(Ivan M. Chistiakov)는 1945년 8월 26일의 첫 포고문에서 '조선사람은 해방되었으며 그들의 장래의 행복은 조선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지만 이는 북한지역의 정권수립과정에서 소련군의 직접적인 군정의 형태를 배제하는 의미<sup>17)</sup>는 결코 아니며, 오히려 남한지역에 미군 총사령관인 맥아더(D. McArther)장군이 1945년 9월 7일에 군정실시를 취지로 한 포고 제1호 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있다. 소련 원수였던 I.M. 와시리에브스키와 N.G. 레베테프 소장의 증언<sup>18)</sup>대로 소련군의 대일전쟁 돌입시기(1945.8.9)부터 일본수비대 제3일본군 사령관의 서면명령형식의 항복때(1945.8.26)까지 북한지역에서 소군정의 주요임무는 민정의 형태

16) 해방 직후 한국의 정치적 소용돌이(the vortex)의 상황을 G.Henderson은 『Korea-The Politics of the vortex』 (Combridge, Havard Univ, Press, 1968)의 360~376면에서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합의가 없는 측면(non political concensus)에서 진단, 설명하고 있다.

17) 서대숙 교수는 「“정권수립과 변천과정”,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58면 이하」에서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을 소련 점령군과 김일성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파악한다.

18) 국토통일원, 조선의 해방(1987. 8), 3면~84면.

를 띤 소련공산당 추종세력을 정하여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는데 있었다. 당시 북한의 정치세력은 김일성의 갑산파 공산세력, 박헌영의 소련파 공산세력, 김두봉·무정의 연안파 공산세력, 현준혁의 국내파 공산세력, 조만식의 우익민족주의세력 등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결국 갑산파 중 김일성중심의 공산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sup>19)</sup>

이 과정에서 소군정기간 동안 북한지역의 법적 토대형성은 크게 사회주의국가의 건설과 김일성중심의 권력구조추구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지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은 포고 제1호 「치쓰짜꼬프대장의 포고문」, 포고 제2호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20개조정강」 등으로 그 기초와 골격을 형성하고, 통일적인 중앙주권기관의 수립을 역설하면서 구성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sup>20)</sup>는 김일성중심의 권력구조를 갖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두갈래의 시도는 1946년 「조선로동당」의 강령 및 규약이 채택되고, 「조선인민군」의 창설(1948.2)과 함께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수립·공포됨으로써 종료하였다.<sup>21)</sup>

이러한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에서 탄생한 최초의 입법은 1945년 11월 16일에 북조선사법국 포고 제2호로 나온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으로서,<sup>22)</sup> 해방이후 북한에서 효력을 상실한 일본제국주의의 법

19) 박헌영 중심의 소련파 공산세력의 완전숙청은,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완성된다.

20) 이 당시 '임시'라는 용어는 북한지역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 보다는 남북한 통일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된다는 장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21)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에 관한 주요 논저로는 서대숙, "정권수립과 변천과정",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김창순, 북한오십년사, 지문각, 1961;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양동안, "남북한 정부수립과정비교연구 I·II·III", 현대사회(제33·34·35호), 현대사회연구소; 김동운, 해방전후의 조선진상, 돌베개, 1984; 장복성, 조선공산당파쟁사, 돌베개, 1983;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6·1947·194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81 등이 있다.

령 가운데 그 성질상 정권수립과 조선인민들의 고유한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및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은 새로운 법령의 제정·공포 이전까지는 그 효력을 존속시켜 법령의 공백을 해소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sup>22)</sup> 또 이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시도는 사법제도의 개혁에서 시작되어 「裁判所組織에 關한 件(1945.11.23)」·「檢察所組織及 設置에 關한 件(1945.11.27)」·「辯護士의 資格監督 및 登錄에 關한 件(1945.11.28)」 등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밖에 재정·경제부문에서는 「연초전매법(1945.11.16)」·「산업국 임시조치시정요강(1945.12.8)」·「상업국 임시행정조치요강(1945.12.29)」·「상업국 임시행정조치요강에 관한 시행세칙(1945.12.29)」·「인삼배상가격결정에 관한 건(1946.1.4)」·「축산자금특별회계규칙(1946.2.4)」·「시·군축산사업특별회계규칙(1946.2.5)」, 농림수산부문에서는 「량곡접수 및 보관에 대한 추가지시(1946.1.26)」, 교통부문에서는 북조선 각도의 소관인 교통·운수에 관한 행정과 접수소속기관의 운영·관리사업의 일체를 북조선교통국에 인수관리하도록 한 「교통국 포고 제4호(1946.1.13)」, 형법부문에서는 「벌금액 개정에 관한 건(1946.1.1)」·「체형과 벌금병과에 관한 건(1946.1.1)」·「결정·지령·명령등 위반에 관한 건(1946.1.26)」·「농산물매상불응등 처벌에 관한 건(1946.1.26)」, 사회보장부문에서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를 강화할 데 대하여(1945.6.23)」·「전염병원직제 공포에 관한 건(1946.1.7)」 등이 제정·공포되었다.

22) 북한의 문헌에서는 북한법의 연원을 1932년 말부터 1933년 초에 김일성이 두만강 연안에서 만들었다는 「인민혁명정부」의 법으로까지 소급하여 설명하고 있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1986, 9면).

23) 동 포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朝鮮에서 其 效力을 喪失한 法令中 性質上 朝鮮新國家建設及 朝鮮固有의 民情과 條理에 符合치 않는 法令及 條項을 除外하고 其餘의 法令은 新法令을 發布할 時까지 各各 其 效力을 存續함”(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제1권, 1990, 171면).

그러나 북한의 입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46년 2월 8일에 북한 전지역에 지배력을 가진 통치기구로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조직되면서 부터이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정부의 각료에 해당하는 14명의 국·부장을 모두 공산당원이나 공산당의 간부 또는 친공산주의자로 구성<sup>24)</sup>하고 「친일적이며 반민주적 요소를 내포한 지방행정기구의 숙청, 산업·무역·교통의 정상화 회복, 재정제도의 개혁, 수공업의 발전·강화,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와 공장위원회의 창설, 교육제도의 개선, 반일적이며 진정한 민주정신을 인민들 사이에 함양하는 교양교육의 확장」 등을 당면과제로 하였다.<sup>25)</sup>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사회개혁추진의 기초이자 각 분야의 프로그램인 「20개조정강(1946.3.23)」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통치의 잔재숙청, 파쇼적·반민주주의적 정당·단체와 개인의 활동금지, 언론·출판·집회·신앙의 자유보장, 민주주의적 정당·노동조합·농민조합 및 기타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보장, 일반적·직접적·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한 참정권의 보장, 평등권의 보장, 공민의 재산권과 소유권보장, 민주적 재판기관의 구성, 공업·농업·운수·상업의 발전을 통한 인민의 복지향상, 대기업소·운수기관·은행·광산·산림의 국유화, 개인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보장·장려, 일본인·일본국가·매국노·소작지주의 토지를 몰수, 소작제의 철폐, 몰수토지의 농민에 무상분배, 관개업시설의 국가관리,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가격의 제정을 통한 투기업자·고리대금업자의 단속, 공정한 세납제 제정을 통한 투진적 소득세제의 실시, 하루 8시간의 노동과 최저임금제 보장,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고용금지, 13~16세의 소년들에 대한 6시간 노동제 실시, 로동자 등의 보험제 실시, 전반적 의무교육 실시와 인민교육제도의 개혁, 문화·과학·예술의 보호 및 인재의 육성, 국가병원의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의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하

24) 김창순, 북한오십년사, 지문각, 1961, 192면.

25) 장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12면.

고 있다.<sup>26)</sup>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20개조정강」의 구체화로서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7.30)」·「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1946.9.5)」·「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실시요강(1946.9.5)」·「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1946.8.10)」·「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46.10.4)」·「토지개혁법령 실시결산에 대한 결정서(1946.4.13)」·「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 대한 결정서(1946.6.24)」 등의 법령을 예시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노동자 및 사무원에 관한 노동법령, 중요산업의 국유화 법령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정강에 기초하여 제정·공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일제,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의 소유지, 지주(5정보 이상 소유)의 토지, 소작을 주고 있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도록 규정하고 산림·관개시설·과수원 등과 경작이 어려운 토지를 국유화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의 토지개혁은 북한지역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근절,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조선로동당규약(1946.8.30)」이 제정되는데, 이는 향후 실질적으로 북한사회를 통치하는 최고규범이 된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그후 1947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계승되었고 법령시행이 법령의 공포일 즉시 발효되도록 「법령시행기일에 관한 결정서(1947.2.3)」를 제정하여 보다 신속한 입법과정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주요한 입법으로서는 「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실시요강 및 정원에 관한 결정서(1947.3.24)」·「行政機構 及 定員檢閱委員會組織에 관한 決定書(1947.11.12)」·「지방행정구역변경에 관한 결정서(1947.11.12)」·「국영생산기관, 국영상업기관, 국영운수기관 및 소비조합들의 거래세 및 이익금 기타 국고

26)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제5권, 1990, 2~3면.

납부금확보에 관한 결정서(1948.5.4)·「비료배급에 관한 결정서(1947.10.27)」·「인민위원회 정치교원양성소설치에 관한 결정서(1947.6.20)」·「인민위원회 각국·부소속간부양성소규정(1948.7.10)」·「기술교육진흥에 관한 결정서(1947.6.20)」·「고무제품 및 면직물검사규정(1948.6.14)」·「도량형에 관한 임시규칙(1947.9.2)」·「지하자원, 삼림지역 및 하천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1947.12.22)」·「보건일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1947.8.29)」·「인민위원회 로동국 사회보험물자관리소 규칙(1947.10.14)」·「기업소, 사무소 내부정리규칙(1947.8.20)」·「로동보호에 관한 규정(1948.2.4)」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소군정기간 동안 북한의 입법은 향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토대를 형성할 주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 소군정의 포고문형식 보다는 「인민위원회」의 형태를 빌어 마치 이 시기에 외형상 군정이 아닌 민정이 이루어진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는 소련이라는 외국군의 주둔이 명확하고 군정 포고문의 효력이 그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방전 북한지역의 소군정시기는 민정이라는 외형적인 명분과 공산세력 중 소련추종세력<sup>27)</sup>이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과정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 2. 소군정기의 입법동향

국제법상 일제식민지 시기가 종료된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북한지역의 입법은 실질적으로 소군정의 주도하에서 이루어 졌다. 북한의 법적 토대가 형성된 이 시기에 제정·공포된 주요입법들을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은 소련파로 분류되지만, 이는 활동근거지나 인맥형성이 그 지역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지 ‘소련추종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b>〈기본원칙〉</b>  치쓰짜꼬프대장의 포고문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관한 규정 20개조정장 조선로동당강령 조선로동당규약 법령시행기일에 관한 결정서	  1945. 8.26 1945.11.16 1946. 3. 7 1946. 3.23 1946. 8.29 1946. 8.30 1947. 2. 3
	<b>〈기본권 관련〉</b>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초안에 대한 결정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공민증교부실시에 관한 세칙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 북조위결정 제57호에 의한 공민증교부사업 규칙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중 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6. 7.22 1946. 7.30 1946. 8. 9 1946. 8. 9 1946. 9.14 1947. 3. 7 1947. 3.31
	<b>〈권력구조 관련〉</b>  임시인민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 실시요강 임시인민위원회의 사업결산보고에 대한 인 민회의의 결정서 임시인민위원회의 상업관리국폐쇄 결정서 임시인민위원회의 식량관리국폐쇄에 관한 결정서 량정부기구결정에 관한 건 임시인민위원회 간부부신설에 관한 결정서 세무서폐쇄에 관한 결정서 도·시·군·면·리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 정에 대한 결정서	  1946. 3. 6 1946. 3. 6 1946. 5.25 1946. 5.25 1946. 7.10 1946. 7.10 1946. 8. 2 1946. 9. 5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도·시·군·면·리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실시요강	1946. 9. 5
	면·군·시·도인민위원회선거에 대한 임시인민위원회 제2차 확대위원회의 결정서 로동부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6. 9. 5 1946. 9.14
	면·군·시 및 도인민위원회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	1946. 9.14
	임시인민위원회 무역위원회조직에 관한 결정서	1946. 9.20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대한 선전실설치에 대한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서	1946. 9.21
	임시인민위원회 법령공보발행에 관한 건	1946. 9.23
	선거준비사업에 관한 긴급지시의 건	1946.10.10
	도·시·군·면·리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실시요강중 개정에 관한 건	1946.10.18
	각도·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임명 승인에 대한 결정서	1946.11. 5
	서기장 사무집행에 관한 건	1946.11.18
	민주선거총결을 승인하는 결정서	1946.11. 8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속시킴에 관한 결정서	1946.11. 8
	중앙기상대직제	1946.11.19
	임시인민위원회 제3차확대위원회의 김일성 위원장의 <<민주선거의 총결과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에 관한 결정서	1946.11.26
	임시인민위원회 기획국설치에 관한 건	1946.12.23
	각급인민위원회 위원우대와 책임에 관한 규정의 건	1946.12.30
	면 및 리(동) 인민위원회위원 선거에 관한 규정의 건	1947. 1. 7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임시인민위원회의 면 及 리(동) 인민위원회의 위원선거에 관한 건	1947. 1. 7
	임시인민위원회 무역위원회폐지에 관한 결정서	1947. 1. 9
	면 및 리(동) 인민위원회위원 선거규정의 추가 及 삭제에 관한 결정서	1947. 1.11
	검찰소를 임시인민위원회에 직속시킴에 관한 결정서	1947. 1.24
	임시인민위원회 료동국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7. 1.24
	인민회의에 관한 규정	1947. 2. 4
	도·시·군인민위원회대회 대표선거에 대한 규정	1947. 2. 4
	도·시·군인민위원회대회소집에 대한 결정서	1947. 2. 4
	도·시·군인민위원회의 대표 심사보고에 대한 결정서	1947. 2.18
	인민위원회위원선거의 총결과 금후의 중심 임무에 관한 결정서	1947. 3.22
	도·시·군·면·리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실시요강 및 정원에 관한 결정서	1947. 3.24
	농림국 립산부신설에 관한 결정서	1947. 5.29
	시·도인민위원회와 내무서와의 관계에 대하여	1947. 6.20
	재정국 경영계산연구회 규정	1947. 8.23
	인민위원회 및 도·시·군시경영부·과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7. 8.27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90호, 제101호, 인민위원회 결정 제19호, 제20호 폐지에 관한 결정서	1947. 8.27
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의 위원들이 선거자들 앞에 자기사업을 총결보고하는데 관한 결정서	1947.10. 4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行政機構 及 定員檢閱委員會組織에 관한 決定書	1947.11.12.
행정관계	<b>&lt;행정일반&gt;</b>	
	학생절제정에 관한 건	1946. 8.21
	11월 3일을 민족의 명절로 제정하는 결정서	1946.11. 8
	행정원복무준칙	1946. 6.15
	<b>&lt;내무&gt;</b>	
	려관영업단속규칙	1946. 6. 4
	화약류단속령	1946. 8. 1
	화약류단속령 시행규칙	1946. 8. 1
	火藥類製造·試驗·變形 及 配分構造에 관한 規定	1946. 8. 1
	원산시·안변군·문천군을 강원도로 편입하는 결정서	1946. 9. 5
	평양특별시정에 관한 결정서	1946. 9. 5
	평양특별시정의 구제도실시에 관한 건	1946. 9.16
	영평군 폐합에 관한 건	1946.12. 2
	원산시·문천·통천·고성·양양군 인민위원회농산과내 수산계설치에 관한 건	1946.12. 2
	大同, 中和 及 平原郡行政區域變更에 관한 決定書	1947. 4. 8
	인민위원회 법령 제20호 결정서 일부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7. 4.14
	수렵에 관한 규정	1947. 4.26
	수육판매영업단속에 관한 명령	1947. 5.15
	풍수해방지대책위원회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7. 6.28
지방행정구역변경에 관한 결정서	1947.11.12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b>&lt;재무&gt;</b>	
	연초전매법	1945.11.16
	인삼배상가격결정에 관한 건	1946. 1. 4
	축산자금특별회계규칙	1946. 2. 4
	시·군축산사업특별회계규정	1946. 2. 5
	국세징수에 관한 건	1946. 3.23
	1946년 제2기(4월~6월) 세금징수에 관한건	1946. 4. 1
	농민은행설립에 관한 법령	1946. 4. 1
	엽연초배상가격에 관한 건	1946. 4. 1
	農民銀行設立에 관한 機關 及 節次	1946. 4. 4
	농민은행에 대한 제세면제에 관한 건	1946. 5. 2
	적산건물관리에 관한 결정	1946. 6.18
	세액산정에 관한 건	1946. 6.20
	아편배상가격인상에 관한 건	1946. 7. 1
	전매관계법령중 단속관계조항에 한한 임시 조치에 관한 건	1946. 7. 1
	지적사무제수수료개정의 건	1946. 7.20
	특수금융기관정리에 관한 결정서	1946. 8. 2
	회계규정	1946. 8.12
	市·面 及 人民學校維持費의 臨時負擔金徵收에 관한 件	1946. 9.11
	엽연초배상가격개정에 관한 건	1946.10. 1
	물품세법	1946.10. 5
	영업세과세종목추가에 관한 결정서	1946.10.19
	중앙은행에 관한 결정서	1946.10.29
	1946년도 세금징수대책에 관한 건	1946.11.25
	物品去來 及 現金節用에 관한 決定書	1946.11.25
	물품세법개정의 건	1946.11.25
	各 行政機關·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所要 人員定數 登錄에 관한 件	1946.12. 3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國營企業體決算 及 國有財産現在量調査에 관한 件	1946.12.23
	행정기관·국유기업장 및 기타 일체국영기관의 교제비전폐에 관한 건.	1946.12.23
	各 行政機關·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定員 登錄에 관한 細則 改正의 件	1946.12.30
	금융기관 채권소멸시효정지에 관한 결정서	1947. 2. 3
	1947년도 종합예산에 관한 결정서	1947. 2.27
	가옥세법	1947. 2.27
	거래세법	1947. 2.27
	대지세법	1947. 2.27
	도축세법	1947. 2.27
	등록세법	1947. 2.27
	마권세법	1947. 2.27
	물품세법	1947. 2.27
	부동산취득세법	1947. 2.27
	세금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서	1947. 2.27
	소득세법	1947. 2.27
	수입인지법	1947. 2.27
	시·면유지세법	1947. 2.27
	시장세법	1947. 2.27
	음식세법	1947. 2.27
	인민학교세법	1947. 2.27
	차량세법	1947. 2.27
	1947년도 예비비보충의 건	1947. 3.20
	국영거래세징수규칙	1947. 5. 2
	리익공제금징수규칙	1947. 5. 2
	정기적 통계보고에 대한 제반규정	1947. 8.20
	세금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서 및 거래세법중 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7. 8.27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저금소설치에 관한 결정서 各 行政機關·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所要 人員定數 登錄에 관한 件 改正의 件 국영생산기관, 국영상업기관, 국영운수기 관 및 소비조합들의 거래세 및 이익금 기 타 국고납부금확보에 관한 결정서	1947.11.12 1947.12. 3 1948. 5. 4
행정관계	<b>〈농림수산〉</b>  량곡접수 및 보관에 대한 추가지시 가출시장령 임시인민위원회 식량대책에 대한 결정서 평안북도내에서의 가축우역전염병과 투쟁 할 대책에 대한 건 임시인민위원회 식량대책에 대한 결정서 시행규칙 춘계과중준비에 관한 결정서 가축전염병예방령 가축전염병예방령 시행규칙 상전관리령 상전관리령 시행세칙 립야관리경영 결정서 립야관리경영기관의 직제 립야관리령 가축위생연구소직제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 립야관리령위반자처벌규칙 1946년 추과맥류준비에 관한 결정서 곡물보관에 관한 세칙 現物稅徵收書手交 及 現物稅納付規則 평과검사규칙 평과검사규칙시행세칙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 위반자처벌규칙 목재기업소(트레스트) 설치에 대한 결정서 농업현물세실시에 伴한 제세면제에 관한 건 곡물검사실시에 관한 세칙	1946. 1.26 1946. 2.10 1946. 2.27 1946. 2.27 1946. 3. 6 1946. 3.15 1946. 4.25 1946. 4.25 1946. 5.25 1946. 5.25 1946. 6. 4 1946. 6. 4 1946. 6. 4 1946. 6. 6 1946. 6.27 1946. 6.27 1946. 7. 4 1946. 7. 5 1946. 7. 5 1946. 7.15 1946. 7.20 1946 .7.22 1946. 7.26 1946. 8. 5 1946. 8. 8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농업현물세 경리사무요강에 관한 결정서	1946. 8.12
	량곡관리특별회계규정	1946. 8.12
	蔬菜及特用作物其他에 대한 現物稅徵收에 관한 件	1946. 8.12
	소비조합의 량곡수매에 관한 결정서	1946. 8.20
	우역방역에 관한 결정서	1946. 8.21
	란곡종마목장직제	1946. 8.24
	과양된 적산관계축산시설부흥에 관한 결정서	1946. 9. 1
	밀·보리·감자 등 조기수확물현물세징수에 관한 임시인민위원회 제2차확대위원회의 결정서	1946. 9. 5
	관개시설 국가경영 결정서	1946. 9. 9
	棉花·亞麻及蔬菜의 現物稅徵收에 관한 件	1946. 9.11
	國營精米所及倉庫運營에 관한 決定書	1946. 9.20
	農業現物稅로 徵收한 穀物에 대한 拂下及配給價格에 관한 決定書	1946. 9.26
	비료취체임시조치법	1946. 9.26
	곡물의 자유매매에 대한 결정	1946.10. 4
	糧穀保管倉庫, 搗精工場及保管糧穀에 관한 災害相互補償要綱	1946.10.14
	등급별전표제 식량배급제도실시에 관한 건	1946.10.19
	식량단속 포고	1946.11. 8
	현물세완납열성대운동에 대한 결정서	1946.11. 8
	식량의 소비절약단속에 대한 포고	1946.11.11
	농업현물세납입에 관한 결정위반에 대한 대책 결정서	1946.11.18
	농업현물세 량곡접수 및 보관에 대한 추가 지시	1946.11.26
	추기수확물징수에 관한 임시인민위원회 제 3차확대위원회 결정서	1946.11.26
	식량배급대상인구의 허위보고와 이중수배자에 대한 결정서	1946.12. 7
	량곡수매사업에 관한 건	1946.12.26
	식량배급에 관한 건	1946.12.26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 관계	고공품수급조정관리령	1947. 1. 6
	마적령	1947. 1. 6
	식량배급조례	1947. 1. 6
	國家糧穀輸送節次 及 輸送事故責任負擔限界에 對한 決定書	1947. 1. 9
	도장규칙에 관한 결정서	1947. 1. 9
	면양보호·증식에 관한 규정	1947. 1. 9
	사료관리임시조치령에 관한 결정서	1947. 1. 9
	穀物의 自由賣買 及 搬出入에 對한 指令	1947. 1.28
	국가량곡 보관단속에 관한 결정서	1947. 2. 3
	량곡도정단속에 대한 포고	1947. 2. 3
	량곡배급위반자단속에 관한 법령	1947. 2. 3
	경지실태조사에 관한 지시	1947. 2. 7
	수의사에 관한 규정	1947. 2.20
	수산기업소규정	1947. 3.11
	식수주간에 관한 결정서	1947. 3.11
	국가량곡 보관창고에 관한 규칙	1947. 3.20
	산림에 관한 결정서	1947. 3.22
	농업현물세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7. 5.12
	비료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서	1947. 5.29
	농업현물세개정에 관한 결정서에 대한 세칙	1947. 6. 1
	농업현물세징수규칙	1947. 6. 1
	우적령	1947. 6.13
	공동리용림에 관한 규칙	1947. 7. 8
	민영기업소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량곡	1947. 7.12
	배급가격에 관한 결정서	1947. 7.12
	조기작물현물세 징수사업진행에 관한 보고	1947. 7.12
	에 대한 결정서	1947. 7.18
	과실검사규칙	1947. 7.18
	과실현물세징수에 관한 세칙	1947. 7.18
	국유중빈마대부규칙	1947. 8.19
	비료배급에 관한 결정서	1947.10.27
수산제품검사규칙	1948. 4.26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 관계	<b>〈교통〉</b> 교통국포고 제4호 교통안전에 관한 규칙 철도운영에 관한 규정 철도안전에 관한 규칙 자동차단속규칙 교통국직원직무규정 철도운수에 관한 규칙 항만부두에서의 선박작업의 표준 해운처에 관한 상황에 관한 임시규칙 해운처에 관한 임시규칙	1946. 1.13 1947. 7. 2 1947. 8.12 1947. 8.12 1947. 8.29 1947. 9.25 1947. 9.25 1948. 9. 2 1948. 9. 2 1948. 9. 2
	<b>〈체신〉</b> 체신국포고 제2호 公有及日本人所有特定郵便局 財産管理에 관한 件 우편·전신·전화에 관한 체납료금의 징수 에 관한 건 우편위체규칙 통신사조직에 관한 건 체신국포고 제1호 시설전신전화에 관한 건 정기간행물송달규칙 전보에 관한 규정	1946. 4.16 1946. 6.18 1946. 8.21 1946.12. 3 1946.12. 5 1946.12.19 1947. 1.28 1947. 3. 1 1948. 8. 5
	<b>〈문교〉</b> 학교사업개선책에 대한 건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 규칙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수속 교과서편찬·인쇄에 관한 결정서 예술위원회조직에 관한 건 종합대학 창립준비위원회조직에 관한 건	1946. 3.25 1946. 4.29 1946. 4.29 1946. 4.29 1946. 5.12 1946. 5.27 1946. 5.29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경리학교개설에 관한 건	1946. 6. 4
	중앙정치간부학교신설에 관한 결정서	1946. 6. 6
	전문학교대학학생 장학금수여에 관한 결정서	1946. 6.20
	교원대학(사범전문)설립에 관한 건	1946. 7. 7
	보안간부학교설립에 관한 건	1946. 7. 8
	전문학교(중앙기술전문학교)설립에 관한 건	1946. 7. 8
	종합대학 창립에 관한 건	1946. 7. 8
	동기농촌문맹퇴치운동에 관한 건	1946.11.25
	생산기업장지배인 강습소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6.11.30
	로어강습소설치에 관한 건	1946.12. 5
	학교교육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에 대한 결정서	1946.12.18
	국립극장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7. 1. 9
	조선어문연구에 관한 결정서	1947. 2. 3
	국립영화촬영소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7. 2. 6
	조선력사편찬회에 관한 결정서	1947. 2. 7
	농업간부양성소창설에 관한 결정서	1947. 3.11
	각급 지방인민위원회 지도간부 준비에 대한 단기강습실시에 대한 결정서	1947. 4. 8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체계에 관한 결정서	1947. 4. 8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체계에 관한 규칙	1947. 4. 8
	인민위원회 정치교원양성소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7. 6.20
학교교육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 일부개정에 대한 결정서	1947. 6.28	
인민위원회 각국·부소속간부양성소규정	1948. 7.10	
	<p data-bbox="382 1319 589 1354"><b>&lt;과학·기술&gt;</b></p> <p data-bbox="382 1387 722 1421">기술자확보에 관한 결정서</p> <p data-bbox="382 1421 921 1456">기술자확보에 관한 결정서시행에 관한 건</p> <p data-bbox="382 1456 893 1491">工業技術者査定及檢定規定에 관한 件</p> <p data-bbox="382 1491 792 1526">중앙연구소 설치에 관한 결정서</p> <p data-bbox="382 1526 823 1561">공업기술자사정 및 검사규정 세칙</p> <p data-bbox="382 1561 750 1595">기술교육진흥에 관한 결정서</p> <p data-bbox="382 1595 750 1630">고무제품 및 면직물검사규정</p>	<p data-bbox="998 1387 1138 1421">1946. 8.17</p> <p data-bbox="998 1421 1138 1456">1946. 8.17</p> <p data-bbox="998 1456 1138 1491">1946.10. 2</p> <p data-bbox="998 1491 1138 1526">1947. 2. 7</p> <p data-bbox="998 1526 1138 1561">1947. 2. 8</p> <p data-bbox="998 1561 1138 1595">1947. 6.20</p> <p data-bbox="998 1595 1138 1630">1948. 6.14</p>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민사관계	<b>&lt;가족법&gt;</b> 朝鮮戶籍 及 寄留手數料規定改正에 관한 件 조선인 일본인간의 리혼, 리록 및 복적에 관한 건 북사포고 제14호 개정에 관한 건 호적관계수수료개정에 관한 건 호적사무 취급에 관한 결정서	1946. 3.21 1946. 5.14 1946. 8.12 1946. 9.20 1947. 4. 8
	<b>&lt;민사소송법&gt;</b> 공탁사무임시처리규정	1946. 4.15
형사관계	<b>&lt;형법일반&gt;</b> 벌금액 개정에 관한 건 체형과 벌금병과에 관한 건 결정·지령·명령등 위반에 관한 건 농산물매상불응등 처벌에 관한 건 조세채납처벌에 관한 건 과료액개정에 관한 건 추우절도범처벌에 관한 건 임시인민위원회포고 제11호중 개정의 건 국가·사회단체·소비조합재산보호에 관한 법령 뇌물 및 기타 직무태만처벌에 관한 법령 개인재산보호에 관한 법령 생명, 건강, 자유, 명예보호에 관한 법령 봉건유습잔재를 퇴치하는 법령 인민보건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법령 果實現物稅滯納 及 脫稅者罰則에 관한 決 定書 자유형각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6. 1. 1 1946. 1. 1 1946. 1.26 1946. 1.26 1946. 2.16 1946. 3.11 1946. 3.15 1946. 7.26 1946.12.16 1946.12.26 1947. 1.14 1947. 1.14 1947. 1.24 1947. 1.24 1947. 1.27 1947. 2. 3
	<b>&lt;형사소송법&gt;</b> 사법기관의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 檢察所豫審 及 保安機關의 刑事事件審理에 관한 法令 <<사법기관의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중 추가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6.05.14 1946.06.20 1947.02.03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형사관계	<b>&lt;법원·법무&gt;</b>	
	재판소조직에 관한 건	1945.11.23
	檢察所組織 及 設置에 관한 件	1945.11.27
	辯護士의 資格監督 及 登錄에 관한 件	1945.11.28
	임시인민위원회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1946. 3. 6
	임시인민위원회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증보	1946. 4.19
	임시인민위원회결정서	1946. 6. 8
	수수료, 일당 등 금액개정에 관한 건	1946. 6.20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중 개정의 건	1946. 7. 9
	판사선거에 관한 결정서	1947. 1.14
	공선변호사보수에 관한 건	1947. 1.20
	참심원 일당금에 관한 건	1947. 1.20
	변호사에 관한 규정(1947년)	1947. 2. 7
	<<임시인민위원회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중 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7.8.27
참심원의 재판활동참가협조에 관하여	1948. 2.12	
경제관계	<b>&lt;경제&gt;</b>	
	산업국 임시조치시정요강	1945.12. 8
	석탄관리령	1946. 5. 7
	산업경제협의회령	1946. 7.13
	공업허가령	1946. 7.24
	도량형임시조치요강	1946. 7.27
	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1946. 8.10
	제12차 임시인민위원회 결정서	1946. 8.10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	1946.10. 4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燃料改良・増産 及 輸送力増強에 관한 決定書	1946.11.23	
	국영기업장 관리령	1946.11.30	
	홍남지구인민공장에 지령한 생산계획완수를 위한 결정서	1947. 1.11	
	1947년 제1/4분기 생산국산하 국영기업소 산업계획에 관한 결정서	1947. 1.28	
	도량형통일준비에 관한 결정서	1947. 6.20	
	인민위원회결정서 제37호내용 일부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7. 7.12	
	興南肥料工場 及 遂安鑛山勞働者・技術者 및 事務員들의 解放2周年紀念増産突擊運動展開 呼訴에 대한 決定書	1947. 7.12	
	도량형에 관한 임시규칙	1947. 9. 2	
	도량형기 및 계량기의 구조규칙	1947. 9.18	
	지하자원, 삼림지역 및 하천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	1947.12.22	
	원동기단속규정	1948. 2. 3	
	생활필수품검사소규정	1948. 6.14	
		<b>〈상사〉</b> 상업국 임시행정조치요강 상업국 임시행정조치요강에 관한 시행세칙 상업기관에 관한 법령 상업기관에 관한 법령에 관한 시행세칙 상사·회사설립인가방침에 관한 건 내시 상업조합령 산업 및 상업발전에 관한 법령 가격표시규정에 관한 건 상업등기공고료에 관한 결정서 상점허가제실시에 관한 포고	1945.12.29 1945.12.29 1946. 4.13 1946. 6.15 1946. 7. 4 1946. 7.13 1946.11.25 1947. 1.28 1947. 2. 3 1947. 2. 3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인민시장 규정실시에 관한 포고 상업조합령취소에 관한 결정서 물자 반입반출에 관한 건	1947. 2. 3 1947. 3.11 1947. 6. 1
	<b>〈토지〉</b> 토지개혁실시에 대한 임시조치법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관한 결정서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 토지개혁법령 실시결산에 대한 결정서 토지소유권 증명서교부에 관한 세칙 토지개간법령 垡地 及 雜種地에 관한 決定書	1946. 3. 5 1946. 3. 5 1946. 3. 7 1946. 3. 8 1946. 4.13 1946. 5.22 1946.11. 1 1947. 3.22
사회관계	<b>〈사회보장〉</b>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를 강화할 데 관하여 전염병원칙제 공포에 관한 건 무면허의 의료약금지에 관한 포고 各 都市·村落·清掃·美化 及 傳染病豫 防에 관한 臨時人民委員會 決議文 위생검사원규칙 인민보건소조직제 인민소독소조직제 리발사영업단속규칙 리발원시험규칙 목욕탕영업단속규칙 음식점영업단속규칙 오물청소규칙 고등의학기술자양성에 관한 건 호열자방역에 관한 결정서 수재구제사업에 관한 건 임시인민위원회 코레라방역에 관한 결정서	1945. 6.23  1946. 1. 7 1946. 3.27 1946. 4. 1  1946. 5.25 1946. 5.25 1946. 5.25 1946. 6. 4 1946. 6. 4 1946. 6. 4 1946. 6. 4 1946. 7. 4 1946. 7. 8 1946. 7.12 1946. 7.18 1946. 7.29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사회관계	제6차 국·부장회의의 8.15해방 기념행사에 관한 결정서	1946. 8. 2
	사회보험납부절차에 관한 규정	1946. 9.28
	적십자사조직에 관하여	1946.10.18
	전염병방역에 관한 결정서	1946.11.10
	로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개편에 관한 결정서	1946.12.19
	사회보험법	1946.12.19
	일본서 귀국하는 조선인민들에 대한 건	1946.12.26
	나료양소직제 공포에 관한 건	1947. 1. 7
	위생검사원규칙 일부개정 및 위생검사원 규칙 시행세칙	1947. 1.21
	사회단체 및 공리단체(조합직맹등) 기타	1947. 2. 7
	일체 단체의 등록에 관한 결정서	
	직업병규칙	1947. 3.20
	사회보험료수납법	1947. 3.24
	1947년도 료양휴양사업조직에 관한 결정서	1947. 3.31
	약사에 관한 규정	1947. 3.31
	위생사업에 관한 결정서	1947. 3.31
	의사 및 치과 의사에 관한 규정	1947. 3.31
	약품 및 위생연구소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7. 4. 8
	사회보험법중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	1947. 4.14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결정서	1947. 5.21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1947. 5.21
	하계방역사업강화를 위한 결정서	1947. 5.29
	구급소규정	1947. 6.13
	탁아소규칙	1947. 6.13
	탁아소직제	1947. 6.13
	치료양규칙	1947. 6.20
	해항검역에 관한 규정	1947. 6.22
	병원, 암블라토리(의원) 및 폴리클리닉(진료소) 규정	1947. 7.10
	디스판셀(본건소) 규정	1947. 7.14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펜셀(조의사) 시험규정 간이암블라토리(진료소) 및 간이산원규정 간호원시험규정 산업의학연구소규정 결핵진료소규정 야간의학강습소규정 보건일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 의약품배급소규정 간호원학교규정 디스판셀 규정중 일부개정의 건 인민위원회로동국 사회보험물자관리소 규칙 위생검열원규정 위생검열원규정 시행세칙	1947. 8. 2 1947. 8. 8 1947. 8.11 1947. 8.12 1947. 8.23 1947. 8.23 1947. 8.29 1947. 9. 1 1947. 9. 8 1947.10. 2 1947.10.14 1948. 2. 4 1948. 5.20
사회관계	<b>〈노동〉</b> 臨時委員會 各 民主主義政黨 及 社會團體 代表者宴席會議 勞働者 및 事務員에 대한 勞働法令草案에 대한 決定書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 대 한 결정서 勞働者 及 事務員俸給에 관한 決定書 로동소개소설치에 관한 결정서 산업운수부문의 도급제 및 로동능률제고 를 위한 특별배급제와 상금제에 관한 결 정서 해로운 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로동 및 보충적 휴가를 주어야 고용할 직업종 목에 관한 규정 기업소, 사무소 내부정리규칙 평균임금계산규정 로동보호에 관한 규정 사무원 및 기술자봉급개정에 관한 결정서 산업·운수·체신로동자봉급개정에 관한 결정 로동자·사무원들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비조합사무원봉급개정에 관한 건 로동수급 및 정착에 관한 규정	1946. 6.20 1946. 6.24 1946. 8.18 1947. 3. 4 1947. 5.29 1947. 6.12 1947. 8.20 1947. 8.29 1948. 2. 4 1948. 4. 9 1948. 5.27 1948. 6. 1948. 7.18 1948. 8.



### Ⅲ. 1948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

#### 1. 1948년의 북한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 주요내용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은 1948년 9월 8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동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성립되었다.

1947년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부터 계승·개편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헌법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31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한반도 전체에 적용될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이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작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 제출하여 그 초안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1948년의 북한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이다.

1948년의 북한헌법은 사회주의적 발전단계 중 초기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인정과 토지·중소상공업의 소유 및 상속을 허용하는 제8조의 조항에서 나타나듯이 아직은 사회주의헌법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헌법에 해당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북한사회가 사회주의로의 발전과정에서 완전한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으로서 마르크스가 예정한 공산혁명의 사회적 기반인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사회'의 단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혁명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마치 러시아혁명 후 공산혁명의 사회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최초의 사회주의헌법((1918.1.12)이 레닌의 독자적인 국가 및 법이론의 탄생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처럼 북한의 이 헌법도 처음부터 김일

성주의라고 불리우는 주체사상과 수령론 및 유일체계에 근거한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으로 이어지는 운명을 안고 있었다. 1948년의 북한헌법은 이러한 사회주의 발전단계론적 특성외에도 정치현실에 있어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정치적 헤게모니의 다툼이 있었다. 당시 북한에는 김일성중심의 갑산파와 중국공산당 또는 소련군과 운명을 같이한 연산파 및 소련파, 그리고 국내의 조선공산당파가 각각의 세력을 형성하여 1948년의 북한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북한사회를 보는 그들의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특히 「토지소유제한의 범위」·「중소상공업의 허용여부」 등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그 당시에 소련파는 부르조아가 다시 등장할 여지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조선공산당파와 김일성의 갑산파는 소련의 경우는 부르조아를 청산하는 사회주의혁명의 단계에 있지만 조선의 현실은 친일파와 같은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고 봉건제도의 유습을 청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키야 할 필요한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1948년의 북한헌법은 대체적으로 조선공산당파와 김일성의 갑산파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초기형태의 사회주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과 더불어 반(半)봉건적·반(半)자본주의적·반(半)사회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헌법이 되었다.<sup>28)</sup>

28) 이와는 다소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1948년의 북한헌법은 1918년의 러시아 헌법(레닌헌법)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구조를 어느 정도 같이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1936년 12월 5일에 제정된 소련의 이른바 사회주의헌법(스탈린헌법)을 거의 모방하고 있다는 견해(김운용, “북한헌법질서의 이론과 실제”, 북한법률체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36~37면, 전광석, “북한헌법상통치조직의 변천-1992년 개정북한헌법상의 통치조직”, 북한연구(1993년 여름호, 제4권 제2호), 대륙연구소, 110면)와 당시를 풍미하던 조류에 따라 1948년의 북한헌법은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사회는 해방후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미숙한 상황에서 나타난 「인민민주주의단계의 헌법」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단계의 헌법인 1936년의 소련헌법(스탈린헌법)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는 견해(최송화, “헌법과 통치구조”, 북한개론, 을유문화

1948년의 북한헌법은 총 10장 10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의 북한헌법은 제1장에서 「근본원칙」으로서 10개조의 총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체(國體) 및 정체(政體)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밝히고(제1조), 주권은 명목상이나마 인민에게 있음을 명시하되 그 주권의 행사는 인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고(제2조), 주권대표기관의 선거는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제3조),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 자기사업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선거자는 대의원의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4조), 생산수단의 소유는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에게 인정하며(제5조), 법령이 규정한 일부 개인소유(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기업, 기업소, 중소기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와 그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공민의 기본권부문으로서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서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제11조), 선거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하며(제12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행의 자유를 가진다(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권력구조부문에 관하여는 제3장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제32조~제46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제47조~제51조)를 두고,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으로서 내각(제52조~제62조)·성(제63조~제67조)을 두며, 제5장 지방주권기관으로서 각급 인민위원회를 두고 있다(제68조~제81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입법권을 유일하게 행

---

사, 1990, 36면)가 있으며, 북한사회가 사회주의로의 발전과정에서 완전한 혁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봉건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년~1993년), 1994, 492면)가 있다.

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제32조) 국가대표권을 가진 합의제국가의 원수의 지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그 기능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권력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제도부문에 관하여는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에서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하되(제82조), 재판소의 구성은 최고재판소의 경우 최고인민회의에서, 도·시·군재판소의 경우 비밀투표로 각급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특별재판소의 경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제83조), 검찰소의 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으로 하며(제92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3조).

이 밖에 기타사항으로 제7장 「국가예산(제95조~제99조)」·제8장 「민족보위(제100조)」·제9장 「국장, 국기, 수부(제101조~제103조)」·제10장 「헌법수정의 절차(제10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제103조)라고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헌법적 구상을 피력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또한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된다」고 규정(제104조)하여 1972년·1992년의 북한헌법에서는 사라진 헌법의 개정절차를 갖고 있다.<sup>29)</sup>

1948년의 북한헌법은 1948년 9월 8일에 공포된 이래로 다섯 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제1차 개정은 1954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 회의에서 헌법 제37조 제8항 ‘도·시·군·면·리구역의 신설 및 변경’을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으로 개정하여 면을 폐지하고, 제58조의 내각구성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2차 개정은 1954년 10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에서 지방정권기관에 의결기관인 각급 ‘인민회의’, 그 집행기관인 각급 ‘인

29) 북한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1면 주2)의 문헌을 참조.

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여 제5장과 이와 관련된 전조항을 수정하였고, 그 밖에 제36조에서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 제3차 개정은 195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 회의에서 제2차 헌법개정에 따른 각급 지방정권기관의 권한변경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조항 및 내각 구성조항의 개정이 있었고, 그 밖에 제53조의 내각권한에 대한 자구수정(지시를 명령으로)이 있었으며, 제4차 개정은 195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에서 제12조 제1항의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제5차 개정은 1962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제35조를 수정하여 대의원의 선출을 인구 5만에 1명 비율에서 인구 3만에 1명으로 개정하였고, 그 밖에 제58조 내각구성원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 시기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1948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입법의 수에 있어서 대단히 미약하였다.<sup>30)</sup> 그러나 한국전쟁기간 동안에는 전쟁을 지원하는 다양한 입법과 북한이 일시 점령한 남한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법령들이 상당수 제정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1972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전후경제와 사회주의 건설에 전념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교적 많은 수의 법령들을 제정하였다.<sup>31)</sup>

---

30) 북한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제정된 입법의 특징은 인민민주주의 법을 사회주의혁명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일제의 낡은 법률잔재를 청산하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점에 있다고 한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1986, 100~101면).

31)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2, 20~23면.

## 2. 헌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이 시기(1948.9.8~1972.10.27)중 북한정권수립 직후 헌정과 관련된 입법은 주로 권력구조부문에 치중되었다. 「정부의 구성에 관하여(1948.9.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와 임무에 관한 규정(1948.9.9)」,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위원회 조직에 관하여(1948.9.9)」 등이 이에 해당되며, 6.25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제정된 「정권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일꾼등에 대한 교양사업 강화에 관하여(1950.3.4)」, 「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1950.6.26)」 등은 전쟁기간이라는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전쟁이후 「지방주권기관구성법(1954.1.30)」,<sup>32)</sup> 「내각구성법(1955.3.31)」 등에 의한 국가조직의 정비를 감행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본격적인 건설 시기에 접어든 1960년도 이후에는 주로 경제관련부처, 즉 건설성(1961.1)·임업성(1960.12)·수산성(1960.12)·경제위원회(1961.2)·농촌건설성(1961.11)·국가과학기술위원회(1962.7)·도금속화학공업성(1962.8)·전기석탄공업성(1962.8)·기계공업성(1962.8)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근거 법령 내지 정령을 결정한다.

32) 북한은 1954년 10월 30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법령 제72호로 「지방주권구성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총 3장 3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일반규정」에서 지방주권기관으로서 「도·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의 해당 인민회의」를 규정하고(제1조), 해당 인민회의의 구성과 선거절차로서는 「그 관할지역내 공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인민회의의 대의원수와 선거절차는 선거법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규정하며(제2조), 임기로서는 「도인민회의는 4년, 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회의는 2년의 임기로 선거한다」고 규정하며(제3조), 「도·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회의는 자기활동에 있어서 법령·정령·내각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그 집행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동법은 제2장 「도·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회의(제5조~제16조)」·제3장 「도·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위원회(제17조~제31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관련부문으로서는 국적법을 대표적인 예로서 지적할 수 있다. 1963년 10월 9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결정된 국적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 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와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제1조), 공민은 그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적취득에 있어서 전형적인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은 국적취득의 구체적인 경우로서,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간에 출생한 자녀들」, 둘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내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외국공민간에 출생한 자녀들」, 셋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 발견된 자녀로서 그의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제4조). 그리고 국적에의 입적 또는 그로부터의 제적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조).

국제·외무관계분야로서 「외국여행에 관한 규정(1948. 10.26)」은 매우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1952년 3월 13일에 내각지시 제76호로 제정된 「외국여행과 단속에 대하여」를 살펴보면 자주 공민의 외국여행은 철저히 단속되었고, 특히 공무원의 여행은 내각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제정·공포된 헌정관계 입법동향(1948.9.8~1972.10.27)을 부문별로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p><b>&lt;헌법일반&gt;</b></p> <p>헌법 승인과 그 실시에 관한 결정  헌법(1948년)  정부의 정강  시·군인민재판소 및 도재판소선거에 관하여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복반  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우리 혁  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헌법 제12조에 수정을 가함에 관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무총화보고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결정서  헌법(1962년)  정부의 당면과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결정서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을 완성하기 위  한 활동요강</p>	<p>1948. 9. 8  1948. 9. 8  1948. 9.10  1949. 7. 9  1955. 4.    1956.11. 7  1961. 9.12    1961. 9.18  1962.10.18  1962.10.24  1970. 4. 3    1970.11.13  1972. 2. 2</p>
	<p><b>&lt;기본권&gt;</b></p> <p>국적법  국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p>	<p>1963.10.09  1963.10.09</p>
	<p><b>&lt;권력구조&gt;</b></p> <p>정권위양접수에 관하여  정부의 구성에 관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  한 규정 승인에 관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조직에 관하여</p>	<p>1948. 9. 8  1948. 9. 8  1948. 9. 9    1948. 9. 9    1948. 9. 9</p>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38도선이북지역의 도·시·군(구역) 인민위원회선거에 관한 규정	1949. 2. 3
	내무성 시설치 및 보안국 사업일부를 농림성 및 도(평양시) 인민위원회0103 관함에 관한 결정서	1950. 1. 7
	성참의회설치에 관하여	1950. 1.11
	국가기구 정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정서	1950. 2. 7
	정권기관 및 기타국가기관 일꾼들에 대한 교양사업 강화에 관하여	1950. 3. 4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1950. 6.26
	중요내각결정집행상황에 관하여	1951. 3.31
	산업성·로동성·도시경영성 및 최고재판소기구정원개편에 관하여	1951. 4.13
	중앙방역위원회 개편에 관하여	1951. 6.29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및 지방통계기관에 관한 규정	1952. 2.28
	중앙집권제적 국가통계체계 조직에 관하여	1952. 2.28
	지방통계기관 조직사업에 관하여	1952. 3. 8
	사법성에 관한 규정	1952. 4. 3
	사법성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하여	1952. 4. 3
	사회안전성을 내무성에 편입할 데 관하여	1952.10. 9
	농림성을 농업성으로 개칭함에 대하여	1952.11.29
	지방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리인민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할 데 관하여	1953. 2.18
	도시경영성을 폐지함에 관하여	1954. 3.23
	수산성을 조직함에 관하여	1954. 3.23
	전기성을 조직함에 관하여	1954. 3.23
리(읍·구)인민위원회에 대하여 사무분담을 경감할 데 관하여	1954. 4.20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지방주권기관구성법	1954.10.30
	내각구성법	1955. 3.31
	국가기관의 사무처리절차를 일부변경할 데 관하여	1956. 4. 2
	도·시·군(구역)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1956. 9. 3
	내각구성법 제2조에 수정과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	1956.11. 7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1957. 6.27
	대내외상업성을 폐지하고 상업성과 무역성을 설치함에 대하여	1958. 9.29
	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1959. 1. 3
	국가기관의 행정사무를 일층 간소화할 데 관하여	1959. 1.22
	중공업위원회 및 경공업위원회를 조직하며 일부 성들을 폐지함에 대하여	1960. 4.
	고등교육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1960. 4.18
	도·시·군인민위원회에 관한 잠정규정	1960. 4.29
	림업성을 폐지함에 관하여	1960. 4.29
	교육문화성을 폐지하고 보통교육성과 문화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1960.12.17
	림업성과 수산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1960.12.27
	건설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1961. 1.21
	경제위원회와 산하 지방산업공장, 기업소기구 개편에 관한 결정	1961. 2.16
	로동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1961. 2.28
	농촌건설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1961.11.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함에 관하여	1962. 7.11
도시경영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1962. 7.11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수매량정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1962. 7.1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에 대하여 (1962년)	1962. 8.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조직함에 대하여	1962. 8.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1962. 8.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조직에 대하여	1962. 8.11
	중공업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속화학공업성, 전기석탄공업성, 기계공업성을 설치함에 대하여	1962. 8.19
	내각구성법을 개정함에 관하여	1962.10.18
	도시 및 산업건설성, 농촌건설성을 각각 폐지하고 건재공업성을 설치함에 대하여	1963. 1. 8
	기계공업성을 폐지하고 기계공업위원회를 설치함에 대하여	1963. 7.
	각급기관, 기업소의 기구를 개편할 데 관하여 도(직할시)·시(구역)·군·리(읍·로동자구)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1963년)	1963. 9.20
	경공업위원회를 국가경공업위원회로 개칭함에 관하여	1963.10.16
	교통운수위원회와 철도성을 설치하고 교통성을 폐지함에 대하여	1964. 1.25
	도시경영성을 폐지함에 관하여	1964. 2. 4
	기구정원을 일부축소할 데 대하여	1964. 4. 3
	일부 성(위원회)들을 신설, 폐지하며 명칭을 개칭함에 대하여	1964. 9. 7
	국가경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경공업성을 설치함에 대하여	1964.12. 4
	국가검열성을 설치함에 대하여	1966. 1.
	일부 성 및 위원회를 새로 내을 데 대하여	1966. 9.30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시(구역)·군·리(읍·로동자구·동)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1967년)	1967. 1.30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시(구역)·군·리(읍·로동자구·동)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	1967. 9.25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시(구역)·군·리(읍·로동자구·동)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1967. 9.2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조직에 대하여	1967.10. 2
	정부정강	1967.12.
	시(구역)·군·리(읍·로동자구·동)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1970년)	1970. 1.15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조 직에 대하여	
	식료 및 일용품공업성을 없애고 지방공업성을 새로 내용에 대하여	1971. 3. 8
	일용품공업성을 새로 내용에 대하여	1972. 8.29
	지방공업성을 지방공업위원회로 고침에 대하여	1972. 8.29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1972년)	1972.11. 1972.11.11
국제·외무 관 계	외국여행에 관한 규정	1948.10.26
	외국여행자 단속에 대하여	1952. 3.13
	스탈린 대원수로부터 기증한 량곡을 접수 처리할 데 관하여	1952. 4. 1
	스탈린 대원수로부터 기증한 량곡을 로무자 사무원들에게 특배함에 관하여	1952. 4.24

### 3. 행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 요

북한법의 행정관계분야는 크게 행정일반·내무·국방·재무·농림수산·건설·교통·체신·문교·과학기술 등의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훈과 각종 경축 및 기념일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일반 부문의 입법동향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6.25한국전쟁·경제 및 사회주의 건설에의 몰두 등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정권수립과 관련하여 1948년의 「국기훈장 제1급·제2급·제3급에 관한 규정(1948.10.12)」, 「공로메달에 관한 규정(1949.6.13)」, 「군공메달에 관한 규정(1949.6.13)」 등이 있고, 최고영예인 영웅칭호에 관한 규정(1950.6.30)」, 「전사의 영예훈장에 관한 규정(1950.7.1)」, 「이순신훈장 제1급·제2급에 관한 규정(1950.7.13)」, 「자유독립훈장 제1급·제2급에 관한 규정(1951.7.7)」 등은 6.25한국전쟁의 독려를 위하여 제정된 것들이다. 그리고 1958년 5월 11일에 제정된 「중산경쟁운동순회 우승기 수여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북한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고, 「공훈도시관리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4.20)」, 「공훈도시관리공칭호에 관한 규정(1972.4.20)」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을 시작함으로써 1972년 12월 27일에 제정될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이미 조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무부문의 대부분의 법령들은 중앙 및 지방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것과 화약류단속 및 교통질서단속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특히 1949년 10월 30일에 제정된 「화약류단속에 관한 규정」은 총 7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북한법제 중 상당히 치밀한 내용의 입법으로서 1946년 8월 1일에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제정된 「화

약류단속령」·「화약류단속령시행규칙」을 1949년 10월 30일에 북한의 내각 결정 제144호로 통폐합하여 제정한 것이고, 이것은 당시의 북한의 입법과정상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국방부문의 대부분은 동원 및 조달에 관한 규정들로서 군과 민의 관계가 거의 없고, 북한의 전군사적 지배(全軍事的 支配)가 확연하다.

그리고 재정·조세·금융·전매·예산 등의 재무부문과 농업·임업·축산·수산·식량공업·현물세 수납 등의 농림수산부문, 그리고 교육·학술·문화·체육 등을 규정한 문교부문의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법령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재무·농림수산·문교부문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48년의 북한헌법시기(1948.9.8~1972.10.27)에 행정관계 북한법제와 그 입법동향의 주요특징을 보여주는 법령으로서 행정일반부문의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1953.8.13)」, 「중산경쟁운동의 순회 우승기 수여에 관한 규정(1958.5.11)」, 「공훈도시관리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4.20)」, 「공훈도시관리공칭호에 관한 규정(1972.4.20)」, 내무부문의 「화약류단속에 관한 규정(1949.10.30)」, 재무부문의 「물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1948.12.16)」, 농림수산부문의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 데 대하여(1966.4.29)」, 건설부문의 「로동자·사무원·도시주민들이 자체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의 조건을 보장할 데 대하여(1958.6)」, 교통부문의 「개항에 관한 결정서(1949.10.3)」, 「항만부두사업에 관한 규정(1949.12.23)」, 체신부문의 「우편에 관한 규정(1949.11.2)」, 문교부문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1949.9.10)」 등을 꼽을 수 있다.

## (2) 주요법령의 소개와 입법동향

이 시기의 주요법령의 소개와 행정관계 입법동향을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행정관계 주요법령의 소개

### <행정일반>

#### ○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1953.8.13)

- 북한은 한국전쟁(6·25)에 참여한 「조선인민군·국가기관 및 사회단체 일군들」을 포상·격려할 의도로 1953년 8월 13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으로서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정령은 수여대상으로서는 「①조선인민군 및 내무성 경비대에 근무하면서 직접 전선에 참가하였거나 또한 전투지역에서 자기활동에 의하여 승리를 보장한 모든 근로자들과 군사기관에 복무하는 노동자·기술자 및 사무원들, ②빨찌산부대 성원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선과 적의 후방에서 직접 빨찌산 투쟁을 전개한 자, ③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선인민군대·내무성 경비대 및 빨찌산부대에 근무하다가 그후 부상·질병·불구로 인하여 제대하였거나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군사 이외의 사업에 이동된 전체 근무자들과 군사기관에 복무하였던 노동자·기술자·사무원 및 빨찌산부대 성원들, ④미제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전체 중국인민지원군장병들, ⑤산업·운수부문의 노동자·기술자 및 사무원들, ⑥농촌근로자 및 농업부문 전문가들, ⑦과학·예술·문학·교육부문 일군들, ⑧국가정권기관·당 전체 및 기타 사회단체 일군들」을 규정하고, 수여·박탈의 주체로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하면서 수여형식으로서 「정령」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패용방식으로서는 「왼편 가슴」에 패용하되 「다른메달이 있는 경우에는 공로메달 다음」에 패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증산경쟁운동의 표창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1958.5.11)

- 북한의 내각은 증산경쟁운동의 표창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1958년

5월 11일에 결정 제47호로 「중산경쟁운동의 표창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중산경쟁운동 순회우승기 수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제1조), 중산운동 순회우승기의 종류로서 「내각 순회우승기·성(국) 기타 중앙기관과 해당 산별직업동맹 중앙위원회 공동순회우승기·도 인민위원회와 직업총동맹 도위원회의 공동순회우승기」의 3종류를 규정하며(제2조), 수여방법으로는 「내각 순회우승기는 분기간의 중산경쟁성적을 평가하여 다음달 15일전에(제3조), 성(국)과 직업동맹 공동순회우승기는 매월 중산경쟁성적을 평가하여 다음달 15일전에(제4조), 지방 경리성내의 상업성 소비협동조합 중앙련맹과 직업동맹의 공동순회우승기는 매분기의 중산경쟁의 성적을 평가하여 다음달 15일전에(제5조), 6개년간에 내각 순회우승기를 7회이상·성(국)과 직업동맹 공동우승기를 15회이상·도 공동순회우승기를 10회이상 수여 받은 기관·기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순회우승기를 그 기관·기업소에 영원히 수여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순회우승기와 함께 표창장과 부상금을 수여하는데 부상금의 경우에 대하여는 「우승기를 수여 받는 기관·기업소의 총로임 폰드에 대하여 내각 순회우승기는 7%·성(국)과 직업동맹 공동순회우승기 및 도 공동순회우승기는 5% 또는 4%의 비율로 산출된 해당기관·기업소에 조성된 초과리윤중에서 지불하며(제7조), 해당기관·기업소 직업동맹단체와의 협의하에 부상금중 30%이내의 금액을 해당기관·기업소 종업원들의 공동 문화후생비로 지출할 수 있고, 70%이상의 금액을 작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로동자·사무원들에게 수여하고(제8조), 기관·기업소 책임자들이 해당기관·기업소 직업동맹단체와 협의하여 기업소개·중산경쟁운동을 고무 추동하기 위한 직장 또는 브리가다 순회우승기를 제정하여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상금은 조성된 기업소 기금중에서 수요한다(제9조)」고 규정하며, 또한 「중산경쟁운동 성적평가와 순회우승기 수여대상 기관·기업소를 확정하기 위한 각 순회우승기 수여대상 심사위원회를 조속히 조직·구성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 공훈도시관리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4.20)

- 북한은 「도시경영부문일군들이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상 편리를 돌봐주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할 의도로 1972년 4월 20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으로 「공훈도시관리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정령은 「위대한 혁명사상·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도시경영부문의 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도시관리공칭호」의 제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도시관리공칭호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있다.

○ 공훈도시관리공칭호에 관한 규정(1972.4.20)

- 「공훈도시관리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1972년 4월 20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공훈도시공칭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정은 총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정은 수여대상으로서 「위대한 혁명사상·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받들고 도시경영부문에서 15년이상 일하면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도시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건물관리원·온돌수리공·상하수도관리공·도시위생관리공·공원관리원을 비롯한 도시경영부문의 로동자·기술자들」을 규정하고(제1조), 수여주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규정하며(제2조), 「공훈도시관리공칭호를 받는 일군들에게는 국기훈장 제1급 또는 로력훈장을 수여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 <내무>

### ○ 화약류단속에 관한 규정(1949.10.30)

- 북한은 화약류단속과 관련하여 1946년 8월 1일에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화약류단속령(총 14개조로 구성)」·「화약류단속령 시행규칙(총 6장 43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火藥類製造·試驗·變形及配分構造에 관한 規定(총 5장 25개조, 부칙으로 구성)」을 제정·공포하였고, 1949년 10월 30일에 북한의 내각은 결정 제144호로 「화약류단속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동 규정은 총 7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제1조~제9조)」에서 그 목적으로서는 「화약류에 대한 기술 및 취급 기능 향상을 보장하며 부정취급으로 인한 폭발사고 및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제1조)」을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서는 「화약류(화약·폭약·화공품·폭발질물)(제2조)」와 「화약류의 제조·배급·취급사용·운반·저장·처분(제3조)」을 규정하며, 화약류의 제조·시험·변조기관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성 직속 제조공장만이 가능하고, 화약류제조공장책임자는 화약류제조 및 배부명세부를 비치하여 매월말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관도 내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화약류의 배급은 「따로 규정한 바에 의하여 화약류배급소가 취급하고, 화약류배급소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장부의 매월분 사본을 매월말 현재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관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며, 화약류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는 「그 종류·수량·용도·소비기간 및 장소·저장방법을 기입한 신청서에 사용장소의 위치 및 부근 약도를 첨부하여 사용지의 소관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지가 2도 이상에 걸쳤을 경우에는 주로 소비하는 지역의 소관도 내무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의 수량은 6개월이내에 소비할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제6조)」고 하고, 허가권자인 도 내무부장은 「그 신

청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7조), 고 규정하며, 화약류에 관한 허가증은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효력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10일이내로 허가증을 교부한 도 내무부에 반납하여야 하고, 허가증을 상실·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교부한 도 내무부에 리유서를 첨부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며, 야간에 있어서 화약류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대책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 소관도 내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 「제조(제10조~제14조)」·제3장 「양도·양수·운반(제15조~제21조)」·제4장 「취급·사용·처분(제22조~제34조)」·제5장 「저장(제35조~제47조)」·제6장 「보칙(제48조~제50조)」·제7장 「벌칙(제51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재무>

##### ○ 몰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1948.12.16)

- 북한은 1948년 12월 16일에 내각 결정 제90호로 「몰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규정은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정은 몰수재산의 대상으로서 「법령의 규정 또는 재판소의 판정에 의하여 몰수한 재산·형사사건을 제기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근소한 압수품으로서 몰수결정한 재산·내무기관에서 취급한 습득물·소유자 없는 재산」을 규정하면서 그 관리를 재정성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조), 몰수재산을 몰수결정한 기관은 「그 몰수재산을 5일이내로 재정기관에 통지하는 동시에 재정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되 이에 대한 운반은 몰수결정한 기관 또는 압수한 기관에서 책임지며 비용은 재정기관에서 부담한다(제2조)」고 규정하며, 그 예외로서 「무기·탄약 및 폭발물은 내무기관에, 공안질서에 해로운 도서 및 인쇄물은 내각 서적출판지도기관에, 군대 및 내무기관에 관한 도

서 및 인쇄물은 내무기관에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몰수재산을 인계할 경우에는 「몰수재산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기관 및 인수기관에 각 1통을 보관하며(제4조), 시일이 경과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품·평가액이 500원이내로서 인계수속이 번잡한 물품은 재판소 또는 이를 압수한 기관에서 매각한 후 해당 재정기관에 통지하고, 매각후에는 매각대금과 몰수재산판매명세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며, 지방재정기관은 「골동품·기타 국보에 속하는 물품은 역사박물관에, 도서 및 인쇄물은 도서관에 무상으로 넘겨주고 이에 대한 명세를 재정성에 보고하고(제6조), 재정기관은 몰수재산이 가축류이면 농림기관 또는 농경용, 의약류이면 보건기관 및 약국, 아편·인삼·엽연초이면 상업성 연삼관리처 또는 그 산하기관의 국영기업소, 통신기재이면 통신기관, 원료자재이면 국영기업소, 량곡·염·권연·각연·기타 상품 및 동산이면 국영상점 또는 소비조합에 유상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재정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 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 이외의 재정기관에서 몰수재산을 평가사정할 때에 1만원 이상에 달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관 도 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 재정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의하되 5만원 이상에 달한 물품 또는 몰수재산수량이 다량인 때에는 직접 재정성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재정기관은 「금·은·금은제품·귀금속 및 보석류는 그 현품을 재정성에 이송하고, 통화는 즉시 국고에 납부하며, 예금은 재판관결문 초본·기타 증거서류를 첨부한 환치납부통지서를 예금자의 당해 은행 또는 저금소에 발부하여 국고에 환치하고, 부동산 및 선박은 재정성의 승인을 받고 이관 임대 또는 매각하며, 출자금채권·기타 특수재산은 그 내용을 재정성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며, 몰수재산매각의 가격기준으로서 「아편·인삼·엽연초는 국가수매가격, 기타는 국가판매가격, 국가기관 및 소비조합이외에 판매할 경우에는 시가, 국가수매가격

또는 국가판매가격이 없는 물품은 매각 당시의 시가로 환가하며, 시가는 재정기관 및 상업기관이 협회하여 결정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물수재산을 취급하는 각 기관 및 그 종업원은 물수재산을 매득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며(제10조), 재정기관은 재판소·내무기관 및 기타 물수재산을 취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물수재산 인계상황을 검열할 수 있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 <농림수산>

#### ○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 데 대하여(1966.4.29)

- 북한은 1946년 6월 27일에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8호로 「북조선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량곡의 공급 및 예비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총 11개조)」를 제정·공포한 이래로 동년 7월 22일에는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6호로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 위반자처벌규칙(총 9개조)」을 제정하였고, 또한 11월 18일에는 농업현물세납입에 관한 결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 위반자처벌규칙」에 추가하여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10호로 「농업현물세납입에 관한 결정위반에 대한 대책결정서(총 3개조)」를 개정하였으며, 1947년 5월 12일에는 1946년의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가 완전히 정당한 것으로 실증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농업현물세의 부과징수를 더욱 공평하게 하며 전작하는 농호에 대한 과세의 경감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인민위원회 법령 제24호로 「농업현물세개정에 관한 결정서(총 10개조)」를 제정하였고, 1947년 6월 1일에는 농림국 규칙 제8호로 「농업현물세개정에 관한 결정서에 대한 세칙(총 3장 18개조)」을 제정하였으며, 1955년 12월 20일에는 전쟁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가 극심함으로 「농민의 과세부담을 보다 더욱 경감하고 그들의 생활의욕을 일층 제고시킴으로써 농민의 경제상태를 급속히 개선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총 11개조)」을 개정하였고, 1959년 2월 21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농민대중의 양양된 노력투쟁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농촌경리가 급속히 발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농업현물세를 현저히 낮춤으로써 농업협동조합들의 공동 축적을 더 증대시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일층 촉진시키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법령으로서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총 6개조)」을 개정하였고, 1953년 3월 9일에는 내각 결정 제124호로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 시행세칙(총 6장 27개조)」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66년 4월 29일에 「조선로동당은 해방직후 토지개혁과 함께 단일한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을 고틀의 소작료와 온갖 가렴잡세로 부터 해방하였고, 농업현물세제는 도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며 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자금을 충당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사회주의공업이 발전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축성되어감에 따라 국가는 농민들의 현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현물세률을 낮추었으며 일부 협동농장들에 대하여는 현물세를 감면하여 주었고,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는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되어 공업이 농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된 조건하에서 7개년계획기간에 농업현물세제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년간에 걸쳐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미 대부분의 협동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면제하여 주었고, 1966년도에는 나머지 협동농장들에 대하여도 현물세를 면제하여 주는 해로 된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의 결정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정신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1946년부터 실시하여 오던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의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 데 대하여」를 제정·공포하였다.

## <건설>

○ 로동자·사무원·도시주민들이 자체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 의 조건을 보장할 데 대하여(1958.6)

- 북한은 1958년 6월에 「로동자·사무원·주민들이 자체로 주택건설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내각 명령 제78호로 「로동자·사무원·도시주민들이 자체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의 조건을 보장할 데 대하여」를 제정하였다.

동 명령은 총 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공급을 계획화하고, 그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개인주택건설용 자재는 「건설상점을 통하여 건설주에게 판매한다(제1조)」고 하고, 「국가건설공장에서는 개인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문짝·문틀 등을 위탁받아 제작 및 공급하도록 한다(제2조)」고 하며, 「지방 기후조건 및 생활풍습에 적응하며 지방자재를 광범위 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개인주택건설에 필요한 대지를 보장한다(제3조)」고 하고, 「개인주택건설자금을 대부하여 줄 조치와 개인주택건설자금을 위한 저축운동을 광범위 전개하도록 장려할 대책을 세운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 <교통>

○ 개항에 관한 결정서(1949.10.3)

- 북한은 1949년 10월 3일에 내각 결정 제143호로 「개항에 관한 결정서」를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결정은 북한에서 외국 통상을 할 수 있는 항으로 「신의주항·남포항·원산항·홍남항·성진항·청진항·라진항」을 규정하고(제1조), 항의 경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또한 별지의 「외국 통상을 하는 항에 관한 규정(총 26개조로 구성)」을 승인하고 있다(제3조).

○ 항만부두 사업에 관한 규정(1949.12.23)

- 북한은 1949년 12월 23일에 내각의 교통성 규칙 제5호로 「항만부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규정은 총 5장 44개조로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의하여 <<해운처에 관한 임시규칙(1948.9.2. 교통국 규칙 제4호)>>·<<해운처에 관한 상황에 관한 임시규칙(1948.9.2. 교통국 규칙 제5호)>>·<<북조선 항만부두에서의 선박작업의 표준(1948.9.2. 교통국 규칙 제7호)>> 등이 폐지되었다(동 규정 제44조).

동 규정은 제1장 「총칙(제1조~제4조)」에서 본 규정의 대상을 「항만부두에서 화물의 상하선작업·보관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사업」으로 규정하고(제1조), 「항」을 「교통성 산하 항사무소 또는 해운사무소」로, 「항장」을 「교통성 산하 항사무소장 또는 해운사무소장」으로 정의하여 규정하며(제2조), 항만사업의 범위를 「항만부두 사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관리·상하선 작업 및 화물의 보관 및 구내사업·선박의 입출항 취급 및 수로안내·기타 항만부두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사업」으로 규정하고(제3조), 항장이 선박의 입출항 또는 부두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선박 또는 화주가 국가의 법령 또는 항만부두 사업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선박이 부두 시설 및 항내 건축물을 파손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항의 현존한 설비로서 작업할 수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동 규정은 제2장 「항만부두 관리(제5조~제13조)」·제3장 「화물취급(제14조~제32조)」·제4장 「요금계산(제33조~제38조)」·제5장 화물사고(제39조~제4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체신>

○ 우편에 관한 규정(1949.11.2)

- 북한은 1949년 9월 14일에 내각 결정 제134호로 「우편 및 우편송금에 관한 규정(총 3장 27개조로 구성)」을 제정·공포한 이래로 1949년 10월 11일에 우편송금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편송금사업'에 적용될 일반규정으로 내각의 체신성은 규칙 제5호로 「우편송금에 관한 규정(총 8장 48개조로 구성)」을 제정·공포하였고, 또한 1949년 11월 2일에는 내각의 체신성이 규칙 제6호로 '우편사업'에 적용될 일반규정으로서 「우편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동 규정은 총 6장 43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제1조~제8조)」에서 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우편사업」으로 규정하고(제1조), '우편구'를 「우편물을 집배할 지역」으로 정의하며 「우편구는 시내 및 시외로 구분하되 시내우편구는 우편물의 집배사무를 취급하는 우편기관의 소재지 및 그의 린접지로서 체신상이 지정하고,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하여 규정하며(제2조), 우표에 대하여는 「해당 우편기관에서 소인하며, 우편물에 첨부된 우표가 정한 요금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요금액으로 간주·처리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의 취급한계에 대하여 「봉합서신 및 정기간행물·대봉우편물·소포우편물」의 3종으로 분리·규정하며(제4조), 우편금제품으로서 「범죄수색·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에 수발하는 것으로서 봉합하고 등기 또는 소포우편물로 된 것을 제외한 반국가적 반인민적 문건·서적·물품(제1호), 물품의 성질상 다른 우편물을 오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제2호), 폭발·발화·인화성 있는 위험품 및 유해약취의 물품(제3호), 아편·모루히비·고카잉·기타 마취제 물품 및 생병원균 또는 병원균의 포함 혹은 부착의 혐의있는 물품(제4호), 국가기관 상호간 수발하는

것을 제외한 독극약·독극물(제5호), 외설 또는 비도덕적인 물품(제6호), 명아리 및 양봉은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므로 이를 제외한 생동물(제7호)를 규정하고(제5조), 우편기관은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로서 우편금제품 또는 규정에 위반된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 발신 또는 수취인이 개봉을 거부하거나 또는 개봉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우편기관에서 개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6조), 「용적 또는 용량의 제한을 초과하는 우편물 및 통화·귀금속·보석·기타 귀중품은 보통우편물로 발신한 것 또는 기타 규정에 위반된 우편물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신인에게 이를 반환하되 우편요금 미납 또는 부족한 때에는 그 불납액의 2배(제1호), 통화를 가격표시로 하지 않고 발신한 것은 가격표시 요금의 5배(제2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제7조),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신인은 등기 가격표시 우편물 혹은 소포우편물의 배달교부를 할 때 또는 반환에 있어서 우편물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취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우편물을 수취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또한 동법은 제2장 「보통우편물」로서 제1절 「봉합서신(제9조)」·제2절 「엽서(제10조~제12조)」·제3절 「정기간행물(제13조~제18조)」·제4절 「대봉우편물(제19조~제22조)에 대하여, 제3장 「소포우편물(제23조)」·제4장 「우편물의 발신(제24조~제25조)」에 대하여, 제5장 「우편물의 배달」로서 제1절 「통칙(제26조~제29조)」·제2절 「우편물의 류치(제30조)」·제3절 「우편물의 반송(제31조)」·제4절 「우편물의 수취인의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전송(제32조~제33조)」·제5절 「우편사서함(제34조)」에 대하여, 제6장 「우편물의 특별취급」으로서 제1절 「등기(제36조)」·제2절 「가격표시(제37조~제38조)」·제3절 「배달증명(제39조~제40조)」·제4절 「소송서류 우편물(제41조)」·제5절 「대금환체(제42조~제43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부칙 2개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교>

○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1949.9.10)

- 북한의 의무교육제에 관한 입법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강에 의거하여 1950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의 전반적 실시를 위한 1949년의 제반 준비작업을 강력히 진행한다」는 목적으로 1948년 12월 16일에 내각 결정 제92호로 「1950년도부터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실시를 위한 1949년도의 준비사업에 관한 결정서(총 4개조로 구성)」를 채택하였고, 1949년 9월 10일에는 1948년의 북한헌법 제18조에 근거하여 1950년 9월 1일부터 북한전역에서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1950년 1월 11일에 내각 결정 제6호로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실행에 관한 결정서(총 8개조로 구성)」를 채택하면서 별지로서 <<학령아동 취학에 관한 규정(총 14개조로 구성)>>과 <<교과서 및 학용품 무상배급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였다. 이후, 1958년 10월 2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8년 11월 1일부터 북한전역에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하여(총 4개조로 구성)」를 채택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1958년 10월 9일에 북한의 내각 결정 제121호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한 법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할 데 관하여(총 4개조로 구성)」를 채택했으며, 1966년 11월 24일에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67년 4월 1일부터 북한의 전지역에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총 4개조로 구성)」를 채택하였고, 1972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동 헌법에 근거하여 1973년 4월 9일에 「전반적 10

년제 고등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 실시할 데 대하여(총 4개조로 구성)」를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5년 4월 10일에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 총화에 대하여(총 3개조)」를 채택하였다.

1948년의 북한헌법시대의 대표적인 법령인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은 총 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법령은 그 근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8조」에 두고, 시행일을 「1950년 9월 1일부터」로 하며, 「지방사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서는 그 실시를 일정한 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되, 연기하는 지역에서의 실시기일은 내각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조), 인민학교에서의 무료교육제와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게」 교과서 학용품 등을 국가가 무상으로 배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학령아동은 「만 7세로 부터 만 15세까지의 아동」으로 하면서 「인민학교 제1학년 취학년령은 만 7세·8세로 하되 앞으로 이 이상의 년령의 아동을 취학시킬 때에는 이를 내각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학령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는 「부모 및 후견인」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내각은 본 법령 집행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② 행정관계 입법동향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b>&lt;행정일반&gt;</b>	
	헌법채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문 건립에 관한 결정	1948. 9. 8
	국기훈장 제1급·제2급·제3급에 관한 규정	1948.10.12
	공로메달에 관한 규정	1949. 6.13
	군공메달에 관한 규정	1949. 6.13
	1950년 3월 1일을 로동일로 정함에 관한 결정서	1950. 2.22
	1950년 4월 30일(일요일)을 로동일로 하고	1950. 4.26
	5월 2일을 공휴일로 정함에 관한 결정서	
	최고영예인 영웅칭호에 관한 규정	1950. 6.30
	최고의 영예인 영웅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50. 6.30
	전사의 영예훈장 제정에 관하여	1950. 7. 1
	전사의 영예훈장에 관한 규정	1950. 7. 1
	이순신 훈장 제1급, 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	1950. 7.13
	이순신훈장 제1급·제2급에 관한 규정	1950. 7.13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	1951. 7. 7
	자유독립훈장 제1급·제2급에 관한 규정	1951. 7. 7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에 관한 규정	1951. 7.17
	최고의 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51. 7.17
	인민배우 공훈배우 및 공훈예술가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52. 6. 4
	인민배우 공훈배우 및 공훈예술가칭호에 관한 규정	1952. 6. 4
훈장 및 메달에 대한 증명서 사본교부에 관하여	1952.10.29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1953. 8.13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2급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	1954. 2.13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1950년 7월 13일 정령 <<이순신훈장 제1급, 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 일부를 변경함에 관하여	1954. 7.30
	명절일을 일부 변경함에 관하여	1954. 7.30
	국기훈장, 이순신훈장, 군공메달 및 공로메달제정에 관한 정령 일부 조항들에 수정 및 변경을 가함에 관하여	1954.12.11
	석탄공업부문 일꾼들에 대한 공훈탄부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54.12.11
	석탄공업부문 일꾼들에 대한 공훈탄부칭호에 관한 규정	1954.12.11
	훈장 및 메달의 패용절차에 관하여	1954.12.11
	로력영웅칭호에 관하여	1957. 7.17
	로력영웅칭호에 관한 규정	1957. 7.17
	공훈광부칭호 제정에 대하여	1957. 7.29
	공훈광부칭호에 관한 규정	1957. 7.29
	인민군 창건10주년에 제하여 “인민군 창건 10주년”이란 칭호를 부여할 데 대하여	1958. 2. 3
	증산경쟁운동의 표창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	1958. 5.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10주년에 제하여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상금을 지불할 데 관하여	1958. 8.14
	인민상을 제정함에 대하여	1958. 9. 7
	인민상에 관한 규정	1958. 9. 7
인민상수여 절차에 관한 공고	1959. 1.13	
모범적인 유치원 및 탁아소들에 “국제부녀절 50주년” 칭호를 부여할 데 대하여	1960. 3. 5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공훈체육인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60.11.11
	공훈체육인칭호에 관한 규정	1960.11.11
	축산부문 일꾼들에 대한 공훈사양공칭호에 관한 규정	1961. 1.10
	축산부문 일꾼들에 대한 공훈사양공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61. 1.10
	철도운수부문에 명예칭호를 제정 실시할 데 관한 결정	1961. 3.
	공훈의사칭호 및 공훈약제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61. 4.28
	국가에 더 많은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판매한 농업협동조합 및 시·군(구역)에 대한 영예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	1961. 7.20
	인민예술가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61. 7.27
	인민예술가 칭호에 관한 규정	1961. 7.27
	공훈어부칭호와 어부절을 제정함에 관하여	1962. 5.23
	공훈어부칭호에 관한 규정	1962. 5.23
	공훈보육원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62. 9.20
	공훈보육원칭호에 관한 규정	1962. 9.20
	공훈별목공, 공훈운재공, 공훈유별공칭호에 관한 규정	1962.10.18
	공훈별목공, 공훈운재공, 공훈유별공칭호와 립업로동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62.10.18
	3·1월간상에 관한 규정	1962.11.29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에 대한 3·1월간상을 제정함에 대하여	1962.11.29
	철도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63. 3.18
	과학상에 관한 규정	1963.12.17
	과학상을 제정함에 대하여	1963.12.17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공훈제염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64. 2.28
	공훈제염공칭호에 관한 규정	1964. 2.28
	공훈지질탐사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64. 2.28
	공훈지질탐사원칭호에 관한 규정	1964. 2.28
	인민방송원, 공훈방송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66. 7. 1
	인민방송원, 공훈방송원칭호에 관한 규정	1966. 7. 1
	인민체육인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66.10. 8
	인민체육인칭호에 관한 규정	1966.10. 8
	사회주의 10월혁명 50주년을 기념할 데 대하여	1967. 7.17
	조선인민군 창건기념훈장 제정에 대하여	1968. 1.25
	조선인민군 창건기념훈장에 대한 규정	1968. 1.25
	천리마영예상 수여에 관한 규정	1968. 5.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20주년 기념훈장 제정에 대하여	1968. 5.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20주년 기념훈장에 대한 규정	1968. 5.24
	공훈조산원칭호와 공훈간호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68.10.22
	공훈조산원칭호와 공훈간호원칭호에 관한 규정	1968.10.22
	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한 공장기업소들에 근위칭호를 수여할 데 대하여	1969.12.
	공훈용해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69.12.31
	공훈용해공칭호에 관한 규정	1969.12.31
	지질탐사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0. 2. 3
지방산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0. 4. 6	
금속로동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0. 4.17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0. 4.28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칭호에 관한 규정 방송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0. 4.28 1970.10.14
	출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0.12.20
	공훈뜨락또르운전수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1. 1.19
	공훈뜨락또르운전수칭호에 관한 규정	1971. 1.19
	농업로동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1. 3. 5
	식수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1. 3.25
	건설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1. 4.30
	편의봉사부문일꾼들에 대한 공훈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1. 6.22
	편의봉사부문일꾼들에게 공훈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규정	1971. 6.22
	해군기, 근위해군기와 장기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1. 7.
	전기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1. 9.15
	상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1.11.
	인민기자, 공훈기자칭호를 제정할 데 대하여	1971.11.29
	인민기자, 공훈기자칭호에 관한 규정	1971.11.29
	기계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2. 1.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제정할 데 대하여	1972. 1.
	체신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2. 1.
	공훈통신공, 공훈방송기계공, 공훈우편통신원칭호를 제정할 데 대하여	1972. 2. 7
	공훈통신공, 공훈방송기계공, 공훈우편통신원칭호에 관한 규정	1972. 2. 7 1972. 2.16
	공훈기계제작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2. 2.16
	공훈기계제작공칭호에 관한 규정	1972. 2.16
	공훈선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2. 2.16
	공훈선원칭호에 관한 규정	1972. 2.16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공혼자동차운전사칭호를 제정할 데 대하여	1972. 2.16
	공혼자동차운전사칭호에 관한 규정	1972. 2.16
	공혼수매원, 공혼량정창고원, 공혼정미공,	1972. 2.26
	공혼식량공급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공혼수매원, 공혼량정창고원, 공혼정미공,	1972. 2.26
	공혼식량공급원칭호에 관한 규정	
	륙해운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2. 2.26
	김일성청소년영예상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2. 3.
	김일성상에 관한 규정	1972. 3.20
	김일성상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2. 3.20
	김일성훈장에 관한 규정	1972. 3.20
	김일성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2. 3.20
	공혼기계사, 공혼철길원, 공혼철도수송원칭	1972. 4.20
	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공혼기계사, 공혼철길원, 공혼철도수송원칭	1972. 4.20
	호에 관한 규정	
	공혼도시관리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2. 4.20
공혼도시관리공칭호에 관한 규정	1972. 4.20	
공혼보이라공, 공혼소성공칭호를 제정함에	1972. 4.20	
대하여		
공혼보이라공, 공혼소성공칭호에 관한 규정	1972. 4.20	
공군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2. 5.20	
해군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2. 6. 3	
	<p data-bbox="361 1290 467 1329"><b>&lt;내무&gt;</b></p> <p data-bbox="361 1354 921 1406">자강도 및 함경북도 나진군 신설에 관하여</p> <p data-bbox="361 1406 789 1458">등사기사용 및 등록에 관한 규정</p> <p data-bbox="361 1458 677 1510">화약류단속에 관한 규정</p> <p data-bbox="361 1510 705 1562">교통질서단속에 관한 규정</p> <p data-bbox="361 1562 929 1615">자강도 강계군 강계면을 자강도 강계시로</p> <p data-bbox="361 1615 929 1667">승격시킬 것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p> <p data-bbox="361 1667 649 1719">제의함에 관한 결정서</p>	<p data-bbox="981 1340 1117 1373">1949. 1.31</p> <p data-bbox="981 1373 1117 1406">1949. 3.15</p> <p data-bbox="981 1406 1117 1439">1949.10.30</p> <p data-bbox="981 1439 1117 1472">1949.12. 5</p> <p data-bbox="981 1472 1117 1505">1949.12.12</p>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지방행정구역개편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1952.
	면, 리 인민위원회에 파견한 지도원들의 사업수준을 높일 데 대하여	1952. 3. 8
	신분등록사업을 내무기관에 이관함에 관하여	1952. 3.16
	북반부지역에 있어서의 행정체계중 면을 폐지함에 관하여	1952.12.22
	북반부지역에 있어서 일부 시, 군, 리(읍, 로동자구)들을 신설 및 변경함에 대하여	1954.10.30
	황해도를 황해남도과 황해북도로 분할하며 양강도를 신설함에 관하여	1954.10.30
	보이리와 탱크의 안전에 관하여	1956. 8.30
	일부행정구역을 변경 및 신설	1956. 9. 1
	일부행정구역을 변경함에 대하여(1959년)	1959. 2. 3
	일부 도시행정구역을 개편함에 관하여	1960.10.
	일부행정구역을 변경 및 신설함에 관하여	1961. 3.16
	일부행정구역을 변경함에 관하여(1961년)	1961.12. 6
	황해북도 은파군내 일부행정구역을 변경함에 관하여	1962. 5.23
	평안남도 용강군, 온천군 일부 리를 분리하여 남포시에 편입하며 남포시 일부 동을 분할 및 조절할 데 대하여	1963. 3.18
	평안북도내 일부행정구역을 개편 및 조절함에 대하여	1963. 5. 8
	평양 시내 일부행정구역을 분할 및 조절함에 대하여	1963. 5. 8
일부행정구역을 변경 및 신설함에 대하여(1963년)	1963.11.18	
함경북도 경원군 경원읍을 분리하여 후석리를 신설함에 대하여	1964. 5.19	
중앙기구의 기구와 정원을 개편할 데 대하여	1965. 1.11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일부행정구역을 변경 및 신설함에 대하여 (1965년)	1965. 1.15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위원회기구 와 정원을 개편할 데 대하여	1965. 2.19	
	황해북도 곡산군 해포리를 곡산군에서 분 리하여 신계군에 편입할 데 대하여	1965. 7.24	
	함경북도 나진시를 새로 내올 데 대하여	1967. 8.18	
	도시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없애고 동인민	1967. 9.25	
	회의와 동인민위원회를 새로 내올 데 대하여		
	일부행정구역을 고칠 데 대하여(1967년)	1967.10. 2	
	<b>&lt;국방&gt;</b>		
	조선인민군전사·하사관들의 부양가족원호 에 관하여	1949. 5. 9	
	인민군대 원호가족에 대한 육류수매량 감 면에 관하여	1950. 1. 7	
	군사동원에 관한 규정	1950. 7. 1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	1950. 7. 1	
	전시로동에 관하여	1950. 7. 6	
	전시의무로동동원에 관하여	1950. 7.26	
	군위군기의 제정에 관하여	1950. 8.16	
	조선인민군 근위홍장의 제정에 대하여	1950. 8.16	
	군수용 일부원료자재 및 기계의 자유판매 를 제한할 데 관하여	1951.10.30	
	군대의 공민들에 대한 일반적 군사훈련을 실시할 데 관하여	1951.11. 9	
	예비의무군조직에 관하여	1952. 1.20	
	적의 세군무기와 투쟁대책에 관하여	1952. 2.20	
적들이 감행하고 있는 세군만행과의 투쟁 대책에 관하여	1952. 2.29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조선군대내 군무자들에게 그의 후방가족의 인민군부대들에게 공급하는 부식물포장에 대하여	1952. 3. 9
	적들이 감행하고 있는 세균만행과의 투쟁 주소를 알려 줄 데 대하여	1952. 3.19
	예비의무군 조직강화와 민간군사훈련사업의 질적 보장을 위하여	1952. 3.31
	전사자 사망통지서발급사업 강화에 관하여	1952. 4. 1
	대책을 일층 강화함에 관하여	1952. 4.22
	고등어가공처리사업에 후방에서 복무하는 군인, 내무원, 기관사무원 및 일반인민들을 동원할 데 대하여	1952. 4.30
	인민군대내에 복무하는 수의사 및 준수의 사등록에 관하여	1952. 4.30
	전시상태에 관하여	1952. 6.27
	조선인민군 상급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52.12.31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함에 관한 상임위원회 정령의 효력상실에 관하여	1953. 8.13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한 상임위원회 정령의 효력상실에 관하여	1953.12.31
	1952년 12월 31일 정령 <<조선인민군 상급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의 일부를 변경함에 관하여	1954. 6.15
	중앙경위부대 군무자들에게 그들의 복무년 한에 따라 국가표창을 수여함에 관하여	1954. 6.15
	조선인민군 상급지휘관 군사칭호에 보충할 데 대하여	1955. 4.23
	조선인민군 상급지휘관 군사칭호 개정에 대하여	1956. 4.11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내무기관 책임지위성원 및 문관들의 군사 칭호의 제정에 관하여	1957. 7. 1
	공화국 북반부지역으로부터 철거하는 중국 인민지원군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며 그 들을 환송할 데 관하여	1958. 2.27
	조선인민군 전상자영예회장 수여사업을 조직진행할 데 대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경제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1962. 8.10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군대 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하여	1964. 6.15
	민족보위상명령(1965년)	1965. 2. 8
	전시공로자들을 더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할 데 대하여	1965. 7.24
	민족보위상명령(1967년)	1967. 2. 8
	민족보위상명령(1968년)	1968. 2. 8
		<b>&lt;재무&gt;</b>
국영기업소 재정운영 및 조절에 관한 결정서		1959.11.28
내각 각성 및 직속국, 최고재판소, 최고검		1948.10.12
찰소 봉급표		1948.10.12
수출입세에 관한 규정		1948.10.26
바란스위원회에 관한 규정		1948.11.
내세증지에 관한 규정		1948.11. 1
행정기관 회계검사에 관한 규정		1948.11.18
기업소 경리검사에 관한 규정		1948.11.30
몰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		1948.12.16
국영기업소의 고정재산감가상각적립 및 사 용에 관한 규정		1948.12.23
국영기업소건설공사자금에 대한 국고교부 절차에 관한 규정		1948.12.25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각 기관에서 시공하는 경우에 일공 로무자에 대한 자유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	1948.12.28
	인민경제 및 제반경리의 통계제도에 관한 결정서	1948.12.29
	통계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규정	1949. 1.14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행정기관의 경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1949. 1.17
	각급행정기관 국영기업소 및 소비조합들의 경비최고한도에 관한 규정	1949. 1.19
	북반부의 인민경제부흥발전을 위한 1948년 계획실행 총결과 1949년-1950년 2개년계획에 관한 법령	1949. 2. 1
	국가경제기관 및 협동단체의 자금결제에 관하여	1949. 4.16
	통계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추가 및 개정에 관하여	1949. 4.16
	1949년도 국가종합예산에 관한 법령	1949. 4.23
	국영기업소 재정운영 및 조절에 관한 결정서 실시에 관하여	1949. 5. 7
	국영기업소 재정운영 및 조절에 관한 결정서 실시에 관한 규정	1949. 5. 7
	<<내세증지에 관한 규정>> 일부추가에 대하여	1949. 5.12
	재정경리기능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1949. 8.23
	재정경리기능자격심사위원회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9. 8.23
	제수수료에 관한 규정승인에 관한 결정서	1949. 8.23
	예산권한에 관한 규정	1949. 9.20
재정경리 기능자격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49.10.26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지방자치세에 관하여	1949.10.29
	재정성 경영계산연구회에 관한 규정	1949.12.23
	거래세개정에 관하여	1949.12.29
	국가경제기관의 리익공제금 국고납부에 관한 규정	1949.12.29
	국가경제기관의 리익공제금 국고납부에 관한 규정승인에 관한 결정서	1949.12.29
	물수재수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50. 1.19
	엽연초 경작지도 및 수납사업 이관에 관한 결정서	1950. 1.21
	국립건설자금은행설치에 관한 결정서	1950. 1.25
	국가경제기관 및 협동단체들의 자금결제에 관하여	1950. 2.21
	각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및 협동단체에 대한 은행의 임금자금지불일 지정에 대하여	1950. 2.23
	1950년도 국가종합예산에 관한 법령	1950. 3. 1
	거래세 개정에 관한 정령 시행세칙	1950. 3.11
	수입인지 판매량 확장에 관하여	1950. 3.11
	국립건설자금은행의 기본건설 및 대보수자금공급에 관한 규정	1950. 3.15
	국가경제기관의 리익공제금 국고내부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50. 3.18
	교원주택 건축자금 신용대부에 관한 규정	1950. 4.11
	국가경제기관들의 고정재산감가상각금 적립 및 그 사용에 대하여	1950. 4.24
	인민경제발전채권발행에 관한 결정서	1950. 5.15
	각도·평양시·도영기업소 재정운영 및 조 절에 관한 규정	1950. 8. 2
	주류전매실시에 관하여	1951. 5.14
전매품단속에 관한 규정	1951. 6.14	
조국보위복권발행에 관하여	1951. 6.14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국영기업소 기타 국가경제기관들의 채권채무정리에 관하여	1951. 9.15
	후퇴전 은행대부금조치에 관하여	1951. 9.26
	외국화폐취급에 관한 임시규정	1951.10.26
	인민저금사업 강화에 관하여	1952. 2.21
	연초경작 지도사업을 이관함에 관하여	1952. 2.22
	산업, 상업 및 기타 부문의 국영기업소기관들의 독립채산제, 재정계획 및 국가예산과의 호상관계에 관한 규정	1952. 3.13
	산업, 상업 및 기타 부문의 국영기업소기관들의 독립채산제, 재정계획 및 국가예산과의 호상관계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하여	1952. 3.13
	엽연초 및 잠견 생산의 개선 발전 대책에 관하여	1952. 3.16
	국가기관 부업경리에 대한 거래세 면제에 관하여	1952. 3.19
	기업소, 경제기관, 협동단체 및 사회단체들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제대책에 관하여	1952. 3.27
	부업경리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재산 자금에 대하여	1952. 3.31
	지방자치세 개정에 관하여	1952. 4.12
	각 예산소속기관 및 경제기관에 있어서의 내부 재정감독과 서류검열에 관하여	1952. 4.24
	각 예산소속기관 및 경제기관에 있어서의 내부 재정감독과 서류검열에 관한 규정	1952. 4.24
	협동생산조합에 대한 중앙은행의 단기대부 규정	1952.10.30
	인민소득세에 관하여	1953. 1.10
	쏘련정부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조선의 경제복구원조비로 10억루블리를 배당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1953. 8.12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개성지구 민간인삼포운영에 관하여	1953. 8.24	
	1954-1956년 경제복구 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법령	1954. 4.23	
	1954년 국가예산에 관하여	1954. 4.23	
	로동자, 사무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감하함에 관하여	1955. 8.13	
	주민소득세에 관한 법령	1955.12.22	
	<<주민소득세에 관하여>>의 제3조2항에 수정 및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	1956.11. 7	
	저금사업을 강화시킬 데 대하여	1956.11. 7	
	국제보험을 실시할 데 대하여	1957. 2. 2	
	저금사업에 관하여	1957. 3.12	
	인민경제 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계획에 관하여	1958. 6.11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데 대하여	1959. 2.12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	1959. 2.12	
	은행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59. 5.30	
	인민경제발전 7개년(1961~1967)계획에 대한 통제수자	1961. 9.17	
	1965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65.	
	경제발전 6개년(1971~1976)계획에 대하여	1970.11.12	
	<b>&lt;농림수산&gt;</b>		
	목재생산규격에 관한 규정	1948.10. 9	
	관개시설 사용료 현물수납에 관한 결정서	1949. 2. 4	
	작잠로동자에 대한 작업필수품·로동보호물자 및 작업필수품무상대급여에 관한 규정	1948.10.26	
	림산업 허가에 관한 규정		
조림사업소에 관한 규정(1949년)	1948.12.29		
림산사업소에 관한 규정	1949. 1.14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수산제품검사에 관한 규정	1949. 2. 4
	1949년 농작물 파종사업 실행대책에 관한 결정서	1949. 2. 9
	1949년도 육류수매에 관한 결정서	1949. 2.19
	1949년 육류수매 및 공급에 관한 규정	1949. 3. 1
	1949년도 육류수매 및 공급에 관한 규정	1949. 3. 1
	비료배급에 관한 결정 일부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9. 3. 5
	수산제품검사에 관한 규정	1949. 4. 2
	유우등록규칙	1949. 4.18
	<<1949년 육류수매 및 공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관하여	1949. 5. 2
	공예작물 수매비률에 대하여	1949. 5. 2
	국립작잠시험 및 국립저잠시험장에 관한 규정	1949. 6.11
	국립잠업시험장에 관한 규정	1949. 6.11
	림산업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하여	1949.11.12
	잠업발전을 위한 제대책에 관한 결정서	1949.11.17
	화전농민의 직장 전출에 관한 결정서	1949.11.29
	어업에 관한 규정	1949.12.22
	육류수매에 관한 결정서	1949.12.22
	국유림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1949.12.30
	지방림에 관한 규칙	1949.12.30
	특별보호림에 관한 규칙	1949.12.30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	1950. 1.10
	국유산림 대부에 관한 규칙	1950. 1.11
	내각림산국산하 각기관에 관한 규정	1950. 1.11
1950년 농작물 파종사업 실행대책에 관한 결정서	1950. 1.25	
농기구, 농약생산 및 공급대책에 관한 결정서	1950. 2. 7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국영 농기계 임경소에 관한 규정	1950. 2.21
	림목처분사업에서의 지방소비재취급에 관하여	1950. 2.21
	국가광곡 및 과실저장창고 신축에 대하여	1950. 3. 2
	림상조사사업 추진에 관하여	1950. 3. 8
	특용작물(연초, 인삼, 앵숙)현물세징수에 관하여	1950. 3.18
	식수조림사업강화에 관한 결정서	1950. 3.21
	<<도급자금제, 상금제 및 식량특별배급제에 관한 결정서>> (인민위원회 결정 제 147호)에 의거한 식량특별배급에 관하여	1950. 3.24
	식량배급규정	1950. 3.24
	조림사업소에 관한 규정(1950년)	1950. 4. 8
	뜨락또르 임경료 제정에 관한 결정서	1950. 4.12
	국립작잠시험 및 국립저잠시험장에 관한	1950. 4.15
	규정을 <<국립작잠시험장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에 대하여	
	국립잠업시험장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하여	1950. 4.15
	목재생산규격	1950. 4.28
	림산물 매각대금 징수에 대하여	1950. 4.29
	림산부문 역우관리 강화대책에 관하여	1950. 4.29
	림산사업소 강화발전대책에 관한 결정서	1950. 6.18
	식량배급규정	1950. 6.20
	농민시장 개설에 관한 결정서	1950.10.11
	농민시장에 관한 규정	1950.10.11
	역우 및 송아지도살금지에 관하여	1950.11.20
	돼지 및 소 가축 긴급증식에 관하여	1951. 3.30
생산가축도살금지에 관하여	1951. 3.30	
종돈대부규정	1951. 3.30	
도·시·군영목장건설에 관하여	1951. 6.14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육류수매에 관하여	1951. 9.10
	육류공급에 관하여	1951. 9.12
	식량배급규정 일부변경에 대하여	1951.12.22
	1952년도 영농사업준비 및 시행대책에 관하여	1952. 1.30
	국가량곡수지와 식량절약에 관하여	1952. 1.30
	도로수보호 및 식수강화대책에 관하여	1952. 2.27
	1952년도 춘기 조립·식수사업 강화에 관하여	1952. 3. 1
	1952년도 재해농민에 대한 국가량곡 대여에 관한 규정	1952. 3.13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영농을 보장하기 위한 식량을 대여함에 관하여	1952. 3.13
	농작물 실수확고 판정사업 이관에 관하여	1952. 3.16
	목축업 발전계획 일부변경에 관하여	1952. 3.16
	국가량곡수급규를 강화에 관하여	1952. 3.27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	1952. 3.27
	농민들에 대한 로력동원제한에 대하여	1952. 4. 1
	1952년도 육류공급에 관하여	1952. 4. 9
	1952년 춘기파종 실행 정형에 관하여	1952. 5. 7
	1952년도 조기작물 현물세를 일부 면제함에 관하여	1952. 6.20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가족들에게 식량공급을 증가할 데 관하여	1952. 9.30
	식량이 부족한 빈농민들에게 1952년도 농업현물세와 국가대여곡 등을 면제할 데 관하여	1952. 9.30
	농경지의 복구 및 보호대책의 실시에 관하여	1953. 9. 3
비무장지대 분계선 린접지역의 전재농민에게 1953년도 만기작물현물세와 국가대여곡 등을 감면할 데 관하여	1953. 9.17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가축도살제한을 폐지할 데 관하여	1953. 9.17
	1952년도까지의 현물세의 미납량과 기타 각종 국가수입곡의 미납량을 면제하며 국가육류의무수매제를 폐지할 데 관하여	1953.11. 7
	양잠업 발전대책에 관하여 (1954년)	1953.12.15
	농업협동경리의 강화·발전 대책에 관하여	1954. 2. 5
	농촌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한 제대책에 관하여	1954. 3.11
	농업현물세 부과비율의 일부개정에 관하여	1955. 6.24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1955년)	1955. 6.25
	가축도살에 관하여	1955.12.20
	식수조립사업 및 산림관리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56. 1.20
	모범농업협동조합 창조운동을 광범히 전개 할 데 관하여	1956. 2.
	농업협동조합 창조운동을 광범히 전개 할 데 관하여	1956. 9.12
	농업협동조합 기술원 양성소를 설치하고 통신교육망을 확장할 데 대하여	1957. 3.24
	양곡가공사업의 개선, 강화대책에 대한 결정	1957. 8. 4
	면화 및 기타공예작물을 증산할 데 관하여	1957.10.12
	기양 및 어지돈 관개건설공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데 관하여	1957.11. 2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계로 할 데 관하여	1957.11. 3
	양잠업 발전대책에 관하여(1958년)	1958. 2.19
	과수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관하여	1958. 5. 7
	동해안지구의 치산치수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데 관하여	1958. 5.30
	농촌 경리에서 기계화수준을 일층 제고시킬 데 관하여	1958. 7.24
채소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1958. 9.24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그의 규모를 확장할 데 관하여	1958.10.11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잠정)초안	1958.11.24
	식용류의 증산과 식물성류의 생산을 급속히 증산시킬 데 관하여	1958.11.24
	천해양식과 담수양어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하여	1958.11.24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킬 데 대하여	1959. 2.16
	농업현물세에 대하여	1959. 2.21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 시행세칙	1959. 3. 9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킬 데 대한 정령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대하여	1959. 4.12
	도시원림화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59. 6.30
	국가농목장에 관한 규정	1960. 6.13
	국가농목장작업반들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할 데 대하여	1960. 6.13
	농업협동조합들의 국가대부금과 미납곡을 면제할 데 관하여	1960. 9.28
	농업협동조합 천리마작업반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	1961. 3.30
	농업협동조합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조직 전개할 데 관하여	1961. 3.30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촉진할 데 관하여	1961. 4.14
	농기계작업소기구정원표	1961.12.22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할 데 관하여	1961.12.22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 사업지도서	1961.12.22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 표준기구	1961.12.22
	전인민적 운동으로 가뭄을 극복하여 당면한 영농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대한 공동결정	1962. 5.30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일부 협동농장의 농업현물세를 면제할 데 대하여 농업근로자동맹규약 농업현물세제를 면제할 데 대하여 마적령 일부개정 의 건	1964. 2.26 1964.11.26 1965. 3.27 1966. 4.29 1967. 8.19
행정관계	<b>〈건축〉</b> 하천관리에 관한 규정 건축설계 도급임금제에 관한 규정 하수도에 관한 규정 수도에 관한 규정 산업성 기본건설관리국내에 기본건설트레 스트를 설치할 데 관한 결정서 산업성 기본건설트레스트에 관한 규정 의무로력동원에 관한 규정 건축설계 현상모집 실시에 관하여 도시 복구 및 건설계획 실시를 보장할 데 관하여 농촌 및 읍들에서 인민적 운동으로 진행되 는 생산적 건설 및 주택, 학교, 문화시설들 의 건설사업을 보장할 제대책에 관하여 관개 하천관리사업의 개선조치를 강구할 데 대하여 중소규모의 관개하천사방공사를 전인민적 으로 전개할 데 관하여 1958년 평양시 복구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대하여 건설을 조립식방법으로 혁신할 데 대한 제 반대책에 관하여 1958년 지방도시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 장할 데 관하여	1949. 2. 8 1950. 1. 6 1950. 1.12 1950. 1.21 1950. 2.21 1950. 2.21 1950. 3.25 1952. 5. 7 1953. 7.30 1957.10.30 1957.11.15 1957.12. 7 1958. 2.10 1958. 3.22 1958.5.29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로동자, 사무원, 도시주민들이 자체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의 조건을 보장할 데 대하여	1958.6.
	원산시를 동해안의 항구 및 문화 휴양도시로 건설할 데 대하여	1958. 6.17
	함흥시 복구건설사업을 보장할 데 대하여	1958. 6.17
	홍남시를 복구건설할 데 대하여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할 데 관하여	1958. 6.17
	건설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데 관하여	1958. 7.10
	농촌문화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데 관하여	1959. 1.13
	협동농장들에 이미 지어준 농촌문화주택건설비와 대부금을 면제할 데 대하여	1961. 4.24 1964.12.23
	<b>&lt;교통&gt;</b>	
	철도수송하물 운송규칙	1948.10.20
	도로관리에 관한 규정	1949. 2. 4
	백두산산림철도건설사업소 규정	1949. 2. 4
	역명 변경에 관하여	1949. 3.31
	개항에 관한 결정서	1949.10. 3
	외국통상을 하는 항에 관한 규정	1949.10. 3
철도운수에 관한 규정	1949.10. 7	
철도수소하물 운송규칙 일부개정에 관하여	1949.11. 2	
철도여객운송규칙	1949.11. 2	
철도여객운송규칙 일부개정에 관하여	1949.11. 2	
철도운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하여	1949.11. 2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규정	1949.12. 2	
영예휘장 모범운수일꾼 수여에 관한 규정	1949.12. 8	
항만부두 사업에 관한 규정	1949.12.23	
도람관용기 관리운용에 관한 결정서	1950. 3.13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도탐관용기 관리에 관한 규정 화물자동차 공차운행방지에 관한 결정서 철도수소하물 운송규칙 (1948년 10월 20일 교통성 규칙 제1호) 일부개정에 관하여 철도운전에 관한 규칙 (1947년 8월 12일 교통국 명령 제2호) 일부개정에 관하여 차량대여에 관한 규정 공차운행차 화물취급에 관한 규정 전시철도운수사업강화대책에 관하여 춘기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보장함에 관하여 운전면허증 교환교부에 대하여 철도선로부문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관하여 해주-하성간 광궤철도 부설공사를 촉진시 킬 데 관하여 철도의 전기화를 촉진시킬 데 대한 공동결정	1950. 4. 1 1950. 4. 3 1950. 4.21 1950. 4.21 1950. 4.28 1950. 5. 1 1950. 9.25 1952. 3.10 1952. 4.22 1958. 2.22 1958. 5. 7 1963.11.
행정관계	<b>&lt;체신&gt;</b> 중앙정부수립기념 50전 우표발행에 대하여 우편엽서 규격개정 발행에 관하여 우편 및 우편송금에 관한 규정 무선통신기의 등록 및 시설허가에 관한 결 정서 우편송금에 관한 규정 우편에 관한 규정 무선방송 청취에 관한 규정 유선방송 청취에 관한 규정 발전소의 저수지유역 수력설비구역 송배전 선 및 통신로선 보호에 관하여	1948.11.19 1948.12. 1 1949. 9.14 1949.10. 7 1949.10.11 1949.11. 2 1950. 1.20 1950. 3.31 1952. 5. 7
	<b>&lt;문교&gt;</b> 학위 및 학직수여에 관한 결정서 조선물질문화 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	1948.10.26 1948.11. 1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국가기술자격심사위원회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8.11.12
	국가도서판매사업 강화발전에 관한 결정서	1948.11.12
	기술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1948.11.12
	1950년도부터의 전선적 초등의무교육실시를 위한 1949년도의 준비사업에 관한 결정서	1948.12.16
	일본서적 및 출판물 단속에 관한 규정	1949. 1.14
	각급학교 수업료에 관한 규정	1949. 2. 4
	학술용어 및 실용한자사정에 관한 결정서	1949. 2. 5
	학술용어 사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1949. 2. 5
	대학생 장학금 급여범위 확장에 관한 결정서	1949. 2. 9
	중국인학교 관리에 관한 결정서	1949. 3.11
	고급중학교 국가졸업시험에 관한 규정	1949. 4. 6
	사범전문학교 국가졸업시험 및 진급시험에 관한 규정	1949. 4. 6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국가진급시험 및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국가졸업시험에 관한 규정	1949. 4. 6
	중앙지도간부학교 개편에 관한 결정서	1949. 5. 9
	중앙지도간부학교에 관한 규정	1949. 5. 9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1949. 9.10
	각 양성기관의 수강생들에 대한 대우	1949.11. 4
	대학교수 교원 봉급 및 그 교수시간 계산에 관한 규정	1949.11.29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아 설립에 관한 결정서	1949.12. 8
	교원대학에 관한 규정	1949.12.22
	대학에 관한 규정	1949.12.22
	교과서 및 학용품 무상배급에 관한 규정	1950. 1.
	이동예술대에 관한 규정	1950. 1.11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실행에 관한 결정서	1950. 1.11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학령아동취학에 관한 규정	1950. 1.11
	로동학원 설치에 관하여	1950. 1.30
	정권기관 및 국가기관간부에 대한 교육활동강화에 관하여	1950. 3. 4
	국가졸업 및 진급시험에 관한 규정	1950. 3.11
	극장 및 영화관사용료 제정 실시에 관하여	1950. 3.11
	극장(극단, 악단, 무용단)에 관한 규정	1950. 3.11
	도서판매사업 강화에 관하여	1950. 3.11
	기술전문학교에 관한 규정	1950. 3.24
	의학전문학교 설치에 관하여	1950. 4. 2
	고급중학교에 관한 규정	1950. 4. 8
	인민학교에 관한 규정	1950. 4. 8
	초급중학교에 관한 규정	1950. 4. 8
	로동학원에 관한 규정	1950. 4.11
	학교 및 시학에 관한 규정	1950. 4.13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인민군장병 및 빨치산들과 애국렬사들의 유자녀학원 설치에 관한 결정서	1951. 1.13
	조국해방전쟁에서 불구자로 된 인민군장병 및 빨치산들을 위한 영예군인학교 설치에 관하여	1951. 4.13
	각종 기술전문학교를 관계성 및 내각 직속국들에 이관함에 관하여	1952. 2.28
	1952년 개성지구 교육기관 및 평양시 중국인민학교 복구계획에 관하여	1952. 3.17
	조선력사편찬위원회 및 조선어문연구회를 정치경제학 아카데미에 이관함에 관하여	1952. 3.27
	내각수상 김일성 동지의 탄생 40주년에 축하하여 그의 이름을 가진 장학금제도를 설정함에 관하여	1952. 4. 3
	일부 대학생에 장학금 급여액을 증가함에 관하여	1952. 4.24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통신사법전문학교에 관한 규정	1952. 4.24
	과학아카데미 창립에 관하여	1952. 5. 7
	무대예술인 급수결정에 관한 규정	1952. 5.29
	무대예술인들을 우대함에 관하여	1952. 5.29
	과학원조직에 관하여	1952.10. 9
	<<조선인민군 창건5주년기념 문학예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1953. 1.22
	조선인민군 창건5주년에 제하여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기념 문학예술상>> 제정함에 관하여	1953. 1.22
	인민학교 기술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제개편에 관하여	1953. 7.11
	애국렬사 유자녀들과 전쟁고아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평양시 및 각 도 소재지에 설치할 데 관하여	1953. 8. 4
	개성지구에서 인민교육기관들을 확장하며 송도정치경제대학의 설립을 보장할 데 관하여	1953. 9. 8
	인민 초급·고급중학교 졸업 및 진급시험에 관한 규정	1956. 3. 1
	대학 및 각급학교 학기구분을 변경할 데 대하여	1957. 2.21
	기술·기능 양성체계를 개편할 데 대하여	1957. 6.18
	체육 및 스포츠 보급과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	1958. 3.19
	유자녀학원과 초등학교 및 애육원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58. 7.21
	도시 농촌을 전반적으로 유선방송화할 데 대하여	1958. 9.29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하여	1958.10. 2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한 법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할 데 관하여	1958.10. 9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각급학교 및 간부양성기관 학생들의 국가 장학금을 인하할 데 관하여	1958.10.29
	로동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인민학교 또는 초급중학교 졸업자정도 이상으로 수준을 제고시킬 데 대하여	1958.11.21
	대학 및 전문학교를 신설 확장할 데 대하여	1959. 2. 2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스포츠 기술수준을 제고할 데 대하여	1959. 2.27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데 관하여	1959. 3. 2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 데 관한 법령	1959.10.28
	국가기술 및 경제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1961. 1.28
	각급학교들의 학기구분을 변경할 데 관한 결정	1961. 5.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시킬 데 대하여	1961. 7.28
	박사원에 관한 규정	1961. 8.
	사회주의로동청소년동맹 규약	1964. 5.
	사회주의로동청소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1964. 5.
	조선민주청소년동맹위원회사업결산에 대하여	1964. 5.19
	체육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	1965. 2.
	황해남도 송화군 구탄중학교를 이현수중학교로 개칭함에 대하여	1966. 6.14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1966.11.24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한 법령을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	1967. 3.
	보통교육부문 각급학교교원들의 임금을 대폭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	1967. 9.
평양전기기관차공장을 김종대전기기관차공장으로 해주사범대학을 김종태사범대학으로 개칭함에 대하여	1969. 7.12	

## 4. 민사관계분야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요

이 시기(1948.9.8~1972.10.27)에 민사관계분야의 입법은 극히 미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형사관계분야는 1950년 3월 3일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채택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6.25한국전쟁기간 동안 「전시조건하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법 적용에 관한 지도적 지시(1950.7.22)」,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 이승만 매국도당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편으로 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의 몰산을 등록하며 이를 처분할 데 관한 결정서(1951.1.5)」, 「자수자 취급절차에 관한 규정(1951.2.10)」, 「군중심판에 관한 규정(1951.2.16)」, 「전시군사재판에 관한 규정(1952.11.29)」 등 많은 법령을 제정하여 법제적 측면에서도 총력전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민사관계분야의 입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1년 7월 11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결정된 「시효에 관한 규정」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시효기한이 짧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기관·기업소 상호간의 채무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시효는 3개월 또는 6개월이고, 외국으로 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국제연락운수 및 국제통산과 관련한 청구는 그 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1949년 11월 15일에 제정된 「후견인 또는 보조인 선정 및 감독에 대하여」 등이 있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 민사관계분야의 법령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

반면에 형사관계분야는 1950년에 기본법에 해당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벌금에 관한 규정(1972.4.17)」, 「신소·청원 및 검열에 관한 규정(1970.2.3)」, 「판결, 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1956.9.25)」,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1961.8.23)」 등 상당히 체계적인 입법이 이루

어졌다. 이는 형법 제7조에서 '죄'의 정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라고 규정한 것 처럼 형사관계분야의 입법정비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시하였던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형법은 사회주의법의 특징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법으로서, 우리의 형법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체계<sup>33)</sup>등 모든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반되고 있다. 우리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가 북한의 형법이론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는 봉건을 반대하여 투쟁한 부르주아지에 의하여 고안된 것이다. 부르주아지 형법학자들은 그것이 마치 지배계급의 전횡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며 판사를 말하는 기계로 만들고,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헌장인 것 처럼 선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반박<sup>34)</sup>하면서 유추해석을 「사회적 위험행위가 수행된 이상 그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의 형태들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sup>35)</sup>,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는 등 우리와는 상이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 (2) 주요법령의 소개와 입법동향

이 시기의 민사 및 형사관계 주요법령의 소개와 그 입법동향을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북한형법의 체계 및 내용은 본 보고서의 89~92면을 참조.

34) 한락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공화국 형법”,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사회과학원 출판사(북한), 1955, 83면.

35) 한락규, 위의 글, 82면.



## ① 민사관계 및 형사관계 주요법령의 소개

### <<민사관계>>

#### ○ 시효에 관한 규정(1961.7.11)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으로서 1956년 10월 5일에 「시효에 관하여(총 14개조로 구성)」를 제정·공포하였고, 이후 1961년 7월 11일에 정령으로서 「시효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에서 「시효에 관한 규정」의 승인과 「1956년 10월 5일 정령 <<시효에 관하여>>」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61년 7월 11일에 승인한 「시효에 관한 규정」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그 적용대상으로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기업소 호상간 및 그들과 개인간 또는 개인 호상간의 채무에 대한 시효」를 규정하고(제1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기업소 상호간의 채무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시효에 대하여는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변질·수량부족,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청구와 위약금·벌금·연체료의 청구 및 운수·체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는 3개월로(제1호), 전호 이외의 채무에 대한 청구는 6개월로(제2호), 외국으로 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련락 운수 및 국제 통신과 관련한 청구는 해당 협정에 의한 기간의 적용(제3호)」을 규정하며(제2조), 개인 상호간 또는 개인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기업소간의 채무이행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1년으로」으로 규정하고(제3조), 채무의 이행청구권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예산제 국가기관이 채권자로 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시효기간 내라도 해당 채무가 발생한 예산년도가 경과하면 시효기간이 경과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시효의 진행은 「리행기한이 지정된 채무 또는 채무리행 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채무에 대하여서는 리행기간이 도래한 때 또는 채무리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제1호), 리행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발생한 때로부터(제2호),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기업소 호상간에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부패·변질·수량부족,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보상청구는 그에 관한 사고 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해당 사고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제3호), 전 각호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리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제4호)」로 규정하며(제5조), 시효기간의 계산은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시효기간의 마지막 달에 시효진행의 첫날과 동일한 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기간이 끝나며, 시효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명절일 또는 국가가 정한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는 첫 로동일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기간이 끝난다」고 규정하고(제6조), 시효진행의 정지사유로서는 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 동안에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가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경우(제1호), 국가에서 지불유예를 결정하였을 경우(제2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현역 병사 및 하사관으로 복무하거나 군관으로서 전투상태에 처하여 있을 경우(제3호), 상속재산에 관하여서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제4호)」로 규정하면서(제7조)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사유가 소멸되면 시효의 진행은 다시 계속되고, 그 나머지 시효기간은 3개월로 연장한다(제8조)」고 규정하며, 시효진행의 중단사유로서는 「채권자가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제1호),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제2호),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기업소와 개인간 또는 개

인 호상간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제3호)」로 규정하면서(제9조) 「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사유가 끝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는 관계없이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된다(제10조)고 규정하고, 또한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무를 리행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제11조), 채권자가 시효기간 내에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소 또는 중재기관은 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제12조), 제정된 시효기간과 다르게 약정한 행위는 무효이며(제13조), 재판소 또는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시효의 리익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하고(제14조),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실시하되 본 규정 실시 이전의 채무에 대한 시효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 <<형사관계>>

##### ○ 형법 채택에 관하여(1950.3.3)

- 북한은 1950년 3월 3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서 「형법채택에 관하여」를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정령은 총 2편 23장 30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정령은 제1편 「총칙」에서 제1장 「일반적 규정(제1조~제6조)」· 제2장 「형사정책의 일반원칙(제7조~제17조)」· 제3장 「예비와 미수(제18조~제21조)」· 제4장 「공범(제22조~제26조)」· 제5장 「형벌(제27조~제45조)」· 제6장 「형벌의 적용절차(제46조~제49조)」· 제7장 「범죄의 병합(제50조~제52조)」· 제8장 「집행유예(제53조~제55조)」· 제9장 「만기전 석방(제56조~제58조)」· 제10장 「형사소추의 시효(제59조~제60조)」· 제11장 「사면(제61조)」· 제12장 「전과와 소멸(제62조~제63조)」에 대하여,

제2편 「각칙」에서 제13장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제64조~제81조)」· 제14장 「국가관리침해에 관한 죄(제82조~제102조)」· 제15장 「국가소유, 사회 및 협동단체소유침해에 관한 죄(제103조~제111조)」· 제16장 「인신침해에 관한 죄(제112조~제146조)」· 제17장 「공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제147조~제167조)」· 제18장 「로동법령위반에 관한 죄(제168조~제177조)」· 제19장 「공무상 죄(제178조~제193조)」· 제20장 「경제에 관한 죄(제194조~제217조)」· 제21장 「관리질서침해에 관한 죄(제218조~제258조)」· 제22장 「사회적 안전 및 인민보건 침해에 관한 죄(제259조~제264조)」· 제23조 「군사상 범죄(제265조~제301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정령은 특히 「총칙」에서 「일반적 규정」으로서 형법의 목적을 「죄를 범한 자에게 본 법에 규정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1조), 적용범위로서 「조선 내에서 죄를 범한 조선공민」과 「조선 이외의 영역에서 죄를 범하고 조선에 체재하는 조선공민」을 규정하며(제2조), 외국인에 대하여는 「조선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외교특권을 가지는 외국사람의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방법에 의하여 해결한다(제3조)」고 하면서 「본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제도의 기초와 군사상 위력을 침해하는 죄를 조선 이외의 영역에서 범하고 조선에 체재하는 외국사람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제4조)」고 규정하고, 아울러 「죄를 범한 자는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며(제5조), 어떤 행위에 대한 형벌적용을 폐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경하게 하는 법령은 그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정책의 일반원칙」으로서 「죄」의 정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로 규정하면서(제7조) 「각칙에  
규정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더라도 그 행위가 명백히 경미  
하고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제8조)고 하고, 「범죄적 행  
위로서 그에 직접해당하는 규정이 본 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  
는 본 법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제9  
조)」고 하며,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적용한다(제10  
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형벌을 적용함  
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써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고의의 행위」와 「과실의 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  
하고 있고(제11조), 예외적으로 「만성정신병 또는 일시적 정신지  
장·기타 병적 상태에서 사회적 위험한 행위를 한 자로서 그 행  
위 당시에 자기의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자」  
와 「행위 당시에는 정상적 정신상태에 있었으나 판결을 선고하  
는 당시에 정신병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처분을 적용  
할 수 있으나 「만취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처  
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제12조), 「14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형벌을 적용하고(제13조), 사회적으로 위  
험한 행위를 한 14세이상 18세미만의 자에 대하여서는 교정처분  
을 적용할 수 있으며(제14조), 형사법령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라 할지라도 국가주권 또는 자기 혹은 타인의 인신이나 권리에  
대한 긴급하고 불법스러운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그 방위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벌을 적  
용하지 않고(제15조), 형사법령에 규정된 행위를 할지라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다른 방법으로써 피할 수 없는 긴급한 위  
해를 피하고자 그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그로 인한 가해자가 방  
지한 위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하지  
않는다(제16조)」고 규정하고,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행한 범

죄행위로서 그 성질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없을 때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채택에 관하여(1950.3.3)

- 북한은 1950년 3월 3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형사소송법 채택에 관하여」를 제정·공포하였는데, 동정령은 총 25장 28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정령은 제1장 「기본원칙(제1조~제2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소 및 예심기관의 형사사건 심리절차는 본 법에 의거한다(제1조)」고 하면서 본 법을 「민주주의적 형사소송원칙의 기본(제2조)」이라고 선언하고, 재판소는 「법령에 규정이 없거나 또는 법령이 불비불명하다는 것을 리유로 하여 재판을 거부하지 못하며(제3조), 이미 확정재판을 받은 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받지 않지만 본 법 제268조·제270조에 의한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제4조)」고 규정하며, 형사소추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서 「심판자가 사망한 때(단, 제273조는 제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고소가 없을 때 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피소자와 피해자간에 화해가 있어 고소를 취소한 때(단, 검사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또는 고소의 취소를 승인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시효가 완성된 때, 피심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14세에 이르지 못한 자의 행위인 때, 대사로 인하여 형벌이 면제된 때 또는 피심자에 대한 특사가 있을 때, 확정판결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제5조),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이는 또 법령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제6조), 검사는 자기 관할구역에서 불법체포 또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혹은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되

어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를 석방하여야 하고(제7조), 공소는 검사가 하되 피해자 또는 그의 소속 직업동맹·기타 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공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으로써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제8조)」고 규정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고(제9조·제10조),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재판소를 구속하지만 그 사실이 죄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구속받지 않는다(제11조)」고 규정하며, 사소에 대하여는 「범죄로 인하여 손해 또는 불이익을 받은자는 피소자의 행위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청구액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당해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함께 이를 심리하며(제12조), 형사사건의 제기 이후·공판심리의 개시 이전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제기한 후 화해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심리하지 않고(제13조), 사소의 소송료는 납부하지 않으며(제14조), 사소청구의 거부는 공판에서만 할 수 있고, 거부당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5조)」고 규정하고, 「모든 공판은 공개하지만 국가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기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공민들의 개인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재판소의 리유 불인 판정에 의하여 공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금지할 수 있으며(제16조), 공개를 금지한 때에도 반드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제17조), 14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공판의 방청을 금지한다(제18조)」고 규정하며, 「사건의 조사심리에 있어서는 조선어를 사용하고,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통역을 붙이며, 외국인이 제출하는 진정서·기타 증거서류

에 한하여서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제19조)」고 규정하고, 아울러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별재판소·판사·검사·예심원·소송당사자·법정대리인·근친자·판결·판정·결정」이라는 용어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또한 동 정령은 제2장 「재판소의 관할(제21조~제31조)」·제3장 「재판소 구성, 소송당사자 및 배제(제32조~제44조)」·제4장 「증거(제45조~제59조)」·제5장 「조서(제60조~제64조)」·제6장 「기간의 계산 및 소송비용(제65조~제73조)」·제7장 「형사사건 제기(제74조~제78조)」·제8장 「수사(제79조~제85조)」·제9장 「예심(제86조~제99조)」·제10장 「립심 및 심문(제100조~제113조)」·제11장 「보전처분(제114조~제126조)」·제12장 「증인 및 감정인의 심문(제127조~제138조)」·제13장 「수색 및 압수(제139조~제147조)」·제14장 「검증 및 검진(제148조~제152조)」·제15장 「피심자의 정신상태 감정(제153조~제154조)」·제16장 「예심종결(제155조~제162조)」·제17장 「검사의 처분(제163조~제167조)」·제18장 「재판소의 공판전 수속(제168조~제174조)」·제19장 「공판(제175조~제217조)」·제20장 「공소의 변경 및 새 피소자에 대한 기소(제218조~제221조)」·제21장 「판결의 선고(제222조~제240조)」·제22장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제241조~제263조)」·제23장 「비상상소(제264조~제269조)」·제24장 「재심(제270조~제274조)」·제25장 「판결의 집행(제275조~제281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민사관계 및 형사관계 입법동향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민사관계	<p><b>&lt;민법&gt;</b>                      후견인 또는 보좌인 선정 및 감독에 대하여                      시효에 관하여                      시효에 관한 규정                      시효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관하여</p>	<p>1949.11.15                      1956.10. 5                      1961. 7.11                      1961. 7.11</p>
형사관계	<p><b>&lt;형법일반&gt;</b>                      중앙은행권을 위조 또는 그 위폐를 사용함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중앙은행권을 위조 또는 그의 위폐를 사용함에 대한 처벌에 관한 상임위원회정령 승인에 관하여                      형법 채택에 관하여                      이승만피괴정부의 국방군의 불의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전시조건하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법적용에 관한 지도적 지시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 이승만 매국도당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편으로 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의 몰산을 등록하며 이를 처분할 데 관한 결정서                      적에게 임시 강점당하였던 지역에서의 반동단체에 가담하였던 자들을 처벌함에 관하여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이승만매국역도와 결탁하여 인민을 탄압하고, 애국자를 무참히 학살한 악질반국가적 범죄자를 처단하는 데 관하여                      조선인민군 복무자와 그의 가족들중 적의 일시적 강점시기에 죄를 범한 자들에게 형사책임 및 사회적 제재를 면제함에 관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보상로동에 관한 규정                      벌금에 관한 규정</p>	<p>1949. 7. 9                      1949. 9.10                      1950. 3. 3                      1950. 6.25                      1950. 7.22                      1951. 1. 5                      1951. 1. 5                      1951. 4.17                      1954. 2.23                      1968. 7.                      1972. 4.17</p>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형사관계	<p><b>〈형사소송법〉</b></p> <p>형사소송법 채택에 관하여  전시에 로동자, 사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한 사건 및 직장 또는 작업에서 임의로  리탈한 사건을 참심원의 참가없이 시, 군(구  역) 인민재판소의 판사 단독으로 심리함에  관하여  자수자취급절차에 관한 규정  인민의 신소 및 소원을 제때에 바르게 해결  하는 조치  형사소송법 제83조와 제84조를 변경함에 관  하여  형사소송법 제8조에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강화할 데 관하여  신소·청원에 관한 규정  신소·청원처리활동을 강화할 데 대하여  신소·청원 및 검열에 관한 규정</p>	<p>1950. 3. 3  1950. 9.18    1951. 2.10  1952.12.17    1954. 6.15    1954. 6.15  1957. 5.31  1962.12.  1968.10.24  1970. 2. 3</p>
	<p><b>〈법원·법무〉</b></p> <p>대사실시에 대하여(1949년)  공증소에 관한 규정  변호사에 관한 규정(1948년)  인민군재판소에 관한 규정  집행문을 표기할 수 있는 문서에 관한 규정  재판소구성법 채택에 관하여  참심원의 로동임금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  대사실시에 대하여(1952년)  전시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  미제 무력 침범자들을 반대한 조국해방전쟁  의 승리와 관련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관하여  판결, 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p>	<p>1948. 9.10  1948.11. 1  1948.11. 1  1948.11. 1  1949.11.17  1950. 3. 1  1950. 3.29  1951. 2.16  1952.11.18  1952.11.29  1953. 7.28    1956. 9.25</p>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형사관계	조선인민의 민족적 각결 8·15해방 15주년을 맞이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관하여	1960. 8. 9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	1961. 8.2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1968. 6. 6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1971.11.29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1972. 1.25

## 5. 경제관계분야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요

북한의 경제관계분야는 경제·상사·토지 등의 부문으로, 사회관계분야는 사회보장·노동 등의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야의 법령들은 북한의 수립과 더불어 집중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왔는데,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생산관계 및 생산양식을 지속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경제관계분야에서의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1949.12.13)」, 「협동단체의 조직 및 사업강화에 관한 결정(1951.8.22)」, 「생활필수품의 국정소매가격을 인하할 데 관하여(1958.8.7)」, 「토지관리 규정(1960.7.5)」 등과 사회관계분야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협동기관, 기타 일반기업소 및 사무기관의 로동과 사무원에 대한 로동내부질서표준 규정(1950.1.31)」, 「표준로력기준량(1954.2.23)」 등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및 사회관계법의 역할은 국가기관, 기업소 등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규범화하여 통일시키는데 주력하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하여 조직된 국가기관·기업소들이 중앙의 통일적 지도하에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 및 사회관계의 대표적인 주요법령으로서 1948년의 「비상업 기관 상품판매금지에 관한 결정서(1948.12.16)」, 1950년의 「도량형기 사업강화에 대하여(1950.4.12)」,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서(1950.3.15)」, 1959년의 「공화국 북반부으로 넘어오는 남조선주민들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안정을 보장할 데 대하여(1959.1.26)」 등을 예시할 수 있다.

## (2) 주요법령의 소개와 입법동향

이 시기의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분야의 주요법령의 소개와 그 입법동향을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 주요법령의 소개

#### <<경제관계>>

##### ○ 도량형기 사업강화에 대하여(1950.4.12)

- 북한은 도량형기와 관련하여 1946년 7월 27일에 최초로 임시인민위원회 상업국 지령 제538호로 「도량은 메터, 형은 키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되 종래로 부터 관용하여 오는 척·관·승·야드 및 폰트에 의한 도량형기·계량기도 당분간 그 사용을 허하고, 1946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의 「도량형임시조치요강(총 14개조, 부칙으로 구성)」을 제정·공포하였고, 이후 1947년 6월 20일에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도량형제를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메-트로·그램제로의 통일의 준비」를 목적으로 「도량형통일준비에 관한 결정서(총 8개조로 구성)」를 채택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1947년 9월 2일에 북한의 상업국 규칙 제2호로 「도량형에 관한 임시규칙(총 43개조로 구성)」을 제정·공포하였고, 동 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1947년 9월 18일에 북한의 상업국 명령 제5호로 「도량형기 및 계량기의 구조규칙(총 31개조,

부칙으로 구성)을 제정·공포하였다.

1948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된 이후, 북한은 「각 도(평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량형기수리소가 지방산업관리국 산하 종합공장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량형기사업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1950년 4월 12일에 북한의 내각 지시 제224호로 「도량형기 사업강화에 대하여」를 내놓았는데, 총 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지시는 「도량형기중앙사업소를 새로이 조직하고 현재 지방산업관리국 산하 종합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도량형기수리소는 분리하여 이에 소속시키고(제1조), 현재 각 도(평양시) 수리소의 정원·일체 채권채무 및 사용중의 건물은 새로이 조직되는 도량형기중앙사업소에 이관하며(제2조), 각 도(평양시) 도량형기수리소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제3조), 산업상은 본사업을 1950년 4월 30일까지 조직·완료할 것(제4조)」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비상업기관 상품판매금지에 관한 결정서(1948.12.16)

- 북한은 「정권기관 또는 국영생산공장 및 기업소에서 아직도 국가 상업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말미암아 모리간상배들에게 충동의 여지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품류통계를 혼란시키며 국가상업류통계획과 상품가격조정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시정한다는 목적으로 1948년 12월 16일에 북한의 내각은 결정 제84호로 「비상업기관 상품판매금지에 관한 결정서」를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결정은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결정은 「정권기관 또는 국영생산공장 및 기업소에서 상품을 직접 시장에 판매함을 일절 금지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정권기관 또는 국영생산공장 및 기업소에서는 필요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처분할 때에는 중앙기관은 상업성 상업관리국에 넘기어 판매하도록 할 것이며, 지방정권기관 또는 국영생산공장 및 기업소에서는 도 상업관리소에 넘기어 판매하도록 할 것(제2조)」을 규정하고 있다.

## <<사회관계>>

- 공화국 북반부에도 넘어오는 남조선 주민들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안정을 보장할 데 관하여(1959.1.26)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9년 1월 26일에 정령으로서 「공화국 북반부에도 넘어오는 남조선 주민들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안정을 보장할 데 관하여」를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정령은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정령은 「남조선 실업자들이 공화국 북반부에도 넘어오는 경우에 그들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북조선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기능과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하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며 생활안정을 위한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준다(제1조)」고 규정하고, 「6.25당시 월남한 북조선 주민들이 공화국 북반부에도 넘어오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북조선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고향에 돌아가 안착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기능과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하고 취학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준다(제2조)」고 규정하며, 「북조선지역으로 부터 월남한 자들이 비록 과거에 조국과 인민들앞에 엄중한 죄과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과오를 뉘우치고 시정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공화국 북반부에도 넘어오는 경우에 북조선공민으로서 보호하며 고향에 돌아가 안착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취업과 취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준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서(1950.3.15)
  - 북한은 「기업소 및 사무기관에서 단체계약을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국가생산계획의 실행 및 초과 실행을 보장하고, 노동자·사무원의 물질적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데 대한 기업소 또는 사

무기관의 관리측과 직업동맹단체의 책임성을 일층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1950년 3월 15일에 북한의 내각 결정 제56호로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서」를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결정은 총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결정은 단체계약의 내용으로서 「생산계획의 실행 및 초과실행, 생산원가의 저하, 노동생산률의 제고, 로력조직의 개선, 기술기능의 향상, 생산기술규률의 강화, 노동자·사무원의 노동조건 및 물질문화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업소 또는 사무기관의 관리측과 직업동맹단체간의 호상관계와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고(제1조), 「관계 각 상의 합의를 얻어 1950년 3월 25일까지 <<표준단체계약서>>에 기초한 <<산별 표준단체계약서>> 및 <<산별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지도서>>를 작성하여 단체계약체결사업을 지도할 것을 북조선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한다(제2조)」고 규정하며, 「매개기업소 또는 사무기관에서는 1950년 4월 1일부터 1950년 6월 1일까지 종래의 단체계약 실행정형을 총화하는 동시에 <<산별 표준단체계약서>> 및 <<산별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지도서>>에 의거하여 대중적으로 광범위 토의를 전개한 후 그들의 제의를 접수하고 관리측과 직업동맹단체의 책임자간에 새로이 단체계약을 체결할 것(제3조)」이고, 「단체계약은 이를 체결한 해당 기업소 또는 사무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사무원에게 적용하며(제4조), 단체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기업소관리측과 노동자·사무원간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에는 내각의 결정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노동성대표의 참가밑에 북조선직업동맹 중앙위원회와 해당 성에서 공동으로 해결할 것이고(제5조), 새로이 체결한 단체계약은 체결한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 시·군·구역인민위원회 노동과에 등록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함과 아울러 「노동성에서 북조선직업동맹 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한 별지 <<표준단체계약서>>를 승인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 입법동향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b>&lt;경제&gt;</b>	
	사업등록에 관한 규정	1948.11.12
	사업등록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48.11.27
	공작기계등록에 관한 결정서	1949. 3. 5
	공작기계등록에 관한 규정	1949. 3. 5
	유휴원료자재 및 유휴시설동원 리용에 관한 결정서	1949. 3.11
	광산위탁경영제에 및 분광제실시에 관하여	1949. 9. 7
	휘발유탱크 및 도람관조사와 1950년도 휘발유조사에 관하여	1949.11. 5
	원동기단속에 관한 규정	1949.11. 9
	영예회장 산업모범일꾼 수여에 관한 규정	1949.12. 8
	증산경쟁기금에 의한 자금수여 절차에 관한 규정	1949.12. 8
	증산경쟁운동에 관한 결정서	1949.12. 8
	대외무역상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공장, 직장, 광산들에 대한 표창에 관한 규정	1950. 1. 6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실시에 관하여	1950. 2. 4
	생활필수품증산에 관한 결정서	1950. 3.21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	1950. 4. 3
	도량형기 사업강화에 대하여	1950. 4.12
	연채굴사업확장과 합면채굴수출증가대책에 관하여	1951. 2.25
	협동단체의 조직 및 사업강화에 관한 결정	1951. 8.22
	국가기구성원 규률강화와 비생산로력을 생산부문에 진출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1952. 2.21
식염공급사업의 원활한 보장 대책에 관하여	1952. 3.17	
생산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	1953. 3.27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비철금속류의 사용을 엄격하게 단속통제하며, 그 수집활동을 일층강화할 데 관하여	1953. 8. 4
	흑색금속류의 수집활동을 성공리에 보장할 데 대하여	1953.10. 7
	생산협동조합기준규약	1955. 2.
	지질탐사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	1957. 1. 4
	중공업기업소들과 생산재생산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 직장을 조직할 데 관하여	1957. 7. 6
	생활필수품생산대책에 관하여	1957. 9.23
	식료품가공 및 일용품생산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58. 7.10
	신의주 로초인견, 팔프, 스프, 방직, 염색 종합공업을 건설할 데 대하여	1958. 8.29
	비닐론 및 염화비닐공장 건설을 촉진시킬 데 관하여	1958.10. 9
	생산 및 수산협동조합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경공업성, 수산성 및 각 도(평양시, 개성시) 인민위원회들에 이관할 데 대하여	1958.10.18
	운봉발전소를 건설할 데 관하여	1958.10.29
	주민수입향상과 외화획득을 위한 개인들에게 사금채굴을 허가할 데 대하여	1959.10.10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무연탄가스화를 시급히 도입할 데 관하여	1961. 6.12
	자력갱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하여	1964. 6.24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1969. 3. 1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1972. 1.15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b>〈상사〉</b>	
	비상업기관 상품판매금지에 관한 결정서	1948.12.16
	1949년 제2차 국정가격, 운임 및 요금에 관하여	1949. 3. 5
	국정가격, 운임, 요금 및 부대비의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1950. 1.25
	시장물자구입에 관하여	1950. 2. 1
	1950년도 상업부대비에 관한 결정서	1950. 2.21
	1950년 국정가격, 운임 및 요금제정에 관한 결정서	1950. 2.22
	1950년도 국정가격·운임 및 요금	1950. 2.22
	잠정적 판매가격 결정에 관하여	1950. 4.28
	창고사업에 관한 규정	1950. 4.29
	생활필수품에 관한 리익금처분규정	1950. 6.22
	1951년도 국정가격·운임·요금·부대비 및 가격차금결정에 관하여	1951. 6.28
	1951년도 국정가격 및 요금 일부추가제정에 관하여	1951.10. 9
	피혁류 등급별 가격제정에 관하여	1952. 4.27
	국정가격, 운임, 요금 신규제정 및 일부개정에 관하여	1952. 5. 7
	가격제정에 대한 규정승인에 관하여	1952. 7. 3
	국영상업 및 소비조합사업개선을 위한 제대책에 관하여	1953. 2.
	민영사업허가제도실시에 관한 규정	1954. 9.13
	개인상공업허가에 관한 규정	1955. 8.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역할을 일층 높임으로써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국가축적을 증대하기 위해 상품유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57. 3. 6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할 데 대하여 평양시 상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생활필수품의 국정소매가격을 인하할 데 관하여 농촌 상업에 대한 지도와 상품공급 및 구매체계를 일부 개편할 데 대하여	1957.11.14 1958. 5.24 1958. 8. 7 1958.10.18
	<b>〈토지〉</b> 공화국 남반부의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법령기초위원회 조직에 관한 결정서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 토지행정에 관하여 국유건물 및 국유대지 사용료표 국유건물 및 대지관리에 관한 규정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 경작자가 없는 토지의 조치에 대하여 경작자없는 토지를 공동경작할 데 관하여 내무성 및 교육성산하기관들의 농장에 소요되는 토지해결대책에 관하여 각 대학 및 각 전문학교의 부업농장 운영에 관하여 토지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관하여 토지관리규정 토지관리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하여	1949. 1949.12.13 1950. 1. 7 1950. 3.25 1950. 3.25 1950. 7. 4 1950.12.26 1951. 5.22 1952. 2.21 1952. 2.26 1955. 2.28 1960. 7. 5 1960. 7. 5
사회관계	<b>〈사회보장〉</b> 보건기관직원의 봉급개정에 관한 결정서 약품에 관한 규정 종두에 관한 규정 종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하여 방역위원회 개편에 관한 결정서 방역위원회에 관한 규정	1948.12.16 1949. 2.12 1949. 2.15 1949. 5. 2 1949. 9.14 1949. 9.14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사회관계	산원에 관한 규정	1949.10.28
	마약에 관한 규정	1949.11. 2
	수의사검정시험에 관한 규정	1950. 6. 3
	반동분자를 처벌하는 경우 해당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함을 금지하는 데 관한 규정	1951. 1.15
	검역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하여	1952. 5. 6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기업소 로동자,	1955. 8.11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향상 대책에 관하여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1956. 2. 3
	대하여	
	일본에서 귀국하는 조선공민들의 생활을	1956. 6.
	안정시킬 데 관하여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정의 제반대책을 수립	1956. 6.10
	할 데 관하여	
	로동자, 사무원의 부양가족의 광범한 직장	1956.12.
	도입과 그 활동조건을 보장할 데 관하여	
	국가사회보험 및 로동보호관계사업에 대한	1958. 2.10
	관리기능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부여함에 관하여	
사회급양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58.10. 3	
공화국 북반부에서 넘어 오는 남조선 주민	1959. 1.26	
들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안정을		
보장할 데 대하여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는 조선공민들을 영접	1959. 2.16	
할 데 대하여		
편의봉사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60.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기술자 및 기업가들	1960. 4.16	
의 사업조건과 생활활동은 적극 보장할 데		
대하여		
조선소년의 영예상을 제정함에 관하여	1961. 6. 5	
남반부의 절량민들과 풍수해 이재민들을	1963. 6.28	
구제할 데 대하여		
경락계통의 연구사업을 확대발전시킬 데	1964. 3.11	
대하여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사회관계	<b>&lt;노동&gt;</b>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급 사업에 관한 결정서	1948.12.16
	여성상당소에 관한 규정	1948.12.23
	유아상당소에 관한 규정	1948.12.23
	탁아소에 관한 규정	1949. 2. 1
	조선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 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	1949. 5. 9
	간부 및 기술자 상금제에 관한 규정	1949.10.18
	휴가허여절차에 관한 규정	1949.11. 4
	검역소에 관한 규정	1949.11. 5
	소독처 및 소독소에 관한 규정	1949.11. 5
	리인민위원회정원 및 봉급개정에 관한 결 정서	1949.11.17
	로동간부양성소 설치에 관하여	1949.11.29
	특수기능자우대에 관한 규정	1949.12. 8
	로동자임금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9.12.27
	로동자임금적용에 관한 규정	1949.12.27
	공용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1949.12.28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49.12.30
	대학병원에 관한 규정	1950. 1.19
	국가기관, 사회단체, 협동기관, 기타 일반기 업소 및 사무기관의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내부질서 표준규정	1950. 1.31
	농촌지대 교원에 대한 채소원 급여에 대한 규정	1950. 2.20
	법의감정원에 관한 규정	1950. 2.20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서	1950. 3.15
	보건소 의약품생산 연구위원회에 관한 규정	1950. 3.15
약품에 관한 규정 일부 추가에 관하여	1950. 4. 5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사회관계	정양소에 관한 규정	1950. 4.10
	기업소 로동물자 공급부에 관한 규정	1950. 4.12
	산업성산하 기업소들의 로동물자 공급사업 을 강화할 데 관한 결정서	1950. 4.12
	전재민구호대책에 관한 결정서	1950.11.20
	해방지구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 한 결정서	1950.12.12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 인민생활 안정 을 위한 제대책에 관한 결정서	1951. 1.25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	1951. 8.30
	국가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1951. 8.30
	사회보장관리기구 및 정원	1951. 8.30
	수해이재민구제대책에 관하여	1951. 9.10
	사회보험 직장야간휴양소에 관한 규정	1952. 3.19
	기술일꾼들을 우대함에 관하여	1952. 4.24
	농촌에서 빈민들에 대한 고리대 현상을 제 지할 데 관하여	1952.10.30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대하여	1952.11.13
	국가비상방역위원회 재조직에 관하여	1952.12. 8
	빈농민 및 영세어민들의 경제형편 개선대 책에 대하여	1953. 2.18
	인민경제중공업부문복구건설사업에서 부족 한 로동력과 기술공양성확보의 대책에 관 하여	1953. 8.
	제대군인 및 영예 전상자들의 직업알선과 취학조건을 보장할 데 관하여	1953. 8.14
	기업소 및 기관 로동자, 사무원들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대하여	1953. 8.31
	로력조직을 개선하며 로력기준량을 재검정 할 데 관하여	1953. 9.18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사회관계	영세농민들의 생활형편을 개선하며 영농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융자적 방조를 줄데 관하여	1954. 1.15
	로력기준량을 재사정 실시할 데 관하여	1954. 2.23
	전후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급금제도 설정에 대하여	1954. 2.23
	표준로력기준량	1954. 2.23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수산물공급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54. 3.11
	도급로동임금제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하여	1954. 3.30
	인민보건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54. 6. 4
	국가사회 및 협동단체의 기관 및 공업소의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해직 또는 전직절차에 관한 규정	1954.12.
	비생산로동력을 축소하여 로동력의 합리적 조절배치에 관하여	1955. 1.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개편할 데 대하여	1956.12.21
	제약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57. 5.23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함에 관하여	1957.12.31
	위생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관하여	1958. 5.19
	인민경제 각 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 데 대하여	1958. 7.19
	디스토마 예방치료 전문일꾼 및 중등 보건일꾼 양성사업을 보장할 데 대하여	1958. 7.21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데 관하여	1958.10.29
위생, 문화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데 관하여	1959.11. 7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관하여	1960. 2.27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1.5% 올릴 것에 대하여	1970. 8.31	

## IV. 1972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

### 1. 1972년의 북한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1948년의 북한헌법의 다섯 차례의 개정후, 1972년 10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의 북한헌법은 북한정권의 수립으로부터는 제6차의 개정에 속하지만, 이 헌법의 성격상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헌법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1948년의 북한헌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이라고 사용하던 것을 1972년의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바뀌었으며, 그 내용상으로도 그 기본이념과 권력구조(국가성격·혁명목표·경제체제·주석제 신설 등) 등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72년의 북한헌법의 제정동기는 그들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 발전의 초기형태인 인민민주주의원리가 더이상 맞지 않게 되었고, 그 가운데 중국과 소련사이의 이념분쟁과 '주체사상'의 등장이라는 이념적 변화를 겪었으며, 당과 국가기관에 관한 규정, 즉 권력구조부문의 실질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948년의 북한헌법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sup>36)</sup> 그러나 1972년

36) 1972년의 북한헌법의 채택이유로서 공산주의 체제가 이룩한 성과를 자국내에 확신시킴과 동시에 한국 국민에게 북반부에서는 이미 제1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의 영역을 벗어나 더욱 진보된 국가형태인 「프로레타리아」독재로서의 사회주의국가에 도달한 것으로 자인·과시하기 위하여 약 25년전에 제정된 1948년의 북한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정비해야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다(井手成三, "북한신헌법해설", 북한 신구헌법비교연구, 중앙정보부, 1977, 77~78면).



의 북한헌법은 북한사회를 전체인민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로선의 관철을 선언(제10조)」하고 있는 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완성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러한 1972년의 북한헌법의 주요특징으로서는 노동당에의 초헌법적 지위부여의 명시화·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국가주석제의 도입·집단주의원칙의 강조·남북통일문제의 직접적 언급 등을 예시할 수 있다.<sup>37)</sup> 특히,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는 공산당(노동당) 1당독재체제와 김일성 우상화체제의 확립을 통한 「김일성 1인독재체제」의 제도적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한 헌법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1972년의 북한헌법은 총 11장 149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헌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제1장에서 제3장에 걸쳐 정치(제1조~제17조)·경제(제18조~제34조)·문화(제36조~제48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정치적인 면에서는 국가의 성격을 「사회주의국가(제1조)」라고 정의하면서 국가의 기초로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거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사회주의체제를 명시하였고, 또한 지도원리로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4조)」고 하여 주체사상의 우위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은 ① 주권은 「로동자·농민·병사·근로인테리」에 있고(제7조), ②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조직·운영되고(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하며(제10조),

37) 1972년 북한헌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전통은 1992년의 북한헌법에도 이어져 북한의 법현실에 있어서 북한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많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③ 국가사업은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이 관철되며(제12조), ④ 사회주의 건설은 「천리마운동」이 적용되고(제13조), ⑤ 대외적으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제16조)는 조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하고(제18조), 소유형태는 「국가소유(전체 인민의 소유)」(제19조)·「협동단체소유(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제20조)·「개인소유(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제22조)로 인정하면서 협동단체의 소유는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하고(제21조), 개인소유는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제22조). 아울러 국가의 관리운영방법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고(제30조), 국가경제는 「계획경제」이며(제31조), 세금제도는 「완전히 없앤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3) 문화적인 면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발전(제36조)·「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의 실시와 국가부담(제41조)·「탁아소·유치원」에 대한 국가·사회부담(제43조)·「전반적 무상치료제」의 발전(제4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38)</sup>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49조~제72조)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새로이 추가하였고(제49조), 1948년의 북한헌법과는 달리 선거권의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제52조), 신앙의 자유에 있어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종교 말살정책을 헌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제54조).

세째로, 권력구조에 대하여 1972년의 북한헌법은 주권기관으로서 제5장 「최고인민회의(제73조~제88조)」·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제89조~제99조)」·제7장 「중앙인민위원회(제100조~제106조)」·제9장 「지방인민회의·인민위원회(제115조~제127조)」를 두고, 행정적

38) 문화적인 면에서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며 그 질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장에 규정된 조항들은 「단순히 종이 위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된 제성취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福島正夫,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社會主義新憲法, 法律時報(1973.4), 137면).

집행기관으로서 제8장 「정무원(제107조~제114조)」· 제9장 「지방행정위원회(제128조~제132조)」, 사법기관으로서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제133조~제146조)」를 두고 있다. 헌법·권력구조의 구성요소로서 각 기관의 성격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제73조)·국가주석의 선거권(제76조)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만, 일반적인 행정권의 우위·예산심의권의 결여·대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의 지명권이 노동당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권한의 실효성이 없는 기관이다. (2) 중앙인민위원회는 1972년의 북한헌법에 신설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제100조) 1948년의 북한헌법상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정령제정권」과 내각이 가지고 있던 「정책결정권」을 가짐과 아울러 사법과 검찰을 지도하는 권한까지도 가지는 강력한 기관이다(제103조). 그러나 중앙인민위원회와 국가주석의 관계를 보면,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가 국가주석이고(제101조),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므로(제91조), 실질적으로는 중앙인민위원회가 국가주석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주권을 대표하고(제89조),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고(제90조),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제91조) 정무원 회의를 소집·지도하고(제92조), 최고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제93조), 특사권(제95조)·조약의 비준 및 폐기(제96조)·사신의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접수(제97조)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며, 주석은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제98조).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주석에 대한 소환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72년의 북한헌법에서 신설된 국가주석제는 1948년의 북한헌법이 최고인민회의·수상·최고재판소라는 형식적인 3권분립의 형식을 취하면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합의제적인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한 반면에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4) 지방주권기관으로서 각급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인민회의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제123조). 그러나 지방인민회의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과거 보다 대폭 그 권한이 약화되었다(제103조). 이것은 지방의 권한이 약화되고 중앙의 지시에 따르는 중앙집권체계가 강화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5)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는 정무원과 각급의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정무원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제107조)이지만 1948년의 북한헌법의 내각이 바뀐 것으로 중앙인민위원회에 그 권한의 대부분을 이양하고 정책집행권만을 행사할 뿐이고, 지방행정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해당 지방주권기관 앞에 책임을 지며 동시에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32조). (6) 사법기관으로서는 재판소와 검찰소가 있는데, 재판소의 종류로는 중앙재판소·도재판소·인민재판소·특별재판소가 있고(제133조), 검찰소의 종류로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있다(제144조). (7) 노동당 관련조항으로, 1972년의 북한헌법은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노동당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최고기관을 지도하는 초헌법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와 같은 1972년의 북한헌법의 권력구조의 특징은 권력구조의 구성요소로서 각 기관의 성격과 상호작용관계를 실질적으로 고찰하게 되면, 「권력분립의 배제·1인독재·노동당의 우월」으로 축약된다.

마지막으로 1972년의 북한헌법은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에 대하여 3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1948년의 북한헌법과 비교하여 특별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의 개정한 부문으로서, 이는 제5조의 남북통일문제 조항에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와 균형을 맞춘 개정으로서 헌법상 현실을 수긍하여 수용한 것이다.

1972년의 북한헌법은 제14조에서 주체사상을 공화국활동의 지도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그 이후의 모든 법령들이 반드시 주체사상을 그 입법목적으로 구성하고 있음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이다.

## 2. 헌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요

1972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된 초기에 북한사회는 국가관리체계를 정규화하고,<sup>39)</sup>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확립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에 근거한 구체적인 법규범을 제정하기 시작했다.<sup>40)</sup> 즉, 행정·경제기관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 법제위원회·지방주권기관·지방인민위원회·행정위원회 등의 조직·활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 및 사회주의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법의 준수집행에 대한 검열감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금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의(1972.10.28~1992.4.8)의 헌정관계 입법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권관련 부문의 입법은 거의 없고,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1980년 10월 13일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1946년의 규약과 비교할 때에 당원의 입당연령을 종전의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어 그 저변을 확대하였고, 김일성중심의 주체사상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의 조직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인민군대 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면서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1972년의 북한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노동당의 초헌법적 지위가 명실공히 실질화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이 나오고, 1977년 7월 13일에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규약」을

39)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刑事法制, 社會評論社, 1988, 124면.

40) 大内憲昭, “朝鮮民主主義憲法”, アジアの社會主義法, 社會主義法研究會(編) 社會主義法研究年報 No 9, 法律文化社, 1989, 48면.

제정하여 대남전략전술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80년 후반과 1990년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새로운 국제경쟁질서가 형성되자 헌정관계분야의 입법에 있어서 권력구조의 잦은 개편과 남북대화와의 참여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주체사상의 수령론과 유일체제에 근거한 헌정의 기본틀에 새로운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 (2) 주요법령의 소개와 입법동향

이 시기의 헌정관계분야의 주요법령의 내용소개와 입법동향을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헌정관계 주요법령의 소개

#### ○ 조선로동당 규약(1980.10.13)

- 북한은 1946년 8월 30일에 「조선로동당 규약(총 4장 40개조로 구성)」을 제정·공포한 이래로 1980년 10월 13일에 총 10장 60개조로 구성된 「조선로동당 규약」을 공포하였다. 동 규약은 제1장 「당원(제1조~제10조)」·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제11조~제20조)」·제3장 「당의 중앙조직(제21조~제30조)」·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제31조~제35조)」·제5장 「시(구역)·군의 당조직(제36조~제40조)」·제6장 「당의 기층조직(제41조~제45조)」·제7장 「조선인민군내 당조직(제46조~제50조)」·제8장 「정치기관(제51조~제55조)」·제9장 「당과 근로대중의 조직(제56조~제58조)」·제10장 「당의 재정(제59조~제60조)」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규약은 1946년의 규약과 비교할 때, 그 목적에 있어서 종래에는 「조선근로대중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로서 조선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할 부강한 민주주의적 조선독립

국가 건설과 근로대중의 정치·경제 및 문화생활수준의 향상(제2조)」을 규정하였으나 1980년의 규약은 1972년의 북한헌법을 반영하여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고, 그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추진하고, 로동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족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모든 당사업의 기본 원칙으로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서문)」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원의 자격으로서 종전의 규약은 「20세에 달한 남녀(제5조)」로 규정하였으나 「만 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고 하여 연령조건을 인하하였으며(제3조), 입당조건에 대하여도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또한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에 있어서도 종전에 없던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제11조)」는 조직원칙을 선언하면서 「조선인민군대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제47조)」고 규정하고, 당의 재정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제4장 「당 규률」의 한 조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한 장으로 분리·규정하여 제10장 「당의 재정」에서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들로 부터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제59조)」고 규정하면서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제60조)」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전략위원회 규약(1977.7.13)
- 북한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 위업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계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이므로,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 운동을 더욱 확대·강화하려는 념원으로 부터 출발하여 1977년 2월 21일과 22일 브뤼셀에서 진행된 세계대회 결정에 따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전략위원회를 창설한다」는 목적으로 「국제전략위원회」를 창설하고, 북한은 1977년 7월 13일에 「국제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전략위원회 규약」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규약은 총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약은 그 목적으로는 「국제전략위원회는 남조선으로 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며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파탄시키며 조선의 분렬을 반대하며 남조선에서 과썬독재를 청산하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광범한 연대성운동을 벌리는데 기여할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조), 조직의 성격으로서는 「각이한 나라들에 조직된 조선통일지지운동들 사이에 련계를 맺어주고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기구이며, 또한 자기의 목적실현에 협조할 것을 희망하는 모든 정부들과 정당·사회단체·정부적 및 비정부적 국제 및 지역기구들과 모든 인사들에게 그 활동에 참가할 것을 호소한다」고 규정하며(제3조), 조직기구로서는 「대회·집행위원회·서기국」을 규정하면서 그 임무와 활동지침을 규정하고(제4조), '서기국'의 소재지로서는 「프랑스 파리」를 규정하면서 「국제전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재지를 옮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조), 재정에 대하여는 「그 성원들의 기부금과 회사금, 그리고 수집된 자금으로 이루어 지며, 서기장이 관할하고, 또한 서기장은 재정회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5조), 본 규약의 개정에 대하여는 「세계대회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② 헌정관계 입법동향<sup>41)</sup>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p><b>&lt;헌법일반&gt;</b></p> <p>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헌법(1972년)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조선로동당 규약(1980년)</p>	<p>1972.12.28 1972.12.28 1979.12.12 1980.10.13</p>
	<p><b>&lt;권력구조&gt;</b></p> <p>지방주권기관구성법의 채택에 대하여 자재공급위원회를 새로 내움에 대하여 도인민위원회 활동규정과 군인민위원회활동규정의 승인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1977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1977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조직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1982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1982년)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를 내움에 대하여 도·시·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1985년) 금속 및 기계공업위원회를 없애고 금속공업부와 기계공업부를 내움에 대하여 시·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1987년)</p>	<p>1974.12.19 1974.12.31 1977.4. 2 1977. 9.11 1977. 9.11 1977. 9.28 1982. 1. 9 1982. 1. 9 1984. 1.27 1985. 1.23 1987.10.14 1987.10.16</p>

41) 입법동향에 소개된 법령명 중에서 「\*」표가 있는 법령은 정확한 공포·제정일은 아니지만, 북한의 정부기관지인 「민주조선」의 법규해설 부문에 근거하여 가장 근접한 일자리를 채택한 것이다(이하 통일함).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정무원의 일부 위원회들을 분리하여 위원회, 부들을 새로 내움에 대하여	1988. 6. 2
	립업부를 내움에 대하여	1988.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위원장을 임명함에 대하여	1989. 1.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부를 내움에 대하여	1989. 1.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부장을 임명함에 대하여	1989. 4.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장을 임명함에 대하여	1989. 6.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을 임명 및 해임함에 대하여	1989. 6. 8
	조선체육지도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체육위원회로 고칠데 대하여	1989. 6.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를 해임함에 대하여	1989.1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위원장을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하여	1989.10.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선거에 대하여	1990. 5.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선거에 대하여	1990. 5.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일부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함에 대하여	1990.10.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일부성원들을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하여	1990.12. 4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최고인민회의상설 회의에서 심의결정한 법들을 승인함에 대하여	1991. 4.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	1991.10.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일부성원들을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하여	1991.12.18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p><b>&lt;통일문제&gt;</b></p> <p>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연락 위원회규약 1977. 7.13</p> <p>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1980.10.10</p> <p>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 데 대하여 1984. 1.25</p> <p>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1984. 1.26</p> <p>북과 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 1985. 4. 9</p> <p>북과남, 해외의 애국인사들에게 &lt;&lt;조국통일상&gt;&gt;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0. 8.15</p> <p>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lt;&lt;김일성상&gt;&gt;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1. 5.12</p> <p>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2.19</p> <p>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19</p> <p>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2.19</p> <p>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3.19</p>	
국제·외무관 계	<p>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 구노쥬지와 사무국장 히로세 히데요시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12.23</p> <p>평양외국인병원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6. 5</p>	

### 3. 행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요

북한의 1972년 사회주의헌법시기의 행정관계분야의 법령들은 대체적으로 주체사상이라는 지도이념에 철저히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입법동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령의 입법목적 내지 기본원리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주체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행정일반부문의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에 관한 규정(1973.7.3)」·「3대혁명붉은기수여에 관한 규정(1977.9.6)」 등은 주체사상을 독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령이며, 1982이년 1월 23일에 제정된 「사회주의애국상을 제정함에 대하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총련계의 제일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연대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또한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1979.4.6)」·「인민교원칭호에 관한 규정(1980.1. 15)」·「인민의사·인민약제사칭호에 관한 규정(1980.3.15)」 등도 구체적인 각 부문의 사업을 명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주체사상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에 들어서면서도 북한법은 각 개별법의 기본원칙부분에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함에 대하여」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데, 재무부문의 「물자소비기준제정에 관한 규정(1990.1)」, 농림수산부문의 「양어사업규정(1990.1)」, 건설부문의 「강하천관리규정(1990.3)」·「도시시설물관리규정(1990.7)」·「공공건물관리규정(1990.8)」·「도로관리규정(1990.9)」, 과학기술부문의 「과학기술법(1989.1)」 등이 그 예이다. 이는 1972년의 북한헌법의 최고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반영이 각 개별법령의 제정시 강제되고 있는 북한의 입법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부문은 1992년 헌법의 개정에 의하여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 (2) 주요법령의 소개와 입법동향

이 시기의 행정관계분야의 주요법령의 내용소개와 그 입법동향은 다음과 같다.

### ① 행정관계 주요법령의 소개

#### <행정일반>

-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을 제정함에 대하여(1973.7.3)
  - 북한은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기술혁명과 국가의 생산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제로서 경제의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보다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기계설비들의 창안·제작을 독려한다는 의도로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으로서 1973년 7월 3일에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정령은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함에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연구·도입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정확히 반영되고 나라의 기술혁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기계설비들을 설계·제작한 설계가·제작자와 그 기계설비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의 제정과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에 관한 규정」 및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메달에 대한 그림폴이」를 승인하고 있다.
-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에 관한 규정(1973.7.3)
  -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을 제정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1973년 7월 3일에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정은 총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정은 수여대상으로서 「기계설계가·제작자 및 그 기계설비」를 규정하고(제1조), 수여주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를 규정하며(제2조), 수여물로서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상징과 공로에 따라 금·은·동메달의 3종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 사회주의애국상을 제정함에 대하여(1982.1.23)

- 북한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총련계열의 재일교포들을 격려·고무하고, 국가적으로 표창함으로써 그들의 연대성을 강화한다는 의도로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으로서 1982년 1월 23일에 「사회주의애국상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정령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튼성·발전과 총련의 애국사업에 공헌한 재일 조선상공인들의 공로를 국가적으로 표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사회주의애국상」의 제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애국상에 관한 규정」 및 「사회주의애국상메달 그림폴이」를 승인하고 있다.

○ <<3대혁명붉은기>>를 제정함에 대하여(1977.9.6)

- 북한은 북한지역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아래에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야 할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구의 반영으로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북한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울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운동에 이바지한 성원·단위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함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북한의 모든 성원·단위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의도로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1977년

9월 6일에 정령으로써 「<<3대혁명붉은기>>를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정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단위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3대혁명과업을 잘 수행한 단위들에 수여하는 최고표창인 <<3대혁명붉은기>>의 제정과 「3대혁명붉은기수여에 관한 규정」 및 「'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영예휘장'의 그림풀이」를 승인하고 있다.

○ 3대혁명붉은기수여에 관한 규정(1977.9.6)

- 「<<3대혁명붉은기>>를 제정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1977년 9월 6일에 「3대혁명붉은기수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정은 총 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정은 (1) 수여대상으로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이 되고 있으며, 3대혁명붉은기수여를 위한 판정위원회의 판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2) 3대혁명붉은기수여를 위한 판정위원회의 조직·구성·판정기준으로서는 「판정위원회는 중앙과 도·시·군에 두고, 각급 판정위원회는 비상설기관으로서 인민위원회 일군·당 일군·3대혁명소조책임자·근로단체 일군·해당부문 행정경제 일군들로 조직하며, 또한 위원장·부위원장 2명·일정 수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판정사업은 따로 정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기준과 판정요강>>에 근거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3) 수여주체 및 법형식으로서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4) 수여방식으로서는 「수여받는 단위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표창장을, 그 성원들에게 3대혁명영예휘장을 수여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국가적으로

표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즉, ① 2중천리마작업반(또는 직장)의 경우는 천리마영예상을 함께 수여하고, ② 공장·기업소의 경우는 근위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함께 수여하되 이미 근위칭호를 수여받은 단위에는 계관근위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함께 수여하고, ③ 철도운수부문의 역·대들의 경우는 철도근위칭호를 함께 수여하되 이미 철도근위칭호를 수여받은 단위에는 한급 높은 철도근위칭호를 수여하고, ④ 협동농장·국영농목장의 경우는 영예칭호를 수여하되 이미 영예칭호를 수여받은 단위에는 한급 높은 영예칭호를 수여하고, 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의 군부대·구분대의 경우는 국기훈장 제1급을 함께 수여하고, ⑥ 이미 계관근위칭호를 수여받은 공장·기업소·국영농목장·협동농장들과 이미 근위 1급칭호를 수여받은 역·대들의 경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표창장과 국기훈장 제1급 및 계관근위칭호에 따르는 상급 또는 선물을 수여하고, ⑦ 과학교육·문화예술·출판보도 및 보건부문의 기관들의 경우는 국기훈장 제1급을 함께 수여하고, ⑧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특출한 공훈이 있는 일군들에 대하여는 해당단위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할 때 함께 수여한다. (5) 이미 수여된 3대혁명붉은기를 중앙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박탈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수여받은 단위들이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계속 앞장서 나갈 대신에 커다란 결함을 나타내었을 경우와 성원의 50%이상이 조동되었거나 교체되어 재판정한 결과 3대혁명붉은기 수여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 <<3대혁명붉은기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1986.11.20)

- 북한은 1977년 9월 6일에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으로서 「<<3대혁명붉은기>>를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한지 9년이 경과한 1986년 11월 20일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 기백이 충만하고 사상·정신적 변모와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과 아울러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운동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이바지한 주민들을 표창한다는 의도로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으로서 「<<3대혁명붉은기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정령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이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며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움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한 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3대혁명붉은기훈장>>」의 제정과 「<<3대혁명붉은기훈장>>수여에 관한 규정」 및 「<<3대혁명붉은기훈장>> 그림폴이」를 승인하고 있다.

○ <<3대혁명붉은기훈장>>수여에 관한 규정(1986.11.20)

- 「<<3대혁명붉은기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1986년 11월 20일에 정령으로서 「<<3대혁명붉은기훈장>>수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정은 총 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정은 수여대상으로서는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자신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문화·생활문화를 확립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한 3대혁명붉은기 기수들(제1조)」과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의 3대혁명붉은기 기수들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지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들(제3조)」을 규정하고, 수여주체 및 범형식으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을 규정하며(제2조), 착용의 위치로서는 「왼쪽 가슴 위의 국기훈장제2급 다음에 단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 인민교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80.3.15)

- 북한의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1977년 9월 7일에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로서 「①교육에서 당성·로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②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③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④사회주의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등을 제시하면서, 교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함에 있어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교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함으로써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도로 1980년 3월 15일에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으로서 「인민교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정령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교육부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우리 당의 교육정책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교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교원칭호」의 제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교원칭호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있다.

○ 인민교원칭호에 관한 규정(1980.3.15)

- 「인민교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1980년 3월 15일에 정령으로서 「인민교원칭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정은 총 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정은 수여대상으로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20년이상

교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공훈교원」으로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교수교양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 교수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후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 데서 전국적인 모범을 창조한 공훈교원, 학과목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교편물과 실험실습기재·교재원을 잘 마련하고 강의와 실험실습을 옹게 결합하여 특출한 교육경험을 창조하고 일반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공훈교원, 학교의 물질기술적 토대와 교육환경을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잘꾸리고 교원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공훈교원」을 규정하고(제1조), 예외로서 「로력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교원은 공훈교원이 아니라도 이상과 같은 특출한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교원칭호의 수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2조), 수여주체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를 규정하고(제3조),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교원칭호를 수여받은 일군에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교원칭호 증서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 인민의사칭호와 인민약제사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80.3.15)
  - 북한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보건사업을 「가장 책임적인 사업이며 매우 영예롭고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이바지한 보건관계자를 국가적으로 표창한다는 의도로 1980년 3월 15일에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으로서 「인민의사칭호와 인민약제사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 동 정령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

한 보건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사칭호와 인민약제사칭호」의 제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사·인민약제사칭호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있다.

○ 인민의사·인민약제사칭호에 관한 규정(1980.3.15)

- 「인민의사칭호와 인민약제사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1980년 3월 15일에 정령으로서 「인민의사·인민약제사칭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정은 총 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정은 수여대상으로는 「충성심을 깊이 20년이상 의사·약제사로 사업하고 있는 공훈의사·공훈약제사」로서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위생방역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사람들의 생활조건과 노동환경을 더욱 위생문화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움으로써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공훈의사, 전문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환자치료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무상치료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공훈의사, 우리 나라의 약초자원에 기초하여 동약을 더욱 발전시키고 의약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임으로써 치료기관들과 인민들의 의약품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보건사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훈약제사, 새로운 의학과학분야들을 개척하여 보건부문에 널리 일반화하고 유능한 보건기술일군들을 많이 양성함으로써 우리 나라 의학과학기술과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공훈의사·공훈약제사」를 규정하고(제1조), 예외로서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의사·약제사는 공훈의사·공훈약제사가 아니라도 이상과 같은 특출한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인민의사·인민약제사칭호의 수여대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며(제2조), 수여주체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를 규정하고(제3조),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사·인민약제사칭호를 받은 일군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사·인민약제사칭호 증서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 조국해방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1985.7.25)

- 북한은 북한정권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일군들과 근로자들, 군인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한다는 의도로 그들의 소위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에 즈음하여 1985년 7월 25일에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으로 「조국해방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정령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투사들과 해방 후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조국 건설시기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시기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정권, 인민무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 군인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국해방기념메달」의 제정과 「조국해방기념메달수여에 관한 규정」 및 「조국해방기념메달에 대한 그림폴이」를 승인하고 있다.

○ 조국해방40돐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1985.7.25)

- 북한은 북한정권과 친선·단결하여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교류·협조의 강화·발전에 이바지하고, 북한의 명절을 경축하는 외국의 친북인사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한다는 의도로 그들의 소위 '조국해방 40돐'에 즈음하여 1985년 7월 25일에 북한의 중앙인

민위원회는 정령으로 「조국해방40돛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정령은 「우리 나라와의 친선단결과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인민과 함께 혁명적 명절을 경축하는 외국의 벗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국해방40돛기념메달」의 제정과 「조국해방40돛기념메달수여에 관한 규정」 및 「조국해방40돛기념메달에 대한 그림풀이」를 승인하고 있다.

### <재무>

#### ○ 새 돈을 발행할 데 대하여(1979.4.6)

- 북한은 「1959년에 화폐교환이 있을 때로부터 20여년 동안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화폐제도를 강화하고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확대·재생산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의도로 1979년 4월 6일에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으로서 「새 돈을 발행할 데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정령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화폐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폐유통을 보다 원활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은 1974년 4월 7일 부터 새 돈(100원·50원·10원·5원·1원 50전)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낡은 돈'은 1979년 4월 7일 ~ 4월 12일 사이에 그 금액에 제한없이 새 돈과 교환하며 그 교환비율은 1대1이고, 1979년 4월 7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새 돈을 유일한 지불수단으로 하여 '낡은 돈'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다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식료품값·사회급양망 및 려관의 식사비·숙박료·여러가지

관람료·운임·체신료금지불에서만 1979년 4월 8일까지 낡은 돈의 유통을 허용하며 지금까지 써오던 10전·5전·1전짜리 돈은 앞으로 계속 유통시킬 것」이라고 규정하고, 또한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면서 「정무원은 이 정령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1979.4.6)

- 「새 돈을 발행할 데 대하여」에 근거하여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1979년 6월 6일에 정령으로서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정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정은 (1) 그 목적으로서 「화폐교환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제1조), (2) 교환기간으로서 「1979년 4월 7일부터 1979년 4월 12일까지」로 규정하며(제2조), (3) 교환원칙으로서 「화폐교환은 금액에 제한없이 1대1로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화폐교환소에서 실시하며, 공민은 한 번에 다 새 돈으로 바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는 돈을 자기 이름으로 바꿀 수 없고, 공민은 거주지역에 있는 화폐교환소에서 바꾸어야 하지만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에 가 있는 공민은 해당지역의 화폐교환소에서 바꿀 수 있으며, 군인의 경우는 군인을 위한 화폐교환소에서 바꾸어야 하고, 화폐교환시 공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화폐교환은 세대단위 또는 개별적 공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지만 합숙·기숙사에 거주하는 공민·군인은 집단적으로 교환할 수 있고, 공민은 받을 새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는 1979년 4월 6일 현재로 가지고 있는 낡은 돈을 1979년 4월 8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킨 다음 필요한 만큼 새 돈을 찾아 써야 하고, 우리 나라에 와

있는 다른 나라 대표기관 및 공민과 협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는 은행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돈은 따로 정한 데 따라 바꾼다」고 규정하며(제3조), (4) 화폐교환소의 구성으로서 「시(구역)·군의 리·읍·구·동을 단위로 하고, 소장·부기원·출납원·선전원을 배치하며, <○○시(구역)·군 제○○호 화폐교환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하고, 군인을 위한 화폐교환소를 따로 내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5) 화폐교환소의 임무로서 「화폐교환사업과 그에 따른 업무의 조직·집행, 화폐교환사업에 대한 해설선전사업과 인민의 편의보장, 화폐교환과정에서 나타난 못쓰는 돈의 회수, 돈의 보관관리와 화폐교환소의 경비사업 및 화폐교환사업이 끝나면 자기사업평가를 총화하여 중앙은행지점에 넘겨주는 것」을 규정하고(제5조), (6) 화폐교환소의 지도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을 규정하며(제6조), (7)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 및 공민은 화폐교환기간에 바꾸지 않아 효력이 없어진 낡은 돈을 중앙은행」에 바치도록 규정하고(제7조), (8) 제재로서 「이 규정을 어기고 화폐교환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에 손실을 준 사람에게는 물질적·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 물자소비기준제정에 관한 규정(1992.1)

- 북한의 「민주조선(1992.1.11)」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6장 3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자소비기준의 제정등록·물자소비기준의 갱신·물자기준의 적용 등 물자소비기준제정과 관련하여 나서는 제문제」를 규정한 「물자소비기준제정에 관한 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이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물자소비기준을 제정등록하고 옳게 적용하여 모든 부문·단위들에서 엄격한 절약제도를 세우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은 원료·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를 규정하며, 물자소비기준화사업은 「국가계획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맡아 조직·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물자소비기준의 제정등록」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물자소비기준의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물자소비기준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물자소비기준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규정, 제6장에서 「물자소비기준등록기관들의 임무」와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농림수산>

#### ○ 양어사업규정(1990.1)

- 북한의 「민주조선(1990.1.26)」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4장 2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물고기의 보호·증식을 비롯한 양어사업과 관련하여 나서는 제문제」를 규정한 「양어사업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은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양어사업을 발전시켜 물이 있는 모든 곳에 물고기가 육질거리게 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문화정서생활보장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호수·저수지·강하천·갑문저수지·간석지저류지·물웅덩이(양어수역)에 수산자원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리용하는 모든 기관·기업소들과 공민」을 규정하며, 「양어수역에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며 리용하는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양어총국이 하도록 하면서, 양어총국은 양어발전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바로 세우며 양어사업을 전망있게 발전시키고 양어수역의 수산자원조성과 리용실태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힘쓰며, 양어수역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양어총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한 양어총국은 그 허가기간을 3~6년의 범위안에서 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양어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양어수역의 낚시질 질서」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양어사업의 감독·통제」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건설>

#### ○ 강하천관리규정(1990.3)

- 북한의 「민주조선(1990.3.29)」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북한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하천정리와 그 시설물의 보호를 비롯한 강하천관리에서 나오는 제문제」를 규정한 「강하천관리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큰물 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과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강하천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물질적 부를 늘이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적용 대상으로 「모든 기관·기업소와 공민」과 「강하천·호소·저수지의 정리·리용 및 강하천과 그 시설물·해안방조제의 보호관리」를 규정하며, 강하천은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길이 2킬로미터 이상 되는 강과 내」로 정의하고, 호소·저수지는 「자연적으로 되었거나 인공적으로 언제를 막아 물이 고여있는데」로 정의하며, 강하천시설물은 「강하천보호시설물·강하천리용시설물·강하천건늬시설물을 통털어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강하천시설물에는 강둑·흙막이벽·물때기문·강바닥패임막이시설·모래잡이둑·강하천보호구역안에 만들어놓은 양수장·물길·부두·다리 등이 속하고, 호소·저수지시설물에는 호소·저수지 둑·물때기문 등이 속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관리기관과 강하천정리를 맡

은 기관·기업소(강하천정리기관)는 강하천 정리 및 보수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과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강하천정리사업」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강하천 및 그 시설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강하천보호관리에 대한 감독통제」와 「제재」에 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도시시설물관리규정(1990.7)

- 북한의 「민주조선(1990.7.22)」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북한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시설물관리에 관한 제문제」를 규정한 「도시시설물관리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도시시설물을 잘 보호관리하여 도시의 문화성을 높이고, 도시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흥겹게 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도시시설물을 관리하며 리용하는 모든 기관·기업소·협동단체 등과 공민」을 규정하며, 도시시설물은 「도시령역에 있는 도로와 다리·거리조명시설·하천 및 도시사방야계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시설물의 보호관리사업은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도시경영기관·국토관리기관·전용도시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기관·기업소·협동단체가 한다」고 규정하며, 「도시시설물의 건설은 도시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도시도로건설에서는 철저히 지하망건설을 앞세워야 하며, 도시안의 도로는 모두 시멘트와 아스팔트·돌로 견고하게 질적으로 포장하고, 골목길은 주로 돌 등 지방자재를 널리 리용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도시의 다리와 거리의 조명시설은 현대적 도시에 어울리게 건설하며, 도시하천정리는 큰물의 피해로부터 도시를 철저히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시설물관리기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되고 질이 보장된 도시시설물을 넘겨받아야 하며

시공기관은 도시시설물이 준공되면 설계문건을 비롯하여 필요한 관리문건들을 도시시설물관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도시시설물의 보수는 마모정도에 따라 대보수와 유지보수로 가르고, 대보수는 운영과정에 기술적 마모가 생긴 부분과 마사진 부분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을 말하며, 유지보수는 대보수 주기 사이에 부분적으로 생긴 기술적 마모를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도시시설물의 보수는 도시시설물관리기관이 하며, 기관·기업소·협동단체가 전용으로 쓰는 도시시설물의 보수는 시설물을 리용하는 기관·기업소·협동단체가 하지만 기관·기업소·협동단체가 도시시설물관리기관에 보수공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예견하고 보수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시설물관리기관은 자기가 관리하는 모든 도시시설물을 빠짐없이 등록하며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는 그에 기초하여 관할지역안의 모든 도시시설물을 통일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도시시설물을 건설하고 리용하기 시작할 때 하는 처음등록과 관리운영과정에서 달라진 것을 등록하는 정상등록으로 갈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도시도로시설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거리조명시설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도시하천·도시사방야계시설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도시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대한 통제」·「도시시설물관리기관의 권한」·「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공공건물관리규정(1990.8)

- 북한의 「민주조선(1990.8.9)」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북한은 총 6장으로 구성된 「공공건물관리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공공건물 관리와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그것을

제때에 보수하고, 알뜰히 관리하여 그 수명을 늘여가면서 쓸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리용하는 모든 기관·기업소·협동단체 등과 국민」을 규정하며, 공공건물은 「기관·기업소·협동단체 청사·학교·병원·탁아소·유치원 등을 비롯한 공동으로 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공공건물의 종류로서 지역에 따라 「도시공공건물과 농촌공공건물로 나누면서 도시공공건물에는 시·읍·로동자구와 탄광·광산·림산·어촌·휴양지·료양지·유원지·야영지의 공공건물이 속한다」고 규정하며, 또한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공공건물과 협동단체소유공공건물」로 나누어 규정하고, 「공공건물의 관리는 공공건물관리기관이 넘겨받은 때로부터 하며, 여기에서 공공건물관리기관은 공공건물을 고정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와 보수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기관·기업소·협동단체를 말하고, 공공건물관리기관은 준공검사에 참가하여 질이 보장된 건물을 넘겨받아야 하며, 공공건물 관리 및 리용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은 도시경영부와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공공건물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공공건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공공건물리용」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공공건물의 보수」에 관한 규정, 제6장에서 「공공건물 관리 및 리용에 대한 통제」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도로관리규정(1990.9)

- 북한의 「민주조선(1990.9.13)」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북한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의 건설과 관리·도로의 리용과 관련하여 나서는 제문제」를 규정한 「도로관리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교

통의 안전성과 신속성·문화성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도로를 건설하거나 리용하는 모든 기관·기업소·협동단체 등과 공민」을 규정하며, 「도로의 등록과 보호관리는 도로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토관리기관·도시경영기관·농촌경리기관·전용도로를 가지고 있는 기관·기업소·협동단체(도로관리기관)가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등급은 도로를 그의 규모와 사명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도로는 고속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구분되며, 쓰이는 분야와 사명에 따라서는 전용도로와 도시도로 등으로 나누어 지고, 고속도로와 1급도로부터 3급도로까지는 중앙국토관리기관이, 4급도로는 도국토관리기관이, 5급·6급도로는 시·군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로관리기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도로의 건설」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도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도로의 리용」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도로보호관리에 대한 감독통제」와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문교>

-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전문학교에 관한 규정 (1991.11)
  - 북한의 「민주조선(1991.11.7)」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4장 20개조로 구성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전문학교에 관한 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이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춘 유능한 기술인재를 길러내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전문학교와 관계한 기관·기업소들」을 규정하며, 「공장

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전문학교는 해당 기관·기업소(주관기업소)에 소속되며, 교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교육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전문학교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교수교양사업」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전문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사업」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1992.1)

- 북한의 「민주조선(1992.1.31)」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4장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력사유적과 유물의 발굴·평가·등록·복구·보존관리 등 력사유적과 유물보존과 관련하여 나오는 제문제」를 규정한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이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이룩하여 놓은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력사유적과 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모든 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 및 공민」을 규정하며, 력사유적과 유물을 「지난날 우리인민이 창조하여 놓은 원시유적·옛성·옛건물과 건물터·옛무덤·옛비석·옛구축물·생산도구 및 생활도구·옛날의 무기와 조형예술품·민속자료·민속고전 등」으로 정의하고, 유적과 유물의 발굴·수집·평가·등록·복구·보수·관리와 이용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과 도·시·군 행정 및 경제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력사유적과 유물의 발굴·평가 및 등록사업」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력사유적과 유물의 복구 및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력사유적과 유물에 대한 감독통제기관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과학·기술>

### ○ 과학기술법(1989.1)

- 북한의 「민주조선(1989.1.18)」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으로서 「과학기술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결정은 총 7장 5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동 결정은 제1장에서 과학기술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나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혁명방침에 따라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데 힘을 넣으며, 거기에 투자를 늘이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실현하고, 과학기술인재 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더 많이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고 규정하고, 「전자공학·생물학·열공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그 연구성과를 인민경제에 적극 받아들인다」고 규정하며, 「해외에 있는 조선공민들과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발명권과 특허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다른 나라들과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결정은 제2장에서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새기술의 심의와 도입」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기술관리사업」에 관한 규정, 제6장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조건보장」에 관한 규정, 제7장에서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와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관계 입법동향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b>&lt;행정일반&gt;</b>	
	공훈방직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3. 4.20
	공훈방직공칭호에 관한 규정	1973. 4.20
	공훈인쇄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3. 4.20
	공훈인쇄공칭호에 관한 규정	1973. 4.20
	공훈제지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3. 5.25
	공훈제지공칭호에 관한 규정	1973. 5.25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에 관한 규정	1973. 7. 3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3. 7. 3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을 정함에 대하여	1973. 7.26
	석탄, 광업복무영예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3. 9. 3
	석탄·광업복무영예훈장에 관한 규정	1973. 9. 3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3. 9. 7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칭호에 관한 규정	1973. 9. 7
	공훈출판물보급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3. 9.19
	공훈출판물보급원칭호에 관한 규정	1973. 9.19
	방직공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3.10.13
	국가행정경제기관의 활동체계와 문건의 공포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1973.11.21
	<<헌법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3.12.24
	농업공로메달에 관한 규정	1973.12.24
	농업공로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3.12.24
	공훈건설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4. 4.29
	공훈건설자칭호에 관한 규정	1974. 4.29
<<총련결성20돛기념메달>>에 관한 규정	1975. 5.20	
<<총련결성20돛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5. 5.20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 관계	공훈예측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6. 7.10
	공훈예측원칭호에 관한 규정	1976. 7.10
	공훈부기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7. 2.10
	공훈부기원칭호에 관한 규정	1977. 2.10
	공훈영화보급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7. 3. 4
	공훈영화보급원칭호에 관한 규정	1977. 3. 4
	공훈산림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7. 4. 7
	공훈산림공칭호에 관한 규정	1977. 4. 7
	모범경제립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학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7. 4. 7
	모범경제립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학교칭호에 관한 규정	1977. 4. 7
	<<3대혁명붉은기>>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7. 9. 6
	<<3대혁명붉은기>>수여에 관한 규정	1977. 9. 6
	공훈로동정량원, 공훈로동안전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9. 5.31
	공훈로동정량원, 공훈로동안전원칭호에 관한 규정	1979. 5.31
	공훈계산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9.10. 9
	공훈계산원칭호에 관한 규정	1979.10. 9
	화학공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9.10.16
	공훈화학제품제조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79.10.23
	공훈화학제품제조공칭호에 관한 규정	1979.10.23
	인민교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80. 3.15
	인민교원칭호에 관한 규정	1980. 3.15
	인민의사칭호와 인민약제사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80. 3.15
	인민의사·인민약제사칭호에 관한 규정	1980. 3.15
보건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0. 5. 5	
공훈품질감독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81. 1.24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공훈품질감독원칭호에 관한 규정	1981. 1.24
	사회주의애국상에 관한 규정	1982. 1.23
	사회주의애국상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2. 1.23
	김일성동지께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2. 4.15
	<<도시경영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2. 8. 2
	포병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2.10.28
	림업로동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3. 1.13
	공훈압연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83. 3. 2
	공훈압연공칭호에 관한 규정	1983. 3.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메달>>	1983. 8.19
	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3.12. 9
	건재공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모범축산군(시·구역)칭호에 관한 규정	1984. 1.13
	모범축산부(시·구역)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84. 1.13
	조국해방40돛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5. 7.25
	조국해방기념메달수여에 관한 규정	1985. 7.25
	조국해방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5. 7.25
	조선해방40돛기념메달수여에 관한 규정	1985. 7.25
	친선훈장 제1급, 제2급과 친선메달을 제정	1985. 7.25
	함에 대하여	
	수산복무영예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6. 1. 9
	수산복무영예훈장에 관한 규정	1986. 1.16
	공훈도로관리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86. 2. 6
	공훈도로관리공칭호에 관한 규정	1986. 2. 6
	3월5일 기념훈장에 관한 규정	1986. 3. 3
	3월5일 기념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6. 3. 3
	공훈사적강사칭호와 공훈사적관리원칭호를	1986. 5.15
	제정함에 대하여	
	공훈사적강사칭호와 공훈사적관리원칭호에	1986. 5.15
	관한 규정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친선훈장 제1급·제2급과 친선메달에 관한 규정	1986. 7.25
	<<3대혁명붉은기훈장>>수여에 관한 규정	1986.11.20
	<<3대혁명붉은기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6.11.20
	지방예산제모범군(시·구역)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86.12.11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에 관한 규정	1986.12.11
	모범도시경영군(시·구역)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87. 9.24
	모범도시경영군(시·구역)칭호에 관한 규정	1987. 9.24
	공훈자재관리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88. 4.
	공훈자재관리공칭호에 관한 규정	1988. 4.14
	선박공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88. 4.21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념주화를 발행함에 대하여	1989. 3.23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군(시, 구역)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89. 6.29
	총련결성기념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0. 4.12
	<<조국통일상>>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0. 7.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탄부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0.10.31
	청년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1. 2. 1
	모범산립군(시, 구역)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91. 4. 4
군민일치모범군(시, 구역)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92 3.18	
조선인민군창건 60돛기념훈장과 조선인민군창건 60돛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2. 3.23	
우리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기념주화를 발행함에 대하여	1992. 4. 1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b>&lt;내무&gt;</b>	
	황해북도, 함경북도, 양강도의 일부행정구역 역을 고칠 데 대하여	1973. 8.31
	함경남도의 일부행정구역을 고칠 데 대하여 일부행정구역을 고칠 데 대하여(1974년)	1974. 1.21 1974. 5.31
	함경북도 은성군의 일부행정구역을 고칠 데 대하여	1975.11. 7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안의 일 부행정구역을 고칠 데 대하여	1976. 2.19
	강원도의 일부행정구역을 고칠 데 대하여	1976. 6. 8
	평안남도 강서군, 용강군의 행정구역을 고 칠 데 대하여	
	양강도 대흥단군을 새로 내올 데 대하여	1978. 3.29
	양강도 신파군을 <<김정숙군>>으로 함에 대하여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거리에서 모란봉지 하도를 포함한 거리를 <<안택상거리>>로 제정함에 대하여	1978. 8. 7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 붉은기,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1. 8.17
	모범적인 단위들에 계관근위칭호, 근위칭호 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7. 7.16
	평안북도 선천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 함에 대하여	1989. 1.19
	함경북도 길주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 함에 대하여	1989. 2. 9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 붉은기와 3 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2. 9
모범적인 단위들에 계관근위칭호, 근위칭호 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2. 9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평안북도 선천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2. 9
	함경북도 길주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2. 9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 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2.10
	모범적인 단위들에 계관근위칭호,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3.23
	총서<<불멸의 역사>> 항일혁명투쟁시기편 15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3.23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3.23
	량강도 삼지연군에 모범체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3.30
	모범적인 단위들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3.30
	평안북도 동림군에 모범도시경영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3.30
	황해북도 은파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3.30
	모범적인 단위들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 5
	함경남도 홍원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 5
	량강도 혁명전적지 답사차 사업소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13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 붉은기, 3대혁명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13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모범적인 단위들에 계관근위칭호,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13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13
	학우서방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20
	년간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데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4.21
	모범적인 사로청단체들에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4.22
	광복거리와 중요대상건설에서 공로있는 일군들과 군인들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27
	광복거리와 중요대상건설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건설자, 군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27
	기양지구관 개관관리소 대형양수기<<락원1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27
	남포시 룡강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27
	룡라도에 건설한 경기장을 5월1일경기장으로 함에 대하여	1989. 5. 1
	모범적인 단위들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5.25
	광복거리와 중요대상건설에서 모범적인 사로청일군들과 사로청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6. 3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광복거리와 중요대상건설에서 공로있는 일군들과 건설자, 군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6. 6
	함경남도 영광군에 모범축산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6.16
	함경북도 연사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8.24
	만경대혁명사적관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10. 5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0.12
	함경북도 온성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10.26
	모범적인 사로청일군들과 사로청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1. 8
	재일귀국공민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11
	모범적인 단위들에 계관근위칭호,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12.21
	평양시 평천구역과 선교구역에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12.26
	황해남도 삼천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12.26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2. 1
	평안남도 양덕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2. 8
	함경남도 고원군에 모범체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2. 8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2.14
	황해북도 연탄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2.14'
	모범적인 단위들에 계관근위칭호,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4. 5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구역에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4. 5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4.11
	평양시 사용구역에 지방예산제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4.19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5.31
	평양시 대동강유역과 남포시 강서구역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5.31
	평양시 락랑구역에 새로 건설하는 거리이름을 <<통일거리>>로 함에 대하여	1990. 6. 7
	강원도 판교군에 모범축산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7. 4
	자강도 전천군에 모범보건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7.18
	평안북도 룡천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7.18
	강원도 원산시 지방예산제모범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8. 8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8. 8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량강도 풍산군을 김형권군으로 합에 대하여	1990. 8.12
	평안남도 개천시에 <<8월3일인민소비	1990. 8.30
	품>>생산모범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황해남도 청단군에 모범보건군칭호를 수여	1990. 9. 5
	함에 대하여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	1990. 9. 6
	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평안남도 신양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	1990. 9.27
	함에 대하여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	1990.10. 5
	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평양시 서성구역과 대동강구역에 모범보건	1990.10. 6
	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	1990.10.23
	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강원도 문천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함	1990.10.24
에 대하여		
옥류관 종업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1990.11. 5	
대한 정령*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2중3대혁	1990.11.13	
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	1990.11.14	
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평안북도 황산군과 평안남도 맹산군 모범	1990.11.29	
도시경영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평양시 중구역에 모범체육구역칭호를 수여	1990.11.29	
함에 대하여		
평양시 보통강구역과 황해북도 연탄군에	1990.12. 5	
지방예산제모범구역(군)칭호를 수여함에 대		
하여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백두밀영을 꾸리는데서 모범을 보인 청년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2. 8
	량강도 김정숙군에 모범체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12.19
	량강도 대흥단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12.19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12.26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12.26
	평안남도 온천군과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에 모범교육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2. 6
	평양시 형제산구역, 개성시 판문군에 모범준법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2. 6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2. 6
	함경남도 함흥시 해안구역에 모범도시경영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2. 6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2.13
	강원도 철원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4.10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4.10
	모범적인 단위들에 계관근위칭호,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4.10
	평양시 중구역에 지방예산제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4.10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 <<8월3일인 민소비품>>생산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4.10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 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5.30
	함경북도 회령군을 회령시로 함에 대하여	1991. 7.10
	평양시 만경대구역과 량강도 삼지연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7.17
	모범적인 사로청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7.31
	강원도 고성군에 모범보건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8. 1
	황해남도 연안군과 량강도 김형직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8. 1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 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8.17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모범도시경영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8.21
	평양시 평천구역과 선교구역에 지방예산제 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8.28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8.28
	황해북도 연산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8.28
	평양시 사동구역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9.18
	황해남도 청단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9.25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10. 8
	평안남도 안주시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11. 6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11.20
	함경북도 김책시에 모범체육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11.20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12.27
	평안남도 덕천시에 모범체육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1.23
	강원도 금강군과 평양시 삼석구역에 모범도시경영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 6
	모범적인 군(구역)들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 6
	모범적인 단위들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 6
	평안북도 창성군과 평안남도 증산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 6
	평양시 대성구역에 모범준법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 6
	황해남도 봉천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 6
	황해북도 신계군과 수안군에 모범보건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 6
	평양시 평천구역에 모범도시경영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12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13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b>&lt;재무&gt;</b>	
	위대한 대안의 활동체계에 맞는 독립채산제를 올바르게 실시할 데 관하여	1973. 9.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	1974. 3.21
	197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7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75. 4.
	197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7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76. 4.
	197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7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77. 4.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	1977.12.17
	재산보험규정	1978. 3.11
	재산보험규정세칙	1978. 3.22
	1977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78. 4.20
	고정재산관리규정	1978. 7.31
	197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7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79. 3.
	새 돈을 발행할 데 대하여	1979. 4. 6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	1979. 4. 6
	197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80. 4.
	198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1년의 국가예산에 대하여	1981. 4.
	198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82. 4. 6
	외국인소득세법	1985. 3. 7
합영회사소득세법	1985. 3. 7	
198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85. 4.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외국인소득세법 세칙	1985. 5.17
	합영회사소득세법 세칙	1985. 5.17
	198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86. 4.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계획에 대하여	1987. 4.23
	1원짜리 쇠돈을 발행함에 대하여	1987.10. 1
	198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88. 4.
	남포시 항구구역과 강원도 문천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1.26
	198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89. 4. 7
	1989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199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90. 5.24
	금융부문 일군들에게 공훈부기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7.25
	재정부기일군들에게 공훈부기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9.14
	황해남도의 경제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결정*	1991. 1.18
	평안남도 경제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결정*	1991. 2. 7
	평안북도 경제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결정*	1991. 2.15
	함경북도 경제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결정*	1991. 2.17
함경남도의 경제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결정*	1991. 3. 5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p>199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9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p> <p>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의 인민경제여러부문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정무원결정*</p> <p>물자소비기준제정에 관한 규정 *</p> <p>1992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정무원결정*</p> <p>인민경제 여러부문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p> <p>&lt;&lt;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gt;&gt;에서 내세운 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전히 실현할 데 대하여</p>	<p>1991. 4.11</p> <p>1991.10.22</p> <p>1992. 1.11</p> <p>1992. 2. 8</p> <p>1992. 4. 1</p> <p>1974.11.30</p>
행정관계	<p><b>&lt;농림수산&gt;</b></p> <p>수산부직능의 승인에 대하여</p> <p>집임자선관리운영에 관한 규정</p> <p>뜨락또르 및 농기계관리규정</p> <p>배수리에 관한 규정</p> <p>농업부문의 모범적인 단위들에 영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p> <p>농업부문 근로자들에게 공훈뜨락또르운전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p> <p>양어사업규정*</p> <p>중소농기계 및 농기구관리규정*</p> <p>화학비료취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p> <p>농업부문의 모범적인 단위들에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p> <p>수자원의 보호증식에 관한 규정*</p>	<p>1976. 8. 5</p> <p>1978. 3.22</p> <p>1978.12. 8</p> <p>1978.12.27</p> <p>1989. 4. 5</p> <p>1990. 1.14</p> <p>1990. 1.26</p> <p>1990. 2. 4</p> <p>1990. 3. 6</p> <p>1990. 4. 5</p> <p>1990. 5. 6</p>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논밭에서 지력을 높이며 남새온실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결정*	1990.12. 9
	<<연안, 령해 보호관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	1990.12.18
	산림자원보호단속규정*	1991. 6. 1
	통나무 증산과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결정*	1991.12. 7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77호<<통나무 증산과 절약투쟁을 힘차게 벌릴데 대하여>>를 집행하기 위한 정무원결정*	1991.12.17
	발관개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화학비료7를 원만히 보장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정무원결정*	1991.12.25
		<b>&lt;건설&gt;</b>
도시경영감독에 관한 규정		1977. 6.23
기본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계약규정		1978. 3.29
기본건설감독 및 검사에 관한 규정		1978.12.27
건설기준제정에 관한 규정		1979. 2.21
6월1일 관개건설사업소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6.22
평안남도 간석지 물길공사에서 공로있는 건설자들과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7. 4
원산-금강산 사이의 도로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사로청일군과 사로청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0. 6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강하천관리규정*	1990. 3.29
	공원, 유원지 관리규정*	1990. 6.20
	도시시설물관리규정*	1990. 7.22
	공공건물관리규정*	1990. 8. 9
	도로관리규정*	1990. 9.13
	신천-강령 사이의 물길굴공사를 비롯한 서	1990. 9.16
	해지구물길공사에 기여한 군인 및 일군들	
	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위원발전소 건설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	1990.11. 1
	함에 대한 정령*	
	기본건설사업에 관한 규정*	1990.12.25
	산화배소구단광로 건설자들에게 명예칭호	1990.12.26
	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국토계획설계부문 일군들에게 공훈설계사	1991. 6. 7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중앙국토계획설계사업소에 국기훈장 제1급	1991. 6. 7
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전국청년고속도로뚫기경기에서 모범을 보	1991. 6.18	
인 사로청일군과 사로청원들에게 <<김일		
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제1수력발전소건설연합기업소에 근위칭호	1991.11.20	
를 수여함에 대하여		
상하수도관리규정*	1991.11.28	
함흥지구건설과 대상설비생산보장에서 공	1992. 1.15	
로있는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함흥지구건설과 대상설비생산보장에 기여	1992. 1.27	
한 일군들에게 새기술혁신의 봉화상을 수		
여함에 대한 정령*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함흥지구건설과 대상설비생산보장에서 공로있는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1.27
	함흥지구건설에서 공로있는 사로칭일군들과 사로칭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1.27
	도시경영법	1992. 3.21
행정관계	<b>&lt;교통&gt;</b>	
	기관차, 짐차를 빌려주는 규정	1978. 3.22
	짐차의 머무름시간에 따르는 벌금규정	1978. 3.22
	다른 나라 짐차를 다루는 규정	1978. 9.15
	자동차관리규정	1978. 9.15
	철도운수에 관한 규정	1978. 9.15
	철도의 불합리한 수송을 없앨 데 대한 규정	1978. 9.15
	국가배를 빌려주는 규정	1978.12.10
	남포갑문 이름을 서해갑문으로 고침에 대하여	1986. 9. 8
	철도방송위원회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3. 1
	반죽역과 평양기관차대에 철도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5.25
	철도부 차량설계사업소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5.25
	철도부문의 모범적단위들에 철도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8. 7
	철도부문 종업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8.14
	<<전용선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대한 정무원결정*	1991. 8.21
전용선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991. 9.19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b>&lt;문교&gt;</b>	
	전반적으로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1973. 4. 9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 총화에 대하여	1975. 4.13
	만경대인민학교를 <<순화학교>>로 함에 대하여	1976. 6. 8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하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 9. 7
	신파녀자고등중학교를 <<김정숙녀자고등중학교>>로 혜산 제2사범대학을 <<김정숙사범대학>>으로 함에 대하여	1977. 9. 7
	목단봉경기장을 <<김일성경기장>>으로 함에 대하여	1981. 8.17
	안골체육관을 청춘거리로 함에 대하여	1982. 4.10
	평양시 영화보급소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8. 9.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1.18
	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1.26
	잡지<<체육>>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2.12
	조선문학창작사 작가들과 일군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2.28
	설맞이 공연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3.30
5천명대공연<<행복의 노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11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조선예술영화<<자신에게 물어보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4.13
	영화부문의 일군들과 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4.24
	과학교육영화창작, 창조사업에서 공로있는 일군들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6.24
	잡지<<새세대>>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7. 1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아래 제3사업소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7. 4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기자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7.13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7.20
	황해북도 신계군 정봉고등중학교에 모범경제립학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7.20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종업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8. 2
	평안북도 정주군과 개성시 판문군에 모범체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8.16
	체육선수들과 지도원들에게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8.17
	만수대예술단 지휘자·작곡가·배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예술가칭호,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9.21
	만수대예술단 사진사, 배우들에게 공훈예술가,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9.26
	교육부문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교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9.28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보통교육부문 교원들에게 교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9.29
	영화보급부문 일군들에게 공훈영화보급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0. 3
	평양미술대학과 평양음악무용대학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10.19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1. 8
	체육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체육인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12.14
	모범적인 학교들에 모범경제림학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23
	만수대창작사 종업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26
	체육인들에게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26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명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2.14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4.12
	표재운동지에게 공훈교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5.18
	모범적인 학교들에 명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5.29
	명승지의 보호관리와 리용에 관한 규정*	1990. 6.24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1990. 6.30
	고등교육도서출판사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0. 7.18
	<<7.15최우등상>>쟁취운동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7.20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예술소조활동에서 모범적인 학생들과 예술인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7.24
	풍산군 파발고등중학교를 김형권고등중학교로 함에 대하여	1990. 8.12
	김일성종합대학 학부, 강좌, 연구실들과 학급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8.27
	출판물보급부문 일군들에게 공훈출판물보급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0. 2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10. 5
	보통교육부문 교원들에게 공훈교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0.18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0.29
	일부 대학들의 이름을 고칠데 대하여	1990.10.31
	조선태권도련맹 지도원, 선수들에게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1. 3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11.14
	대집단체조<<일심단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0.12.26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12.26
	집단체조창작단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2.29
	집단체조공연에서 모범적인 사로청일군들과 사로청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2.30
	체육선수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체육인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1.16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체육부문일군들과 선수들에게 공훈체육인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1.24
	근로단체출판사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1. 1.30
	조선번역영화제작소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2. 6
	모범적인 교원들에게 공훈교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2.11
	조선번역영화제작소 연출가, 배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2.12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2.13
	출판부문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2.21
	금성청년출판사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4. 9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4.10
	만수대창작사 일군들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4.28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일군들에게 공훈기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5.16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5.31
	미술부문 일군들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7.29
	체육인들에게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8.13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축구선수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8.13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8.17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예술가칭호,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9. 4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에게 공훈예술가칭호와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9.11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10. 8
	조선중앙통신사 일군들에게 공훈기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10.23
	텔레비죤연속소설창작 및 창조성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10.25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전문학교에 관한 규정*	1991.11. 7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11.20
	혁명사적자료발굴과 편찬 및 출판에서 공로있는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12.25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	1992. 1.31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1월간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 6
	평양교예단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예술가칭호,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12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와 붉은기와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13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보천보전자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로력 영웅칭호, <<김일성상>>, 명예칭호를 수 여함에 대하여	1992. 2.13	
	평양교예단 일군들에게 공훈예술가칭호, 공 훈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2.13	
	만수대창작사 일군과 미술가, 창작가들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2.14	
	왕재산경음악단 예술인들에게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3. 3	
	당의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정무원결정*	1992. 3.10	
	보천보혁명박물관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2. 4. 8	
	<b>&lt;과학기술&gt;</b>		
	과학기술법*	1989. 1.18	
	제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에 국기훈장 제1 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6.15	
	과학원수리공학연구소에 <<김일성훈장>> 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10.19	
	청년발명 및 창의고안선구자들에게 <<김 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 4	
	기계공업부문 설계원들에게 새기술혁신의 봉화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31	
	건설건재대학 일군들에게 공훈과학자칭호 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7. 7	
	중앙품질 및 계량과학연구소에 국기훈장 1 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9. 3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일군들에게 공 훈과학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1. 6		
4.15 기술혁신들격대 성원들에게 공훈기술 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2.17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도시경영부문 과학자들에게 공훈과학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8. 8
	과학기술발전3개년(1991.7~1994.6)계획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한 정무원결정*	1991. 8.28
	과학기술성과의 심의, 등록 및 도입에 관한 규정*	1991. 9. 3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수행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10.31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서한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정무원결정*	1991.12.29

## 4. 민사관계분야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요

이 시기(1972.10.28~1992.4.8)에 있어서 민사관계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은 큰 폭의 변화를 갖는다. 1948년 헌법시기에 전혀 체계화되지 않았던 민사관계분야의 법령들이 정비되었고, 형사관계분야는 신형법이 채택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이 2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민사관계법은 그 기본법이 되는 「민법」이 1990년 9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민사관계 중 상속제도부문은 따로 분리되어 「가족법(1990.10.24)」으로 편입된 특징이 있다. 특히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기도 하지만, 유교적 전통을 많은 부문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해방직후에 총 310개조로 구성된 ‘민사소송법초안’을 채택하지 않고, ‘인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법의식(초안 제 2조)’에 따른 인민재판제도와 관련 사법제도 및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1962년 「리혼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 이를 통합합한 민사재판규범으로 1976년 1월 10일에 제정되었다. 북한의 재판제도는 우리와 매우 이질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민사소송에 있어서 검사가 재판에 개입하고,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그 방지를 위하여 1년간 정치사업을 하며, 판사 외에 안전기관에서 다른 지방 내지 노동교양소로의 격리·수용을 명하는 점 등이 그 특징이다.

한편 형법에 있어서는 그 체계와 구성에 있어서 다음의 [표]<sup>42)</sup>와 같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주의 형법의 주요특징<sup>43)</sup>과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주체사상을 그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드러낸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1950년에 제정된 이후 두번(1975년 1월 10일과 1992년 1월 15일)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는 개략적으로 주체사상의 이념적 무장(1975년 형사소송법)과 그와 반

42) 大内憲昭, “朝鮮民主主義憲法”, アジアの社會主義法, 社會主義法研究會(編) 社會主義法研究年報 No 9, 法律文化社, 1989, 4면을 참조.

43) 관련내용은 본 보고서의 86면을 참조.

대로 1990년대의 탈이데올로기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 명목상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북한의 신·구형법의비교

북한의 신형법전(1974년) (총 5편 17장 215개조로 구성)	북한의 구형법전(1950년) (총 2편 23장 301개조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혁명범죄(제51조~제66조)</li> <li>●사회주의적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제67조~제76조)</li> <li>·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77조~제96조)</li> <li>·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97조~제104조)</li> <li>· 사회주의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105조~제110조)</li> </ul> </li> <li>●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제111조~제117조)</li> <li>●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행정질서 일반을 침해하는 범죄(제118조~제123조)</li> <li>· 국민의 국방상의 의무 위반죄(제124조~제130조)</li> <li>· 국가,군사비밀보호질서 침해죄(제131조~제132조)</li> <li>· 국경출입,항해질서 침해죄(제133조~제136조)</li> <li>· 범죄와 투쟁을 저해하는 죄(제137조~제140조)</li> <li>· 관리책임자의 직무상의 범죄(제141조~제148조)</li> </ul> </li> <li>●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149조~제159조)</li> <li>●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제160조~제173조)</li> <li>· 국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제174조~제180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3장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제64조~제81조)</li> <li>제14장 국가관리침해에 관한 죄(제82조~제102조)</li> <li>제15장 국가소유,사회 및 협동단체소유침해에 대한 죄(제103조~제111조)</li> <li>제16장 인격침해에 관한 죄(제112조~제146조)</li> <li>제17장 국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제147조~제167조)</li> <li>제18장 로동법령위반에 관한 죄(제168조~제177조)</li> <li>제19장 공무원상의 범죄(제178조~제193조)</li> <li>제20장 경제에 관한 죄(제194조~제217조)</li> <li>제21장 관리질서침해에 관한 죄(제218조~제258조)</li> <li>제22장 사회적 안전 및 인민보건침해에 관한 죄(제259조~제264조)</li> <li>제23장 군사상의 범죄(제265조~제301조)</li> </ul>

## (2) 주요법령의 소개와 입법동향

민사관계 및 형사관계분야의 주요법령의 내용소개와 이 시기의 입법동향을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민사관계 및 형사관계 주요법령의 소개

#### <<민사관계>>

##### ○ 민법(1990.9.5)

- 북한은 1950년경부터 민법초안(I)·(II)를 작성하는 등 체계화된 민법전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입법이 지연되어 오다가 1990년 9월 5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민법」을 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2차 회의(1991.4.11~4.13)에서 동 법령을 승인함으로써 해방후 처음으로 성문화된 민법전을 갖추게 되었다.

동법은 총 4편 13장 27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 「일반제도」에서는 「제1장 민법의 기본(제1조~제10조)·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제11조~제23조)·제3장 민사법률행위(제24조~제36조)」를 규정하고, 제2편 「소유권제도」에서는 「제1장 일반규정(제37조~제43조)·제2장 국가소유권(제44조~제52조)·제3장 협동단체소유권(제53조~제57조)·제4장 개인소유권(제58조~제63조)」을 규정하며, 제3편 「채권채무제도」에서는 「제1장 일반규정(제64조~제89조)·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제90조~제134조)·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제135조~제234조)·제4장 부당리득행위(제235조~제239조)」를 규정하고,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에서는 「제1장 민사책임(제240조~제258조)·제2장 민사시효(제259조~제271조)」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민법은 과거 민법초안에 들어있던 「상속제도」부분을 분

리하여 가족법으로 편입하고, 또한 저작·창의·고안권에 관한 부분도 제외하여 민법의 규제대상으로서 「기관·기업소·단체·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제2조)」를 규정함으로써 순수한 재산관계만을 다루는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우리의 법체계상 특별사법에 해당하는 상법 및 경제법 등의 분야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지만, 재산관계가 아닌 가족법 분야는 민법과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음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가족법(1990.10.24)

-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가족법」을 채택하여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총 6장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가족법의 기본(제1조~제7조)」· 제2장 「결혼(제8조~제14조)」· 제3장 「가정(제15조~제39조)」· 제4장 「후견(제40조~제45조)」· 제5장 「상속(제46조~제53조)」· 제6장 「벌칙(제54조)」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법은 그 목적으로서 「사회주의적 결혼·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소위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고 있으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제26조)」고 규정하여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비하여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의 모습을 담고 있고, 또한 제5장에서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제도까지도 인정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 민사소송법(1976.1.10)

- 북한은 해방직후 종전에 적용되던 일본법령의 전면폐지를 선언함과 아울러 새로운 법제정의 미비로 인한 법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6일에 「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재판소·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정하였다.

동 결정은 「민사 또는 형사상 잠정적으로 일본법률을 참고하는 때 판사는 그 민주주의적 의식과 조선인민의 리익에 입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제20조 단서)」고 규정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주주의적 의식과 조선인민의 이익」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근거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후, 동 규정은 북한이 「민사소송법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법의식(초안 제2조)」으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성문법을 갖추지 못한 채, 「민주주의적 법의식」이라는 불문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1962년 3월 21일에 「리혼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고, 1976년 1월 10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 제18호로 「리혼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민사소송법」을 제정하여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전문과 총13장 17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제1조~제7조)」· 제2장 「일반규정(제8조~제23조)」· 제3장 「재판관할(제24조~제32조)」· 제4장 「소송당사자(제33조~제45조)」· 제5장 「증거(제46조~제64조)」· 제6장 「소송의 제기(제65조~제75조)」· 제7장 「재판준비(제76조~제94조)」· 제8장 「재판심리(제95조~126조)」· 제9장 「판결 및 판정(제127조~제147조)」· 제10장 「제2심 재판(제148조~제156조)」· 제11장 「비상상고(제157조~제165조)」· 제12장 「재심(제166조~제171조)」· 제13장 「판결 및 판정의 집행(제172조~제177조)」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과업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 불건전한 요소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국가기관·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과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 위업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제4조)」고 규정하여 김일



성의 주체사상의 최고법규범성을 선언하고, 「검사는 국가·사회 및 공민들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65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제50조)」고 규정하여 변론주의 내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오히려 법원의 철저한 직권주의와 검사의 광범위한 관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고(제95조), 당사자의 말이 끝난 다음 재판심리에 노동자·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제123조)」고 규정하여 인민의 광범위한 재판관여를 인정하여 소위 '인민재판식'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등에 그 특징이 있다.

## <<형사관계>>

### ○ 형법(1974.12.19)

- 북한은 1950년 3월 3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최초로 형법을 제정한 이후, 1972년에 이르러 그들의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헌법하의 법규의 효력관계와 그 내용의 재검토를 통한 기존법규의 폐지·수정·보충이 요구되었고, 또한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 사회주의헌법으로 그 성격이 전환됨에 따라 사회주의에 배치되는 법률잔재와 표현을 폐지하고 혁명적 원칙에 입각한 법과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형법은 1974년 12월 19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개정되게 되어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동법은 총 5편 17장 21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전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칙 일부만은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1974년의 북한형법이 「반혁명범죄(제51조~제66조)」조항

을 종전 형법보다 더욱 가혹하게 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동법은 예전히 계급적 본질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의 임무를 주체사상의 일색화로 봄으로써 개인의 법익보호 보다는 정치체제의 수호기능에 중점을 둔 정치형법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 그 특징이 있다.

○ 형법(1987.2.5)

- 북한은 1950년 3월 3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최초로 형법을 제정한 이후, 1974년 12월 19일에 제1차 개정을 하고, 소위 「주체의 법이론」의 체계화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와 더불어 1987년 2월 5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형법」의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법은 총 8장 16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형법의 기본(제1조~제8조)』·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의 제1절 「범죄(제9조~제20조)」· 제2절 「형벌(제21조~제43조)」· 제3장 『반국가범죄』의 제1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제44조~제51조)」· 제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제52조~제53조)」· 제3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제54조~제55조)」·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의 제1절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제56조~제65조)」· 제2절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66조~제83조)」· 제3절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84조~제91조)」· 제4절 「사회주의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92조~제96조)」· 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제97조~제102조)』· 제6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의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103조~제123조)」· 제2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제124조~제130조)」· 제7장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제131조~제140조)』· 제8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의 제1절 「공민의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제141조~제154조)」· 제2절 「공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155조~제161조)를 규정하고 있다.

1987년의 북한형법은 종전의 형법과 비교하여 형법의 임무로서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종전의 「반혁명범죄」를 「반국가범죄(제3장)」로 명칭을 변경하여 순화된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인정되던 소급효에 대하여 「행위시법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으로 전환·규정하고(제8조), 형벌의 종류를 「사형·징역형·교화로동형·선거권박탈·재산몰수형」에서 「사형·로동교화형·선거권박탈형·재산몰수형·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으로 전환·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론상으로도 「16개의 조항」에서 「12개의 조항」으로 간소화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 형사소송법(1976.1.10)

- 북한은 1950년 3월 3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최초로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후, 1954년 6월 15일과 동년 12월 11일에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고, 1972년 12월 27일에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던 구헌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함에 따라 1976년 1월 10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동법은 그 전문내용을 현재 파악할 수 없지만,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규정 및 자백의 증명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재판소가 스스로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형사소송법(1992.1.15)

- 북한은 1950년 3월 3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최초로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후, 1954년 6월 15일과 동년 12월

11일에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고, 1972년 12월 27일에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던 구헌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함에 따라 1976년 1월 10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고, 또한 1992년 1월 15일에 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 추세와 내외의 비판을 의식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북한은 「형사소송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동법은 총 10장 30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제1조~제6조)』· 제2장 『일반규정(제7조~제34조)』· 제3장 『증거(제35조~제49조)』· 제4장 『수사와 예심』의 제1절 「수사(제50조~제69조)」· 제2절 「예심의 임무와 관할(제70조~제79조)」· 제3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제80조~제85조)」· 제4절 「피심자심문(제86조~제99조)」· 제5절 「구속처분(제100조~제111조)」· 제6절 「검증과 검진(제112조~제116조)」· 제7절 「감정(제117조~제128조)」· 제8절 「수색과 압수(제129조~제139조)」· 제9절 「증인심문(제140조~제150조)」· 제10절 「재산담보처분(제151조~제155조)」· 제11절 「예심종결(제156조~제162조)」· 제5장 『검사의 사건처리(제163조~제168조)』· 제6장 『변호(제169조~제177조)』· 제7장 『재판』의 제1절 「재판의 임무와 관할(제178조~제189조)」· 제2절 「재판준비(제190조~제201조)」· 제3절 「재판심리(제202조~제237조)」·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제238조~제241조)」· 제5절 「판결(제242조~제258조)」· 제8장 『제2심재판(제259조~제274조)』· 제9장 『비상상소와 재심』의 제1절 「비상상소(제275조~제285조)」· 제2절 「재심(제286조~제293조)」· 제10장 『판결·판정의 집행(제294조~제305조)』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그 기본이념으로서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제1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의 확고한 견지(제2조)」를 명시하면서 「국가는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범죄를 미리

막는다(제5조)」고 규정하여 보호적 성격과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는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옹계 배합한다(제3조)」고 규정하여 인민들에 대한 사회적 교양, 즉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전에 법원의 견제없이 수사기관 등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0조·제100조·제111조·제129조~제132조·제142조), 형사소송절차에 손해보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 등 민사·형사절차의 분리가 철저하지 못한 점(제18조·제19조·제20조·제151조)에 그 특징이 있다.

○ 재판소구성법(1976.1.10)

- 북한은 1950년 3월 3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한 후, 1954년 6월 15일과 동년 12월 11일에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고, 1972년 12월 27일에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던 구헌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함에 따라 1976년 1월 10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재판소구성법」을 개정·공포하여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은 총 5장 4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재판소구성법의 기본(제1조~제8조)」·제2장 「재판소의 조직(제9조~제21조)」·제3장 「재판소의 임무(제22조~제29조)」·제4장 「재판활동(제30조~제39조)」·제5장 「재판사업에 대한 지도(제40조~제45조)」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재판소구성법은 북한사법제도의 기본성격으로서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며 로동자·농민·병사·근로인테리아 독재의 무기(제1조)」이며,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제3조)」으로 삼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의 수행에 이바지  
 (제4조)」하며,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국가의 법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제5조)」을 수행하고,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제8조)」고 규정하며, 재판소의 조직으로서는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군사재판소 및 철  
 도재판소(제9조)」를 두도록 하고,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  
 의적 원칙에 의하여 선거하며(제12조), 판사·인민참심원으로서  
 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으로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  
 히 무장하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  
 하는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만이 될 수 있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재판소의 임무로서는 「사법일군들 속에서 유일사상교  
 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일군들을 당의 유일  
 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가 확고히 선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  
 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제22조)」고 하면서 「형사재판활동  
 (제23조)」·「민사재판활동(제24조)」·「중재활동(제25조)」·「군중  
 정치사업(제26조)」·「신소청원의 처리(제27조)와 집행활동(제28  
 조)」·「공중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활동으로서는 「따로  
 정한 법에 따라 자기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재판(제30조)」하도록  
 하면서 제1심재판은 「재판장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제31조)」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재판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재판소와 도  
 (직할시)재판소(제40조)」가 하도록 규정하면서 중앙재판소는  
 「지시(제43조)와 결정(제44조)」을 채택할 수 있는 반면에 「최고  
 인민회의·주석·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자기 사업에 대  
 하여 그 앞에 책임(제45조)」을 지고, 또한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도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제45조)」고 규정하고 있다.

② 민사관계 및 형사관계 입법동향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민사관계	<b>&lt;민법일반&gt;</b> 민사규정(잠정) 민사규정(잠정) 시행세칙 민법	1982.12. 7 1983. 3.19 1990. 9. 5
	<b>&lt;가족법&gt;</b> 가족법	1990.10.24
	<b>&lt;민사소송법&gt;</b> 민사소송법	1976. 1.10
형사관계	<b>&lt;형법일반&gt;</b> 형법 벌금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하여 벌금을 올바르게 적용할 데 대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에 끼친 손해배 상에 관한 규정 벌금규정을 채택할 데 대하여	1974.12.19 1975. 4.11 1977.10. 2 1978. 9.24 1980. 6.30
	<b>&lt;형사소송법&gt;</b>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74.12.19 1992. 1.15
	<b>&lt;법원·법무&gt;</b>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20돐에 즈음 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재판소구성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30돐에 즈 음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1975. 9.22 1976. 1.10 1978. 7.19 1982.12.15

## 5. 경제관계분야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요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시기에 있어서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동향은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헌법제정 직후부터 1980년 후반까지는 주체사상의 이념강화라는 측면을 반영하듯이 이 분야에 관한 한 특별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다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신국제경제질서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이 조성되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 분야의 입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1984년 9월 8일에 제정된 「합영법」과 1985년의 「합영법시행세칙」은 기존의 북한의 경제체제나 대외개방의 불가원칙에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나 당강령의 변화가 없이는 그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 (2) 주요법령의 소개와 입법동향

이 시기의 주요법령의 내용소개와 그 입법동향을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 주요법령의 소개

##### <<경제관계>>

##### ○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77.4.29)

- 북한은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가 없어지고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고 평



가하면서 「앞으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며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하여 토지정책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국토개발과 토지보호관리에서 나오는 제 원칙과 요구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도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1977년 4월 29일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하면서 동법의 시행을 「1977년 6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 토지법(1977.4.29)

-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1977년 4월 29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토지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총 6장·8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제1조~제8조)」에서 토지를 「전체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 밑에 <<밭같이 하는 땅은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제1조)」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의 확립을 선언함과 아울러 전국적 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제2조), 또한 국가의 임무로서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제3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제4조)」, 「토지보호·토지건설 등의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조직·진행할 것(제5조)」, 「토지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의 강화와 필요한 기술인재를 양성할 것(제6조)」, 「토지를 농업토지·주민지구토지·산림토지·산업토지·수역토지·특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하며, 토지의 관리·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부

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 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할 것(제7조)»,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 관리하고 알뜰이 다루도록 할 것(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2장 「토지소유권(제9조~제13조)」· 제3장 「국토 건설총계획(제14조~제18조)」· 제4장 「토지보호(제19조~제42조)」· 제5장 「토지건설(제43조~제62조)」· 제6장 「토지관리(제63조~제80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합영법(1984.9.8)

- 북한은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외채지불능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 국제적 신용도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차관에 의한 종전의 외자도입방식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 당시 중국이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자 이에 자극을 받아 서방국가의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기술의 도입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4년 9월 8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 제 10호로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동법은 총 5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합영의 기본(제1조~제5조)」· 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제6조~제9조)」· 제3장 「리사회와 경영활동(제10조~제17조)」· 제4장 「결산과 배분(제18조~제22조)」· 제5장 「합영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제23조~제26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해설에 대하여는 본원이 1994년 7월에 발간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북한법제분석 94-1)』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합영법시행세칙(1985.3.20)

- 북한은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외채지불능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 국제적 신용도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차관에

의한 종전의 외자도입방식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 당시 중국이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자 이에 자극을 받아 서방국가의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기술의 도입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4년 9월 8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 제 10호로 「합영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1985년 3월 20일에 북한의 정무원은 결정 제14호로 「합영법시행세칙」을 제정·공포하였다.

동법은 총 10장 7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일반규정(제1조~제9조)」·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제10조~제15조)」·제3장 「출자(제16조~제23조)」·제4장 「리사회와 관리성원(제24조~제30조)」·제5장 「물자구입과 제품판매(제31조~제39조)」·제6장 「로력관리(제40조~제44조)」·제7장 「외화관리(제45조~제52조)」·제8장 「결산과 분배(제53조~제60조)」·제9장 「합영회사의 해산(제61조~제67조)」·제10장 「분쟁해결(제68조~제71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해설에 대하여는 본원이 1994년 7월에 발간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북한법제분석 94-1)』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사회관계>>

-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76.4.29)
  -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가 내놓은 주체적인 어린이보육강령을 실현한 결과로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가 확립되고, 모든 어린이들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씩씩하게 자라고 있으며, 여성들은 어린이를 키우는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한다는 의도로 1976년 4월 29일에 북

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보육교양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어린이들은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 교육학에 의한 보육교육의 제 원칙과 요구들을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면서 동법의 시행을 「1976년 6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 어린이보육교육법(1976.4.29)

-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1976년 4월 29일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총 6장 5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제1조~제10조)」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혁명위업의 계승자이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은 「사회주의 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국가의 부담(제2조)」이라고 규정하며, 탁아소에 보내는 것은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어린이보육교양법은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이며(제4조),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제5조),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 한다(제6조)」고 규정하

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리고(제7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균중로선을 관철하며(제8조),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제9조)」고 규정하고, 동법의 어린이는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제10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2장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제11조~제21조)」·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제22조~제28조)」·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보양(제29조~제37조)」· 제5장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교양원(제38조~제43조)」·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제44조~제5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인민보건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80.4.3)

- 북한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인민보건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실시와 예방의학적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국민들이 누구나 다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며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참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한다는 의도로 1980년 4월 3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인민보건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보건사업분야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온갖 질병의 구속에서 영원히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의 마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면서 동법의 시행을 「1980년 4월 5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 인민보건법(1980.4.3)

- 「인민보건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1980년 4월 3일에 「인민보건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총 7장 4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제1조~제8조)」에서 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무병장수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위업을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사업(제1조)」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경우에는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가 실현되었고,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해 확고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더욱 공고·발전된다(제2조)」고 선언하고, 「사회주의 의학의 기본은 예방의학이며, 국가는 예방의학적 방침을 확고히 견지한다(제3조)」고 규정하며, 국가는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치료예방사업을 끊임없이 현대화·과학화하고(제4조), 보건일군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제5조),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관철하고(제6조),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무상으로 치료하여 주며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주고(제7조),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보건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제9조~제16조)」· 제3장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보호(제17조~제27조)」·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제28조~제32조)」·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 보장(제33조~제37조)」· 제6장 「인민의 참된 복무자인 보건일군(제38조~제43조)」· 제7장 「보건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제44조~제49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86.4.9)

- 북한은 국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환경보호사업을 끊임없이 전개하여 황폐화된 산천과 파괴된 생활환경을 낙원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평가하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개선·발전시킬 법적 담보를 마련한다는 의도로 1986년 4월 9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잘 보호하며 적극 개조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새롭게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조선로동당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며 후대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풍부한 재부를 물려줄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 담보의 마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 동법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이 세울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환경보호법(1986.4.9)

-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1986년 4월 9일에 「환경보호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총 5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제1조~제9조)」에서 환경사업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국가는 이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릴 것(제1조)」과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

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며, 국가는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릴 것(제2조)」을 규정하고, 국가는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산업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제3조),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요구이므로 공장·기업소·협동단체들에서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현대화 하고(제4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므로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환경보호관리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제5조),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과학기관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제6조)」고 규정하며,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이 세계인민들의 지향이며 요구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킨다(제8조)」고 규정하며, 동법은 「대기와 물·토양·생물을 비롯한 환경의 손상·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하며, 이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에 따른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제10조~제18조)」·제3장 「환경오염방지(제19조~제37조)」·제4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제38조~제46조)」·제5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제47조~제51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로동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78.4.18)

-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경제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노동은 북한에 있어서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이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으로 되었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강령이 빛나게 구현되어 사회주의로동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어,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한다는 의도로 1978년 4월 18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로동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것으로 되게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겨야 할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로동정책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 로동생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적 로동정책을 옹호·관철하며 로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실현을 다그치는 위대한 수단으로서의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하면서 동법의 시행을 「1978년 5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 로동법(1978.4.18)

- 「로동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1978년 4월 18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로동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총 8장 7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사회주의 로동의 기본원칙(제1조~제13조)」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며(제1조 제1항),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고, 또한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며(제2조 제1항·제3항),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로동이고(제3조 제1항), 나라와 사회의 주인·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며(제6조 제1항), 전일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로동이다(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북한의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며(제1조 제2항),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하고(제3조 제2항),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제5조 제1항·제3항)」고 규정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되고(제2조 제2항), 로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로동을 즐거운 것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로 되게 하는 것을 필수적 요구로 하며(제7조 제1항),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을 합법칙적 요구로 한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제4조 제1항),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 로동에 참가하고(제4조 제2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고(제8조 제1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달려져야 하며(제11조 제1항), 로동과 휴식을 옹계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고(제12조 제1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 로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투쟁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다(제1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하고(제6조 제2항),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종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 줄여 나가며(제7조 제2항),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제8조 제2항),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고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로동생산능률의 높은 장성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며(제9조 제2항), 계획의 일원화·세분화 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고(제10조 제2항),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제11조 제2항),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제12조 제2항), 사회주의적 로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로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제1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제14조~제24조)」·제3장 「사회주의 로동조직(제25조

~제36조)·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제37조~제45조)」·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제46조~제52조)」· 제6장 「로동보호(제53조~제61조)」· 제7장 「로동과 휴식(제62조~제67조)」·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제68조~제79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 입법동향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b>&lt;경제&gt;</b>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77. 4.29
	토지법	1977. 4.30
	합영법	1984. 9. 8
	합영법시행세칙	1985. 3.20
	태천발전소의 언제와 저수지들의 이름을 고칠 데 대하여	1987. 8. 6
	품질감독사업에 관한 규정*	1989. 1. 1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1.26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2. 9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에게 공훈광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2.18
	동대원 피복공장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2.23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공로있는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3.31
	상표 및 공업 도안심의등록과 그 리용법*	1989. 5. 5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6. 1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6. 7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설비관리규정*	1989. 6.20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 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7.13
	가내작업반, 부업반 관리운영 및 가내편의 봉사사업에 대한 규정*	1989. 8.11
	신의주방직공장에 국기훈장 제1호를 수여 함에 대한 정령*	1989. 8.31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 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11.30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 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12.21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5월18일 대형단조공 장건설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운 건설자들 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21
	모범적인 협동농장들에 모범경제림협동단 체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23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제1단계건설에서 영 웅적 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12.26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능력확장공사에서 모 범을 보인 사로청원들에게 <<김일성청년 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27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능력확장공사에서 로 력적 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27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과 대상설 비를 생산보장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28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소금공업부문 일군들에게 공훈제염공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12.31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제1단계 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사로청일군들과 사로청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1. 6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2. 8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제1단계 건설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 2.22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제1단계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일군들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0. 2.22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0. 5.31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0.10. 6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0.10.17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0.12.19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1. 2. 6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1. 4. 4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1. 6.26
	모범적인 기대공들에게 공훈26호기대공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7. 3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지질탐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정무원결정*	1991. 7. 5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에게 공훈탄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7. 6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에게 공훈탄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8. 3
	지질탐사부문 일군들에게 공훈지질탐사원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8. 6
	평양방직기계공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8. 7
	평양어린이편직공장에 계관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1. 8. 7
	국가지하자원보호관리규정*	1991. 8.20
	총련 동해상사주식회사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1.10.23
	난방시설관리규정*	1991.10.26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1.11.20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12. 6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2. 2. 6
	무산관산련합기업소 능력확장공사에서 공로있는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2. 6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정무원결정*	1992. 2.26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2. 4. 8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b>&lt;상사&gt;</b>	
	공업상품의 값을 낮출 데 대하여	1974. 2.26
	상품공급계약에 관한 규정*	1978.12.27
	편의봉사부문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1.22
	송도원려관에 상업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3.23
	황해북도 연탄군 상업관리소에 상업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89. 7.13
	옥류관에 상업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0.10.24
	대동강려관 종업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2.25
	대동강려관에 상업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12.25
	모범적인 단위들에 상업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4.14
모범적인 단위들에 상업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1.20	
상업부문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1.20	
모범적인 단위들에 상업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2. 6	
사회관계	<b>&lt;사회보장&gt;</b>	
	어린이보육교양법	1976. 4.29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76. 4.29
	양강도 후창군인민병원을 <<김형직인민병원>>으로 함에 대하여	1976. 9. 6
인체보험에 관한 규정	1978. 3.11	
인민보건법	1980. 4. 3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사회관계	인민보건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80. 4. 3
	인체보험규정세칙	1981. 1. 5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1985.10. 4
	환경보호법	1986. 4. 9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86. 4. 9
	무상치료제법*	1989. 7. 6
	박막관리규정*	1990. 2.20
	평양산원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0. 2.22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0. 3. 4
	약초자원의 보호증식에 관한 규정*	1990. 5.16
	어린이보육교양법*	1990.10.14
	평양시 제1인민병원 의료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1. 2. 7
		<b>〈노동〉</b>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년말특별상금을 줄 데 대하여		1974.12.26
로동법		1978. 4.18
로동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78. 4.18
로동규률규정		1978. 8.25
로동규률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78. 8.25
전체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특별상금을 수여함에 대하여		1989. 5.18
모범적인 로동정량부문 일군들에게 공훈로동정량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89. 7.21
전체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늘이는 시책을 정확히 집행할데 대한 정무원결정*		1992. 3. 6

## V. 1992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

### 1. 1992년의 북한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1992년의 북한헌법은 1972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20년만인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채택되었다. 이 헌법은 사회주의헌법의 제1차 개정(1948년)에 해당하고, 1948년의 북한헌법으로 부터는 통산 제7차 개정(1992년)에 해당하는 것이다.

1992년의 북한헌법은 구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국제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고 대외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수정하여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며 김정일체로의 후계권력체계의 기반과 권력의 승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구조를 부분적으로 다원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sup>44)</sup>

1992년의 북한헌법은 총 7장 17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헌법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년의 북한헌법은 「제4장 국방」의 장을 신설하고, 국가기관을 나열 및 병렬식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제6장 국가기구」의 장아래에 8개의 절에 걸쳐 각급 국가기관으로 분리·규정하였다. 특히,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던 종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종전의 「지방행정위원회」를 「지방행정경제위원회」로 개칭한 것이 특색이다.

둘째로, 국가지도이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년의 북한헌법은 제1장

44) '주석권한'의 약화와 '국방위원회'의 신설은 헌법개정 당시 당분간 김일성과 김정일 쌍두체제가 지속되리라는 예상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헌법개정 직후 가장 순탄하여야 할 권력구조의 안정구축이 오히려 어렵게 변질된 것이 지금의 북한실정이다.

정치(제1조~제18조)·제2장 경제(제19조~제38조)·제3장 문화(제39조~제57조)·제4장 국방(제58조~제61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즉, 이 헌법은 (1) 「북한의 유일대표성(제1조)」·「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적 정권성(제2조)」·「계급로선의 견지(제12조)」·「군중로선의 구현(제13조)」 등의 1972년의 북한헌법의 정책을 재확인하여 사회주의체제의 고수의지를 명백히 천명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이념을 포기하고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제3조), 아울러 주체사상의 원리인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여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제8조)」라는 규정을 두었다. (2) 주권의 소재에 대하여는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제4조)」으로 규정하여 종전의 「병사」는 삭제하면서 「모든 근로인민」을 추가규정하였는데, 「병사」를 삭제한 것은 북한의 현실이 병사를 노동계급으로 보고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모든 근로인민」을 추가한 것은 근로인민이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별개의 다른 계급적 특성을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의 중심으로서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45)</sup> (3) 북한의 사회주의발전단계에 대하여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실시」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강화(제12조)」로 규정하여 하향조정하였는데,<sup>46)</sup> 이는 대외관계개선 및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려는 북한의 현실을 헌법의 규정에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당의 역할에 있어서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라고 규정하여 조선노동당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구조의 다원화에 따른 권력누수와 대외개방에서 오는 사회전반의 이완현상을 막아보려는 조치로서 당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1992년의 북한

45) 장명봉, 북한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북한연구(1993년 봄호), 대륙연구소, 108~109면.

46)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관하여는 본 보고서의 31면을 참조.

헌법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은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제18조 제1항)」이며, 법의 존중과 집행은 「모든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의 의무(제18조 제2항)」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제18조 제3항)」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동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인민위원회(제120조 제4호)와 지방인민회의(제136조 제3호)의 권한과 임무의 하나로서 법준수집행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준법생활에 대한 헌법적 의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제81조)」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북한에서 그 동안 강조되어온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현상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6) 김정일의 지도노선과 후계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제14조)」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김정일의 지도노선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1992년의 북한헌법에 반영하였다. (7) 대외정책의 이념 및 원칙에 대하여는 종전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국가들과 단결한다」는 대외기본정책을 수정하여, 대외기본이념·활동원칙으로서 「자주·평화·친선(제17조)」의 3대원칙을 천명하고, 또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한다(제17조)」고 규정함으로써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적 연대가 붕괴된 국제환경의 변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헌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구체화로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규정(제16조)」과 「외국인·외국법인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제37조)」을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8) 남북통일문제에 대하여는 1972년의 북한헌법이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1992년의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문화, 기술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제9조)」라는 내용으로 수정·보충하였다. 이 규정에서 「전국적 범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에서의 3대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강조함으로써 향후 대남전략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9) 국내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구체화로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해 투쟁한다(제26조)」고 규정하고, 「기술혁명을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고리(제27조)」로 규정하여 기술발전문제를 경제활동의 최우선과제로 선언하고, 「농촌기술혁명을 통한 농업공업화(제28조)」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의 개척(제50조)」 및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의 촉진(제51조)」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인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제25조)」·「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제48조)」·「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제53조)」·「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 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제57조)」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북한의 경제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규정들의 실현성은 의심스럽고, 오히려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명목적인 규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 국방에 관한

여는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군사체제의 강화를 통한 내부체제의 정비와 결속을 도모하고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였는데, 무장력의 사명을 「근로 인민의 이익옹호와 사회주의체제의 혁명의 전취물의 보위, 조국의 자유·평화의 수호(제59조)」로 규정하고, 「4대군사로선」인 「천민무장화·전국요새화·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제60조)」을 명문화하고,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제61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세째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5장 : 제62조~제86조)」에 대하여는 1972년의 북한헌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다만 1972년의 북한헌법이 규정한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한 것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것을 곧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제68조 제2항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를 광범위하게 마련하여 놓고 있기 때문이다.

네째로, 국가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년의 북한헌법은 「제6장 국가기구」의 장아래에 제1절 「최고인민회의(제87조~제104조)」·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제105조~제110조)」·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제111조~제116조)」·제4절 「중앙인민위원회(제117조~제123조)」·제5절 「정무원(제124조~제132조)」·제6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제133조~제146조)」·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제147조~제151조)」·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제152조~제167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특색으로서는 주석의 권한 축소,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강화, 국방위원회의 분리·승격과 국가기관의 임기조정(5년으로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권력구조 개정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1) 최고인민회의의 경우에는 그 권한의 내용으로서 「주석소환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소환권」·「조약의 비준·폐기권」

등이 추가되고(제91조), 최고인민회의에 두는 「필요한 위원회」로서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외교위원회·통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종전보다는 확대되었으며(제98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대하여도 종전의 불체포권 외에 「처벌받지 않을 특권(제99조)」이 추가되어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반면에 최고인민회의의 의사정족수에 대하여 종전의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이상」에서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제93조)」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강화에 따른 만약의 사태에 대한 미연의 견제장치로서 판단할 수 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에 대하여는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제105조)」고 규정하여 종전의 「국가주권을 대표한다」는 규정을 수정하여 주석의 헌법상의 지위를 축소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 인정되던 국방에 대한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의 당연 겸직 및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무력의 지휘·통솔권」은 국방위원장에게 이관되었으며(제113조), 「외국주재 외교대표의 임명·소환의 발표권」이 그 권한으로 추가되었으나 종전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권」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의 공포권」으로 변경·축소되었고(제107조), 주석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소환하도록 하였고(제91조), 또한 주석의 종전 권한 중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직접 지도규정은 주석의 제의없이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위원들을 최고인민회의가 선거·소환하도록 하면서 국방위원회의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의 선거·소환에 대하여도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1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종전에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하나에 불과하던 것을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가 수행하던 군사와 관련한 권한·기능을 이관·일원화하여 1992년의 북한헌법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기관(제111조)」으로서 분리·독립시킨 것이다. 1992년의 북

한헌법이 규정한 국방위원회의 권한·기능으로서는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권」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되어 있고(제113조),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중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군사칭호의 제정·수여」·「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의 권한(제114조)과 「결정·명령」을 발하는 권한(제115조)이 국방위원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반면에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6조).<sup>47)</sup> (4)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하여는 종전과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에 있어서 군사에 관한 규정이 국방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는 규정(제120조 제4호)과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는 규정(제120조 제9호), 그리고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지도하는 권한이 신설되었다(제160조·제166조). (5) 기타 정무원, 지방주권기관으로서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제133조·제141조),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지방행정경제위원회(제147조), 사법기관으로서 재판소와 검찰소가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다만, 지방인민회의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국가 법집행을 위한 대책수립」·「해당 행정경제위원회의 부위원장 등의 임명·해임」의 권한이 신설되고(제136조), 그 의사정족수가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강화되었다(제13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위원회」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었고, 사법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재판소장·중앙검찰소장의 임기가 신설되어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동일하

47) 북한의 「국방위원회」제도는 1982년의 중국헌법이 「중앙군사위원회」제도를 두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전국의 무장력을 지도하도록 하여 군통수권을 국가주석으로 부터 분리한 것과 유사하다(장명봉, “북한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북한연구(1993년 봄호, 제4권 1호), 대륙연구소, 122면).



게 「5년」으로 규정되고(제153조·제163조), 판사·인민참심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각급 재판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제153조 제2항),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가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60조·제166조).

다섯째로, 1972년의 헌법은 「국장·국기·수도」만을 규정하였으나, 1992년의 북한헌법은 제7장 「국장·국기·국가·수도(제168조~제17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제170조)」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장」의 조항에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삽입하였다(제168조). ‘백두산’의 헌법규정에의 삽입은 김일성·김정일 일가의 적통의식을 명문화하여 헌법의 권력구조부문에서 시도한 김일성·김정일 쌍두체제를 상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1992년의 북한헌법은 그 해석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변화를 찾기 어렵지만, 대외개방정책과 권력구조의 변화가능성이라는 헌법규정에 근거한 입법방향은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향후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2년 4월 8일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북한의 초미의 관심사가 「핵문제」에 귀결되었고, 특정부문(예:경제관계)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입법 외에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다. 다만 이 시기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들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종전의 주체사상의 이념강화일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입법형식이 그 내용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 헌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요

이 시기(1992.4.9~1994.10.18)의 헌정관계의 입법동향에는 특이할 사항이 거의 없다. 다만, 헌법개정과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조직개편과 남북통일문제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에 관한 헌정관계의 입법동향을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주요법령의 소개와 입법동향

#### ① 헌정관계 및 국제·외무관계 주요법령의 소개

○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적용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협정>>을 승인함에 대하여(1992.4.9)

- 북한은 1992년 4월 9일에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결정으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적용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협정>>을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동 결정은 「이 협정이 공화국 정부의 반핵평화정책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국제적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리라고 인정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기탁국들중 어느 한 나라도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으며 우리를 반대하여 핵위협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적용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협정>>을 비준할 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제안을 심의하

고, 이를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정관계 및 국제·외무관계 입법동향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p><b>〈헌법일반〉</b></p> <p>헌법(1992)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들을 승인함에 대하여</p>	<p>1992. 4. 9 1993.12.10</p>
	<p><b>〈권력구조〉</b></p> <p>우리당과 우리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1992. 4.13</p> <p>인민무력부장 오진우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1992. 4.20</p> <p>조선인민군 차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1992. 4.20</p> <p>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1992. 4.20</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부장들을 해임함에 대하여 1992.12.11</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의 일부성원들을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하여 1992.12.11</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의 일부부장들을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하여 1993. 2.11</p> <p>윤기복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에 대하여 1993.10.29</p> <p>김달현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함에 대하여 1993.12. 7</p>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홍석형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1가계획1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에 대하여	1993.12. 7
	공진태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로 임명함에 대하여	1994. 1.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부장을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하여	1994. 1.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과학원 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하여	1994. 2.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부장을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하여	1994. 3.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부장을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하여	1994. 5. 5
	<b>&lt;통일문제&gt;</b>	
	북남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5. 7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5. 7
	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5. 7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17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불가침」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17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교류·협력」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17
	북남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9.17
북남최고위급회담개최를 위한 합의서	1994. 6.28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국제·외무 관 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적용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협정>>을 승인함에 대하여	1992. 4. 9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독립훈장계0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2.11. 2
	캄보자국가수반이며 캄보자최고민족리사회의장인 노로돔시하누크친왕전하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1. 2

### 3. 행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요

이 시기에 제정 및 개정된 행정관계분야의 법령들은 그 기간에 있어서 짧기도 하지만, 「핵문제」와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 경향이 있다.

행정일반부문의 「수도건설기념훈장과 수도건설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1992.6.24)」, 「농촌테제발표30돐기념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1994.1.5)」, 농림수산부문의 「농약관리규정(1992.6)」·「산림법(1992.12.11)」·「산림법시행세칙(1993.3)」, 건설부문의 「수리시설관리규정(1992.7)」·「공공건물관리규정(1992.10)」·「상하수도관리규정(1993.7)」·「건설법(1993.12.10)」, 교통부문의 「수상운수에 관한 규정(1992.10)」, 문교부문의 「문화유물보호법(1994.4.7)」 등이 그 예이다. 다만 국방부문의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1993.3.8)」와 같은 규정은 이 시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1993년 3월에 제정된 「과학연구 및 새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규정」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의 개혁'이라는 헌법 제50조의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주요법령의 소개와 입법동향

1992년의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관계분야의 주요법령의 내용소개와 그 입법동향을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행정관계 주요법령의 소개

#### <행정일반>

- 수도건설기념훈장과 수도건설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2.6.24)
  - 북한은 1992년 6월 24일에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서 「수도건설기념훈장과 수도건설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정령은 총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정령은 「주체조선의 수도 평양을 나라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건설하는 것은 수도건설자에게 있어서 더 없는 영예이므로, 수도건설자들의 로력적 위훈과 투쟁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수도건설기념훈장과 수도건설기념메달」의 제정과 「수도건설기념훈장과 수도건설기념메달수여에 관한 규정 및 훈장과 메달그림폴이」를 승인하고 있다.
  
- 농촌테제발표30돛기념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1994.1.5)
  - 북한은 소위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발표30돛기념」에 즈음하여 「농촌건설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사회주

의농촌경리제도가 강화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우리의 농촌은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한다」는 의도로 1994년 1월 5일에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가 정령으로서 「농촌테제발표30돛기념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제정·공포하였다.

동 정령은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농촌테제발표30돛기념훈장」의 제정과 「농촌테제발표30돛기념훈장수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있다.

#### <국방>

#### ○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1993.3.8)

- 한국과 미국의 <<팀스피리트93>>공동훈련에 대응하여 북한은 「공화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하면서 1993년 3월 8일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로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공포하였다.

동 명령은 총 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 전민, 전군이 1993년 3월 9일부터 준전시상태로 넘어갈 것(제1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부대들과 조선인민경비대·로동적위대·붉은청년군위대 전체 대원들은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원수들이 언제 어느때 덤벼들어도 일력에 소멸할 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는 것(제2조), 전체 인민들은 우리당의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한 손에는 마치와 낫,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 것(제3조)」을 규정하고 있다.

## <농림수산>

### ○ 농약관리규정(1992.6)

- 북한의 「민주조선(1992.6.28)」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2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약관리에서 나서는 제문제」를 규정한 「농약관리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이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그 목적으로 「농약관리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움으로써 농약에 의한 사건사고를 미리 막으며 그것을 농업생산에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농약 및 살초제(농약)를 생산하거나 다루는 기관·기업소 및 협동단체들과 공민」을 규정하며, 「농약을 국가에서 정한 규격대로 생산하고, 또한 국가가 정한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농약은 넣을 수 없고, 포장용기에 상표와 함께 검사증을 철저히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밖에도 「농약의 공급과 나르는 일」에 관한 규정, 「농약의 보관 관리」에 관한 규정, 「농약을 쓸 때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 「농약을 다루는 일군의 임무」에 관한 규정, 「농약관리는 잘하지 못하였을 때 해당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 북한은 1992년 12월 11일에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 회의가 법령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총 5장 4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산림법의 기본(제1조~제9조)」에서 그 목적으로서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이용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제1조), 적용대상으로서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을 규정하면서 그 소유주체로서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며(제2조), 산림의 종류로서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일반보호림·목재림·경제림·델나무림」을 규정하고(제3조), 국가의 의무로서 「산림건설총계획은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조



성하고 보호, 관리하며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림 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므로 산림건설 총계획을 적극적으로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며(제4조), 산림조성을 전 군중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므로 전체민민이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조성전문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관·기업소·단체에 담당임을 정하여 주고 책임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하고(제5조), 또한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우며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제6조), 산림자원이용질서를 바로 세우고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제7조),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대화·과학화를 다그치며 산림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제8조), 세계 여러나라들과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2장 「산림조성(제10조~제18조)」·제3장 「산림보호(제19조~제28조)」·제4장 「산림자원의 이용(제29조~제38조)」·제5장 「산림경영에 대한 지도통제(제39조~제47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산림법시행세칙(1993.3)

- 북한의 「민주조선(1993.3.26)」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1992년 12월 11일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의 후속조치로서 총 47개조로 구성된 「산림법시행세칙」을 제정·공포하였는데, 특히 동 시행세칙은 제1장에서 「시행세칙의 목적·규제대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동 시행세칙은 그 목적으로 「공화국의 산림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산림자원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국토를 보호하고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규제대상으로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을 포괄하여 규정하며, 기본원칙으로 「국가는 산림건설총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산림조성은 전 군중

적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산림자원은 종합적으로·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그 밖에도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대화·과학화를 다그치며 산림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리고, 세계 여러나라들과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건설>

#### ○ 수리시설관리규정(1992.7)

- 북한의 「민주조선(1992.7.12)」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6장 4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보수 등 수리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나서는 제문제」를 규정한 「수리시설관리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이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수리시설을 잘 보호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생산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농업부문의 수리시설을 관리하거나 수리시설에 의하여 마련된 물을 쓰는 모든 기관·기업소·협동농장」을 규정하며, 수리시설을 「농업생산에 쓸 물을 확보하고 공급하며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설비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수리시설의 보수」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관개관리기관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 제6장에서 「제재와 규제」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공공건물관리규정(1992.10)

- 북한의 「민주조선(1992.10.22)」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6장 3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건물의 등록과 관리·리용·보수 등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리용하는데 나서는 제문제」를 규정한 「공공건물관리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이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공공건물관리와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공공건물을 제때에 보수하고 알뜰히 관리하며 대를 이어가면서 쓸 수 있도록 잘 보존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는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리용하는 모든 기관·기업소·협동단체들과 공민」을 규정하며, 공공건물을 「기관·기업소 청사·학교·병원·탁아소·유치원 등을 비롯한 공동으로 허용하는 건물」로 정의하면서 「도시공공건물(시·읍·로동자구와 탄광·광산·립산·어촌·휴양지·료양지·유원지·야영지의 공공건물)·「농촌공공건물(농촌리의 공공건물)」, 또한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공공건물」·「협동단체소유공공건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공공건물의 관리는 「그것을 자기의 고정재산으로 등록한 기관·기업소(공공건물관리기관)」가 하도록 하며, 모든 공공건물관리 및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도시경영부와 해당 행정경제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공공건물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공공건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공공건물리용질서」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공공건물의 보수」에 관한 규정, 제6장에서 「공공건물의 관리 및 리용에 대한 통제사업」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상하수도관리규정(1993.7)

- 북한의 「민주조선(1993.7.2)」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상수도관리·하수도관리·상하수도시설물리용에서 지켜야할 질서 등 상하수도관리와 관련한 제문제」를 규정한 「상하수도관리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이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 동 규정은 상하수도시설물을 「먹거나 쓰는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건물과 구조물·수도관 및 부속설비·생활오수와 비물·산업폐기를 정화하여 처리하기 위한 건물과 구조물·하수도 및 그 부속설비들」로 규정하면서 상하수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도시와 로동자구·농촌의 상하수도시설물은

해당 도시경영기관이 관리하며, 농촌부락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물은 해당 상하수도관리기관이 관리하고, 하나의 상수도시설을 서로 다른 기관·기업소가 관리할 때에는 물을 공급하는 기관·기업소가 분기점의 제수변까지 관리하되 나머지 구간은 물을 쓰는 기관·기업소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상하수도시설물의 보수에 대하여 「상하수도시설물의 보수는 대보수와 유지보수로 갈라지는데, 대보수는 상하수도시설물의 기술상태를 완전히 제대로 고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작업과 수원지·배수지의 이미 있는 상하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살을 붙이고 보강하는 작업 및 물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안에서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거나 더 늘이는 작업을 말한다」고 하며, 유지보수는 상하수도시설의 정상적인 관리운명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못쓰게 된 것을 고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상수도관리에 대하여 「수원지·배수지·뽐프장을 위생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며, 물의 정화 및 소득을 잘하여야 하고, 또한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고, 먹는 물의 수질기준은 보건부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하수처리에 대하여 「오수정화처리에 힘을 넣어 오수를 정해진 기준대로 정하처리를 하여야 하며, 오수의 수질기준은 보건부가 정하고, 오수관에 우수관을 런결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기관·기업소들은 도시주민지구의 배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장마철 전후에는 우수뽐프장을 비롯한 물빼기시설물들을 정비하여 한다」고 규정하며, 상하수도시설물의 등록에 대하여 「상하수도관리기관이 관할지역의 모든 상하수도시설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군행정경제위원회에 문건으로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그 밖에도 「상하수도시설물리용」에 관한 규정 및 「상하수도관리기관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93.12.10)

- 북한은 「당과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령도에 의하여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과 웅장화려한 도시와 마을이 수많은 건설되며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이 부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1993년 12월 10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 회의는 법령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1993.12.1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 회의는 1993년 12월 10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총 6장 5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건설법의 기본(제1조~제9조)」에서 그 목적으로 「건설총계획작성과 실현·건설설계와 시공·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건설정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건설·항만건설·관개건설 같은데 큰 힘을 넣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건축물과 현대적인 공장·기업소·살림집·시설물을 수많은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훌륭히 보장하여 주고 있다」고 함과 아울러 「국가는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생산적 건설과 비생산적 건설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도시살림집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국가의 의무로 「건설은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

하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고(제3조), 건설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하는 것은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원칙이므로,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자연지리적 조건, 인민들의 수요와 생활감정, 풍습에 맞게 건설을 하도록 하며(제4조), 건설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요대상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물의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며(제5조), 기술혁명을 다그쳐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건설의 공업화·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며(제6조), 건설을 정규화·정상화하며 건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며 건설비를 낮추도록 하고(제7조), 건설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건설에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며(제8조), 세계 여러나라·국제기구들과 건설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킨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2장 「건설총계획(제10조~제16조)」·제3장 「건설설계(제17조~제27조)」·제4장 「건설시공(제28조~제36조)」·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제37조~제43조)」·제6장 「건설에 대한 지도통제(제44조~제53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교통>

### ○ 수상운수에 관한 규정(1992.10)

- 북한의 「민주조선(1992.10.11)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5장 8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짐실어나르기·부두작업과 짐의 보관·손님 태워나르기를 비롯한 수상운수와 관련하여 나서는 제문제」를 규정한 「수상운수에 관한 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이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인민경제의 수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수상운수부문의 기관·기업소(수상운수기관)들과 수상

운수수단들을 쓰는 기관·기업소·협동단체 및 공민」을 규정하며, 「우리나라 배에 의한 대외무역 짐나르기와 무역항에서의 짐작업 및 런던짐나르기는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집중수송·런대수송·짐함수송의 3대 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짐을 싣고 부리는 일을 적극 기계화하여 운수수단의 리용률을 높일 것」에 대하여 규정하며, 그 밖에 「짐임자」와의 계약관계 및 「손님」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짐실어나르기」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부두작업과 짐의 보관」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려객수송」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제재와 규제」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문교>

-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993.12.10)
  - 북한은 「민족문화유산을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7천만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그들의 애국애족의 열정과 통일열기가 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에 기초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한다」는 목적으로 1993년 12월 10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 회의는 결정으로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는데, 동 결정은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동 결정은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사회주의적 문화를 민족적 바탕 위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제1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수집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발히 벌릴 것이며(제2조),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서 손상된 유적·유물을 복원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것이고(제3조), 민족문

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전국가적·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며(제4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킬 것이고(제5조),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계속 심화해 나갈 것이며(제6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교양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제7조), 민족문화유산을 외곡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것이며(제8조),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보존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새로 제정실시할 것이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 문화유물보호법(1994.4.7)

- 북한은 1993년 12월 10일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 회의에서 결정으로서 채택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총9개조로 구성)」의 후속조치로서 1994년 4월 7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는 법령으로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결정한 「문화유물보호법」을 채택하였는데, 동법은 총 6장 5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제1조~제9조)」에서 그 목적으로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며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제1조), 문화유물의 대상으로 「문화유물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라고 평가하면서 「원시유적·성·봉화터·건물·건물터·무덤·탑·비석·도자기가마터·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생산도구·생활용품·무기·조형예술품·고서적·고문서·인류화석·유골 같은 역사유물」을 규정하며(제2조), 문화유물의 소유에 대하여는 「국가만이 소유하지만 상속받은 역사유물은 개별적 공민도 소유할 수 있고,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역사유물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국가의 문화유물보호관리정책으로서는 「올바른 문화유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물이 발굴수집되고 복구개건되었으므로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늘여 나가고(제4조),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므로,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역사적 사실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물을 보호관리하도록 하고(제5조), 문화유물보호관리는 전국가적·전사회적 사업이므로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물담당관리제를 실시하고(제6조), 또한 국가는 문화유물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하고(제7조),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일도록 하고(제8조), 문화유물보호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제10조~제15조)」·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제16조~제21조)」·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제22조~제35조)」·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제36조~제42조)」·제6장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제43조~제52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과학기술>

##### ○ 과학연구 및 새기술도입계약에 관한규정(1993.3)

- 북한의 「민주조선(1993.3.9)」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16개조로 구성된 「과학연구 및 새기술도입계약에 관한 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이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그 목적으로 「과학연구사업과 새기술도입에서 과학연구기관과 공장·기업소들이 호상 련대적인 책임을 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다그친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서 「과학기술 및 새기술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는 기관과 새기술을 도입하는 기관·기업소·협동단체」를 규정하며, 그 밖에 「과학연구 및 새기술도입에 관한 계약문건작성」에 관한 규정, 「과학연구 및 새기술도입계약서리행」에 관한 규정, 「과학연구 및 새기술도입계약에 따른 리익금처리」에 관한 규정, 「과학연구와 새기술도입에 관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② 행정관계 입법동향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b>&lt;행정일반&gt;</b>	
	수도건설기념훈장과 수도건설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2. 6.24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돛기념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3. 3.10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장병들에게 군사복무연한에 따라 수여하는 국가표창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3. 9.16
	농촌테제발표 30돛기념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4. 1. 5
	<b>&lt;내무&gt;</b>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4.23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4.23	
강원도 고산군에 모범체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6.17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개성시 장풍군에 군민일치모범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6.24
	강원도 원산시에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모범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7.15
	수풍발전소에 계관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7.15
	평안북도 창성군에 모범도시경영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8. 5
	평양시 중구역에 <<8월3일인문소비품>> 생산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8.20
	함경남도 금야군과 량강도 삼수군에 모범 교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9. 1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 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9. 4
	조천목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9.17
	강원도 고성군에 군민일치모범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9.23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데서 모범을 보인 시, 군(구역)들에 지방예산제모범 시, 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9.23
	함경북도 회령시에 모범도시경영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0. 7
	모범적인 단위들에 계관근위,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0.14
	동력설계사업소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1.18
	자강도 강계시에 지방예산제 모범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1.18
	평양시 선교구역에 모범보건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1.25
	평안남도 대동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2.13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공로있는 지식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12.14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2.28
	모범적인 군(구역)들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2.10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 모범교육구역 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2.10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구역과 황해북도 황주군에 지방예산제모범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2.10
	혁명임무수행에서 모범적인 사로청일군들과 청년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2.10
	황해남도 신천군에 모범보건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2.10
	황해남도 은천군에 모범도시경영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2.10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2.12
	모범적인 사로청단체들에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3. 2.17
	모범적인 사로청일군들과 청년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3. 2.17
	평양시 서성구역에 지방예산제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2.24
	황해북도 연탄군에 모범체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3.24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서 모범을 보인 군(시, 구역)에 군민일치 모범군(시, 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7. 1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7.22
	모범적인 군(시, 구역)들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군(시, 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8. 7
	모범적인 단위들에 근위칭호, 계관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8. 7
	평양시 선교구역에 군민일치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8.11
	평양시 평천구역과 황해북도 금천군, 강원도 문천시에 모범교육군(시,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9. 1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9. 6
	평양시 보통강구역과 대성구역에 모범도시경영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9.23
	황해북도 름산군에 모범삼림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9.23
	평양시 대동강구역과 강원도 철원군에 군민일치모범구역(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0. 6
	함경북도 화대군에 모범보건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0. 6
	모범적인 군(시, 구역)들에 지방예산제모범군(시, 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0.20
	전국공산주의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1.24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1.25
	평안남도 안주시에 모범도시경영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2. 8
	평안북도 향산군과 함경북도 모범보건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2.16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 관계	자강도 장강군, 함경남도 홍원군, 황해북도 토산군, 남포시와 우도구역에 군민일치모범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2.22
	평양시 순안구역과 평안북도 동림군에 모범교육군(구)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2.22
	평양시 중화군과 함경남도 요덕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2.22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에 모범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1.19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1.25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2. 9
	맡겨진 혁명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군들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4. 4. 9
	모범적인 단위들에 계관근위,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4. 9
	자강도 전천군에 상업근위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4. 9
	평안남도 순천시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4. 9
	평안남도 양덕군에 모범체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4. 9
	모범적인 사로청일군들과 사로청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4. 4.12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4. 5.26
	모범적인 사로청일군들과 소년단지도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4. 6. 4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6.20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 관계	<b>〈국방〉</b>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할 데 대한 결정*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34호)	1992. 6. 3 1992.10.31 1993. 3. 8
	<b>〈재무〉</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1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199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모범적인 일군들에게 공훈부기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3년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9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992. 4. 9 1993.11.19 1994. 4. 7 1994. 4. 7
	<b>〈농림수산〉</b> 농약관리규정* 화학비료취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벼종합수확기생산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정무원결정* 림업부문근로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량곡보관관리규정* 산림법 산림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산림법시행세칙을 승인함에 대한 정무원결정* 산림법시행세칙*	1992. 6.28 1992. 6.30 1992. 7.26 1992. 9.30 1992.11.14 1992.12.11 1992.12.11 1993. 1.20 1993. 3.26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단위들에 영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농업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영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8. 7 1994. 2.22
	<b>〈건설〉</b> 평양시건설총국 동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수리시설관리규정*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결정* 통일거리와 중요대상건설에서 공로있는 일군들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통일거리와 중요대상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건설자들, 군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공공건물관리규정* 생산건물관리규정* 공원, 유원지관리규정* 상하수도관리규정* 건설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건설법	1992. 6.17 1992. 7.12 1992. 7.15 1992.10.14 1992.10.14 1992.10.22 1992.12.02 1993. 6.20 1993. 7. 2 1993.12.10 1993.12.11
	<b>〈교통〉</b> 철도의 중량화를 적극 다그칠데 대한 정무원결정* 자동차운수에 관한 규정* 수상운수에 관한 규정*	1992. 5.27 1992. 8.26 1992.10.11
	<b>〈체신〉</b> 체신부문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3. 8.26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b>〈문교〉</b>	
	4.15문학창작단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2. 6.17
	<<고려성균관>>을 명명함에 대하여	1992. 8.20
	백두산밀영에 새로 건설된 고등중학교를	1992. 8.20
	<<정일봉고등중학교>>로 명명함에 대하여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9. 4
	집단체조공연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에게	1992. 9. 4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집단체조창작공연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	1992. 9. 4
	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교육부문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9.16
	압록강체육선수단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2.10.28
	대형집배 <<왕재산>>호, <<봉산>>호, <<순천>	1992.11. 4
	호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체육선수들과 지도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	1992.11.25
	화국 인민체육인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체육부문 일군들과 선수들에게 공훈체육인	1992.12. 7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에서 공로있는 영화예술부문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	1992.12.25	
함에 대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에서 공로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2.25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와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2.28	
공로있는 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12.29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와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2.12
	도예술선전대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3. 3. 5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와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9. 6
	교육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교육일군들에게 공훈교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3. 9. 7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기자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1.10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3.11.16
	과외교양부문과 예술선전대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3.11.20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와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11.25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1993.12.10
	국립연극단 창작가들과 배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3.12.21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와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1.25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와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2. 9
	문화유물보호법	1994. 4. 7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4. 5. 5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와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5.30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4. 6. 4
농업간부재교육대학을 <<김보현대학>>으로 함에 대하여	1994. 8.11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b>〈과학기술〉</b>	
	과학자들에게 공훈과학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12. 1
	사회과학원 일군들에게 공훈과학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12. 2
	과학연구 및 새기술도입계약에 관한 규정*	1993. 3. 9

#### 4. 민사관계분야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요

이 시기에 있어서 민사 및 형사관계법의 분야에는 새로운 입법이 나 개정이 거의 없었다. 다만 1994년 5월 25일에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입법목적에 종전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라는 표현이 삭제되는데 그칠 뿐 큰 변화는 없었다. 1992년의 헌법개정과 20여년의 기간경과에 따른 합리적·정비적 차원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다.

##### (2) 주요법령의 소개

이 시기의 주요법령으로서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1994.5.25)

- 북한은 1994년 5월 25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결정으로서 「민사소송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총 13장 18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제1조~제6조)」에서 그 목적으로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기업소·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을 규정하고(제1조), 국가의 의무로서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계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며(제2조),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하고(제3조),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하며(제4조),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적용범위로서는 「우리나라 기관·기업소·단체 및 공민들 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 권리·리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규정하면서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한 동법은 제2장 「일반규정(제7조~제22조)」·제3장 「소송당사자(제23조~제35조)」·제4장 「증거(제36조~제52조)」·제5장 「재판관할(제53조~제62조)」·제6장 「소송의 제기(제63조~제73조)」·제7장 「재판준비(제74조~제91조)」·제8장 「재판심리(제92조~제125조)」·제9장 「판결·판정(제126조~제145조)」·제10장 「제2심재판(제146조~제155조)」·제11장 「비상상소(제156조~166조)」·제12장 「재심(제167~제174조)」·제13장 「판결·판정의 집행(제175조~제182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5. 경제관계분야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동향

### (1) 개요

북한의 경제 및 사회관계법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1992년의 헌법의 개정 이후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상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보장'(제16조)과 '외국인·외국법인과외의 기업합영과 합작의 장려'(제37조)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경제관계법령들은 「핵문제」라는 한계적 상황에서도 꾸준히 제정 및 개정되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sup>48)</sup>들로서는 「외국인기업법(1992.10.5)」·「외국인투자법(1992.10.5)」·「합작법(1992.10.5)」·「합영법시행세칙(1992.10.16)」·「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세칙(1993)」·「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1993.1.31)」·「외화관리법(1993.1.31)」·「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1.31)」·「외국투자은행법(1993.11.24)」·「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1993.11.29)」·「세관법(1993.12)」·「개정합영법(1994.1.20)」·「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1994.1.21)」·「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1994.2.21)」·「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1994.3.27)」·「자유무역항규정(1994.4.28)」·「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1994.6. 14)」·「외화관리법시행규정(1994.6.27)」·「상업법(1992.4.9)」·「토지임대법(1993.10.27)」·「토지임대법시행규정(1994.9.7)」·「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1993.12.30)」 등이 있다.

---

48)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주요내용은 1994년에 본원에서 발간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 상세하게 해설되어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 (2) 주요법령의 소개와 입법동향

이 시기의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분야의 주요법령의 내용소개와 그 입법동향을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 주요법령의 소개

#### <<경제관계>>

##### ○ 새돈을 발행함에 대하여(1992.7.14)

- 북한은 「1979년에 화폐교환을 실시한 때로부터 10여년동안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더욱 강화된 조건에서 전체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늘이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국가적 혜택을 주기 위한 획기적인 시책을 실시하여 나라의 화폐류통규모가 비할 바없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화폐류통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1992년 7월 14일에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으로서 「새돈을 발행함에 대하여」를 제정·공포하였는데, 동 정령은 총 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동 정령은 그 목적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적인 화폐제도를 강화하고 화폐류통을 더욱 원활히 하는 것」을 규정하고, 새돈의 효력발생시기를 「1992년 7월 15일부터」로 규정하며(제1조), 1979년에 발행된 돈(낡은돈)의 효력소멸시기를 「1992년 7월 15일부터」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식량공급값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지불에 한하여 1992년 7월 16일까지 낡은돈을 쓸수 있고, 또한 지금까지 써오던 1원·50전·10전·5전·1전짜리 쇠돈은 앞으로도 계속 류통시킨다」고

규정하고(제2조), 새돈과 낡은돈의 교환시키는 「1992년 7월 15일부터 1992년 7월20일까지(6일간)」로 규정하면서 그 교환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제3조),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와 국민들이 낡은돈을 비법적으로 류용시키거나 새돈과 바꾸는 규정과 질서를 어기었을 때에는 법적제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제4조), 「동 정령의 집행을 위한 행정실무적 대책은 정무원이 세울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 상품공급 및 판매규정(1993.9)

- 북한의 「민주조선(1993.9.23)」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주문제 실시·상품의 배정과 공급·주민들에 대한 상품판매·상품공급에서 나오는 제문제」를 규정한 「상품공급 및 판매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은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인민들에게 상품을 골고루 공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문제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고르롭게 공급하는 인민적인 상품공급제도이며, 주문제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은 상품공급사업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방침이고, 상업기관·기업소들에서는 주문제에 의한 상품공급체계를 바로 세우며 상품수요연구를 잘해나가야 하고, 주문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상품주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상품을 생산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 상업기관·기업소는 상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 상품의 질을 높이며 상품공급과 판매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업시설들을 현대화하며 상업경영을 과학화·합리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상품배정과 상품공급」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주민들에 대한 상품판매」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지하자원법(1993.4.8)

- 북한은 1993년 4월 8일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법령으로서 「지하자원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총 5장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제1조~제8조)」에서 그 목적으로서는 「지하자원의 탐사·개발·리용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제1조), 적용대상으로서는 「금속·비금속·가연성광물 자원과 지철·지하수·광천자원」을 규정하면서 소유주체로서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며(제2조), 국가의 의무로서는 「지하자원 탐사는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지하자원 탐사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실현하며 지하자원을 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내도록 하고(제3조), 지하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지하자원 개발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지하자원 개발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하며(제4조), 지하자원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므로 지하자원의 리용질서를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하자원을 효과있게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고(제5조), 지하자원 탐사·개발·리용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이 부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제7조), 지하자원 탐사·개발·리용분야에서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제8조)」고 규정하고, 아울러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며,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체인민이 지하자원 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제2장 「지하자원 탐사(제9조~제18조)」· 제3장 「지하자원 개발(제19조~제33조)」· 제4장 「지하자원 이용(제34조~제42조)」·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제43조~제51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자재공급규정(1993.10)

- 북한의 「민주조선(1993.10.22)」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재공급의 계약과 자재공급, 공급된 자재의 합리적 리용과 보관관리 등 자재공급과 리용에서 지켜야할 제원칙들과 기본요구」를 규정한 「자재공급규정」을 북한의 정무원은 제정· 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자재공급사업을 잘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전반적인 경제건설에서 양양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를 주고 받는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등」을 규정하며, 자재공급사업에서 지켜야할 원칙으로 「모든 자재를 웃기관이 책임지고 아래 공장· 기업소는 현물로 생산현장까지 날라주어야 하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현실적인 자재공급계획을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자재공급계약을 맺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하며, 자재는 자재상사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자재를 생산에 앞세워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상업적 형태로 실현하여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독통제기관과 전문자재공급기관으로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자재공급계약체결과 그 리행, 자재의 공급과 소비, 보관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감독통제사업은 자재공급위원회와 도행정경제위원회 설비물자감독국(자재공급감독기관)이 맡아 수행하고, 자재공급계

약을 맺고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은 위원회·부·총국에 조직된 판매상사(판매소) 및 판매를 겸하는 자재상사·분상사·공급소가 하고, 자재를 확보하여 해당 공장·기업소에 공급하는 사업은 위원회·부·총국·연합기업소와 그 밖의 경제기관에 조직된 자재상사·분상사·공급소가 하며, 상사·판매소·공급소가 없는데는 기관·기업소가 맡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한 국가계획기관과 위원회·부·총국 계획부서들이 할 사업」·「계약당사자」·「계약을 맺는 절차와 방법」·「계약리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판매상사·자재상사·공장·기업소들의 제품판매와 자재공급」·「자재공급에서 상업적형태의 리용」·「자재수송」 등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자재의 절약과 합리적 리용」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자재의 보관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1994.4.7)

-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4월 7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는 결정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동 결정은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것이며(제1조),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고(제2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경제관리를 잘할 것이며(제3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양시킬 것이고(제4조), 국

가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이며(제5조), 본 결정의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울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에 위임한다(제6조)」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사회관계>>

### ○ 도인민병원에 관한 규정(1992.7)

- 북한의 「민주조선(1992.7.25)」의 '법규해설'에 의하면 총 4장 2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봉사·기술지도·림상실습의 보장 등 도인민병원사업과 관련한 제문제」를 규정한 「도인민병원에 관한 규정」을 북한의 정부원이 제정·공포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은 제1장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도인민병원을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주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연구사업과 의학부문의 대학 학생들에 대한 림상실습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도인민병원(도급인민병원 포함)과 따로 정한 림상병원」을 규정하며, 「도인민병원은 보건부와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가 지도하며 평양의학대학병원은 보건부가 직접 지도하고, 도행정경제위원회는 해당 도인민병원의 재정예산과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림상실습을 위한 교육조건을 보장사업과 기술지도를 보건부와 함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인민병원은 「의학대학 학생들의 림상실습과 의사·약제사 재교육실습에 필요한 전문가와 진단·실험검사실험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주민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하면서 도안의 치료예방기관들에 대한 기술지도사업·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연구사업·학생들에 대한 실습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장에서 「의료봉사·기술지도사업」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림상실습의 보장」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기술발전·질병에 대한 연구사업」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 입법동향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b>&lt;경제&gt;</b>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정무원결정*	1992. 6.10
	석탄공업부문일군들에게 공훈단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6.27
	새돈을 발행함에 대하여	1992. 7.14
	함흥지구화확공장들의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정무원결정*	1992. 8.22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2. 8.28
	평양도시경영부속품공장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 8.28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에게 공훈26호기대공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9.10
	외국인기업법	1992.10. 5
	외국인투자법	1992.10. 5
	합작법	1992.10. 5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10. 7
	합영법시행세칙	1992.10.16
	열관리부문 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11.27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세칙	1993.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93. 1.31
	외화관리법	1993. 1.31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1.31
	전열설비사용에 관한 규정*	1993. 2.27
	평양종합인쇄공장에 계관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3. 3.31
	지하자원법	1993. 4. 8
지하자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93. 4. 8	
계량법*	1993. 4. 8	

분야	법령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3. 9.16
	자재공급부문 일군들에게 공훈자재관리원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3. 9.21
	상품공급 및 판매규정*	1993. 9.23
	자재공급규정*	1993.10.22
	외국투자은행법	1993.11.24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1993.11.29
	세관법	1993.12.
	합영법	1994. 1.20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규정	1994. 1.21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1994. 2. 9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	1994. 2.21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994. 3.27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1994. 4. 7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에게 공훈탄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4. 4.22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4. 4.23
	자유무역항규정	1994. 4.28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1994. 6.14
	외화관리법시행규정	1994. 6.27
	<b>&lt;상사&gt;</b> 상업법 창광군에 상업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1992. 4. 9 1993.11. 7
	<b>&lt;토지&gt;</b> 토지임대법 토지임대법시행규정	1993.10.27 1994. 9. 7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사회관계	<b>〈사회보장〉</b> 도인민병원에 관한 규정*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평안남도 숙천군과 함경남도 함흥시 해안 구역에 모범보건군(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에 새로 건설한 주택 아소를 <<강반석택아소>>로 함에 대하여	1992. 7.25 1992.10.17 1992.10.22 1994. 2.27
	<b>〈노동〉</b>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1993.12.30

## VI. 결론 : 북한법을 보는 방법

북한법의 연구는 그 특수성 때문에 지역법제연구 내지 비교법연구로서도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총체적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법제를 분석할 경우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북한법의 연구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목적지향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 연구의 존재가치마저도 잃을 우려가 있다. 북한법의 연구범위는 향후 통일헌법안과 각 분야별 통일법제안의 마련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법연구에 있어서 통일지향적인 목적을 착오없이 추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북한법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북한법을 연구·분석하면서 통일지향적 목적을 아무리 확고히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입법형식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고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법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방법론 보다는 특정개별법령을 선택하여 해설하는 방식을 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북한법은 제정주체나 효력발생요건 내지 그 범위가 우리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며, 특정법의 연혁을 살펴보게 되면 해당 법령의 제정이 없는 입법부재의 상태에서도 유사한 규범력이 발휘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사회주의법의 대체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북한법의 존재형식의 독자성에서 연유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북한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개별법령으로서는 최근에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연혁·효력범위 및 한계와 경과규정 등은 북한법을 이해하기에 매우 적합한 법령이다.

북한의 민사소송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해방 직후에 마련된 총 310개조의 「민사소송법초안」은 채택되지 않고, '인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법의식(초안제2조)'에 따른 인민재판제도와 관련 사법제도 및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이후 이혼소송에 한정된 「리혼사건처리에 관한 규정(1962년)」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폐합한 민사규정의 기본규범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 1976년 1월 10일에 비로소 제정되었다. 이를 개정한 1994년 5월 25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 현행 북한의 민사소송법이다. 그러나 현행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이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규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입법계획을 염두에 두고 삭제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추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령의 연혁과 경과조치는 북한법 전반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이다.

최근에 개정된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기본원칙부문에서 민사소송법의 목적 중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상당히 세련된 입법형식과 법률용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민사소송법의 입법목적이나 운영방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146조는 개정전 구법 제148조와 동일하게 '제2심재판에서는 상소, 항의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김일성대학 발간 '민사소송법(1987)'은 「수령의 교시·지도자 동지의 말씀·당의 방침」을 제2심재판의 기준으로서 그 최고 법규성을 인정하여 법과 증거를 오히려 그 하위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식의 법규해석이 지속되는 한 개정 민사소송법의 한계도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법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경과에 따른 합리적·정비적 차원에서 법



을 개정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법을 개정하였을 때에 그 법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기본원리의 수정을 찾으려는 자세는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북한헌법은 제101조 제3호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 현행법령의 해석권을 부여하고, 제120조 제3호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 사법사업(司法事業)을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152조에서 재판소의 판결을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도록 명문화하여 사법적용의 이념배제적 기능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의 기본원리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에서의 개별법령의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으며, 문구상 그러한 뉘앙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입법기술적인 차원의 어구수정에 불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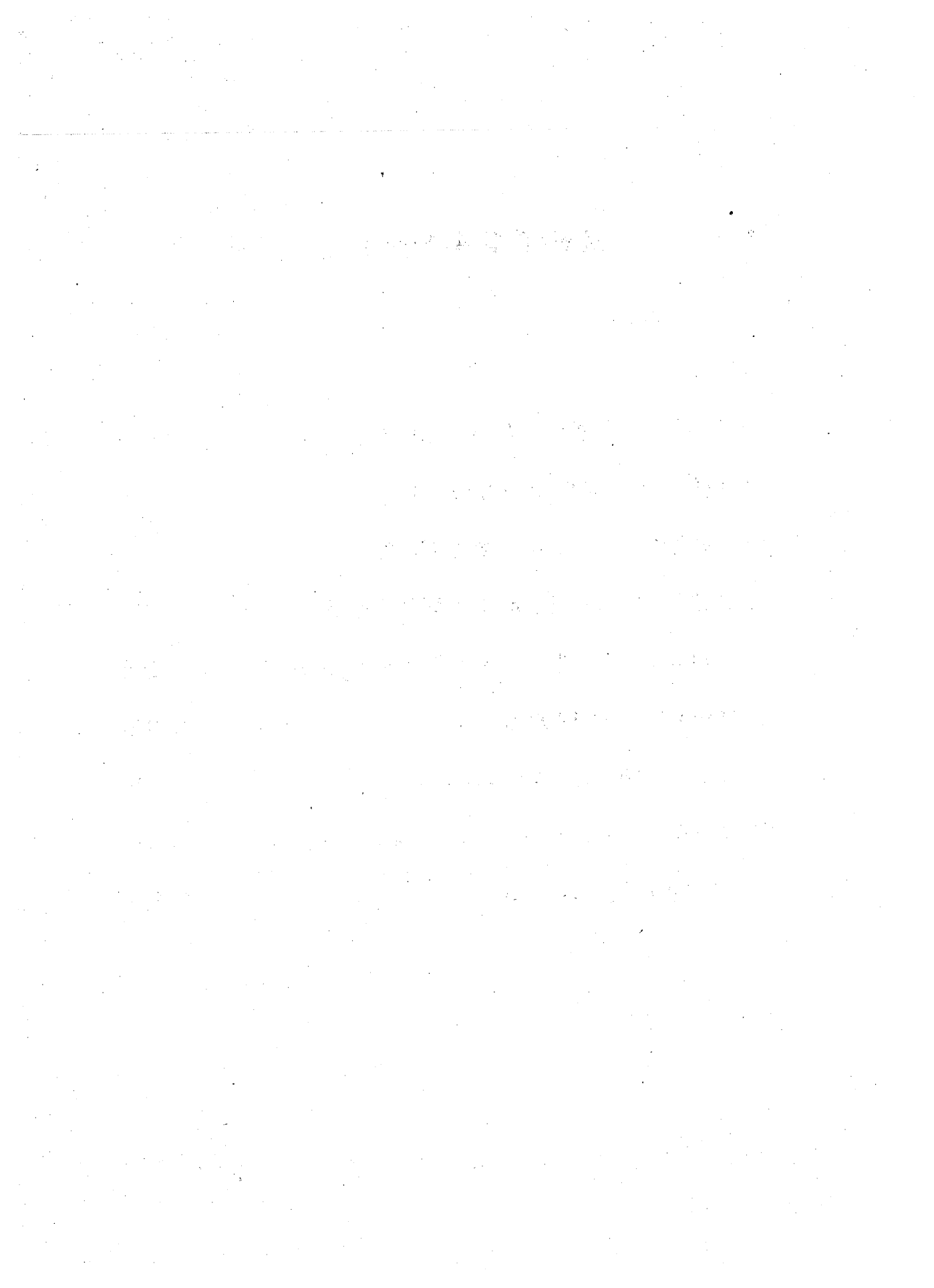
북한의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검사가 민사재판진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인데, 우리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도이다. 북한법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서 규제의 범위가 동일한 법분야라고 할지라도 그 운영이 우리와 다를 경우에는 올바른 접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북한법의 개별법령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관련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임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진다. 우리의 민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당사자의 철저한 동반자로서 인식되나 북한의 경우에는 공화국 변호사를 '개인영리업자'로 보지 않고 변호사의 활동을 변호사회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제도적 특수성을 간과하게 되면, 북한법제의 해석에 있어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대표적인 예로 삼아 '북한법을 보는 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북한법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북한법'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는 것 보다는 북한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북한법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진정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북한법연구 문헌(특히 북한헌법연구)들

중 연구수단으로서 김일성의 저작선집이나 북한의 중앙방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마치 북한의 정책노선이나 그 방향에 직접 대응하거나 몰두하는 것으로서 분단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북한법연구가 담당하거나 기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실적을 남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세가 필요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서 북한법연구의 임무와 목적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법연구는 북한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북한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실적이 공허한 상태에서 통일한국을 지향한다는 것은 어찌먼 사다리 없이 지붕에 올라가고자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향후 북한법연구의 본격화 내지는 실체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하고자 그 시제품을 제시하는 것이다.

※ 부록 :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의 강령·규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	251
○ 1948년 북한헌법의 제1·2·3·4차 개정부분 .....	26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62) .....	26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	27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	298
○ 조선로동당 강령(1946) .....	320
○ 조선로동당 규약(1946) .....	322
○ 조선로동당 규약(1980) .....	329
○ 공포일자미상의 법령목록 .....	35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9.8)

##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 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 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기업, 은행, 철도, 수운,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장려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성분·신앙·거주기간(居住期間)·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군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자기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

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간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로쇠(老衰),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國費制)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著作權)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제22조 여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

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 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죄악이며 엄중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 제3장 최고주권기관

###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회의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大赦權)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4장 국가집행기관

###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信用制度)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국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副相),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들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 1) 민족보위상
  - 2) 내무상
  - 3) 외무상
  - 4) 중공업상

- 5) 경공업상
- 6) 화학건설공업상
- 7) 농업상
- 8) 교통상
- 9) 재정상
- 10) 상업상
- 11) 교육상
- 12) 체신상
- 13) 사법상
- 14) 문화선전상
- 15) 노동상
- 16) 보건상
- 17) 무역상
- 18) 전기상
- 19) 수산상
-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상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부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역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있어서 해답을 주어야 한다.

##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부문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首位)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 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국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 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헌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명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용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 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

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응장한 발 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회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 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 1948년 북한헌법의 제1·2·3·4차 개정부문

### ○ 제1차 개정(1954년 4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 회의에서 헌법 제37조 8항<<도·시·군·면·리구역의 신설변경>>을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변경>>으로 개정하여 면을 폐지, 그외 58조의 내각구성조항의 일부 개정.

### ○ 제2차 개정(1954년 10월 30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에서 지방정권기관의 의결기관인 각급<<인민회의>>, 그 집행기관인 각급<<인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여 제5장과 이에 관련된 전 조항을 수정. 그외 제36조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개정.

### ○ 제3차 개정(1955년 3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 회의에서 제2차 헌법개정에 따르는 각급 지방정권기관의 권한변경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조항 및 내각구성조항의 개정. 그외 제53조의 내각권한에 대한 자구수정(지시를 명령으로)하여 개정.

### ○ 제4차 개정(1956년 11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에서 제12조 1항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62.10.18)\*

##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 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 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기업, 은행, 철도, 수운,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본자의 일체의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

\* 북한의 제5차 개정헌법.

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이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기업, 기업소, 중소기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장려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이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18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성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군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

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 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무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간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이 로쇠(老衰),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 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 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 의무인 동시에 최대 영예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죄악이며 엄중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 제3장 최고주권기관

###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인구 3만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회의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大赦權)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립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립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명령을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된 결정 및 명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副相),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약간명
3. 상들
4. 위원회 위원장 약간명

내각구성법은 따로 정한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상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

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부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 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데 자기의 모든 역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首位)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구역)·군·리(읍·로동자구)에 있어서의 지방주권기관은 해당 인민회의이다.

제69조 각급 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도인민회의는 4년, 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 인민회의는 2년

의 임기로 선거한다.

각급 인민회의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지방 각급 인민회의는 해당지역 내에서 법령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경제·사회 및 문화적 부문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지방 예산을 채택하며 국가 및 사회재산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 및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71조 지방 각급 인민회의는 법령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결정을 채택한다.

제72조 도·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이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기관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관할지역 내에서 모든 국가행정사업을 수행한다.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해당 인민회의 및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모든 인민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받으며 그에 복종한다.

제76조 상급 인민위원회는 하급 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하급 인민회의의 결정을 폐지할 수 있다.

제77조 상급 인민회의는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가 경과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79조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 부서 책임자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가 속하는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위원회의 동종 부서 및 해당 성에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의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로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용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首位)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

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 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 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버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 제 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 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12.28)

## 제1장 정치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제8조 근로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

다.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 제2장 경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들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동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

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제4장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국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국민은 과학과 문화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국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을 체포할 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국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

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 제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 제10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기관 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령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8장 정무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11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정무원 상무회의는 정무원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22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2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 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범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 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위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4.9)\*

##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

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

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영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영체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합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 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투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 세운다.
-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 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 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

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7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제88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

정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하는 법규들은 폐지한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0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은 낸다.

제10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1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1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부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기관 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집행을

-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5절 정무원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분야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회의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앞에 선서를 한다.

제132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과 그 집행형태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형태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제14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50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152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3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54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5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6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7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59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6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6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6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6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제16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1대2이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조선로동당 강령(1946.8.29)

조선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로동당은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목적하고 아래와 같은 과업을 위하여 투쟁한다.

1. 민주주의 조선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것
2.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전조선적으로 주권을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에 넘기도록 할 것
3. 일본인, 민족반역자 및 지주들의 소유토지를 몰수하여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북조선의 토지개혁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조선에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
4. 일본국가, 일본인단체와 일본인 개인소유 및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 광산, 철도, 운수, 체신기관, 기업소 및 문화기관 기타를 국유화 할 것
5. 일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을 국유화 할 것
6. 로동자와 사무원에게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하며 그들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고 여자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불할 것
7. 재산의 다소, 지식의 유무, 신앙 및 성별의 여하를 불구하고 20세에 달한 조선인민들에게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할 것
8. 전조선인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연설대회, 시위운동, 당조직, 동맹조직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
9. 여자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가족 및 풍습관계에서 봉건적 잔재를 숙청하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할 것
10. 인민교육의 개혁을 실시하며 각종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 교양사업에서 일본교육제도의 잔재를 숙청하며 재산형편과 신앙 및 성별을 불문하고 전조선 인민에게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조선민족문화 예술 및 과학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할 것

11. 근로대중의 생활을 위협하던 일본제국주의 세금제도의 잔재를 철폐하고 새로운 공정한 세금제를 실시할 것
12. 민족군대조직과 의무적 군사징병제를 실시할 것
13.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연방과 평화를 애호하는 각 국가, 각 민족들과 튼튼한 친선을 도모할 것

# 조선로동당 규약(1946.8.30)

## 제1장 총칙

제1조 본 당은 조선로동당이라 칭함.

제2조 조선로동당은 조선근로대중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로서 조선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부강한 민주주의적 조선독립국가 건설과 근로대중의 정치, 경제 및 문화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함.

제3조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대렬에 노동자, 농민, 로력인테리켄차들을 가입시킴.

당의 강령을 승인하고 규약에 복종하고 당의 일정한 조직 내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려는 자를 당에 가입시킬 수 있음.

제4조 당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조직됨.

가. 당 지도기관은 당회의 당대표회의 당대회에서 하층으로부터 상층까지 선거함.

나. 선거받은 당기관은 자기사업을 자기의 당단체에 정기적으로 결산보고함.

다. 당단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함.

라. 각급 당단체와 매개당원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상급기관의 지시는 하급기관의 엄격한 지도자가 됨.

마. 당 상급기관은 일상적으로 하급기관의 사업을 지도 검열함.

바. 당기관은 반드시 도·시(구역)·군·면·리(농촌) 공장, 기업소, 광산, 탄광 및 철도, 수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에 조직함.

## 제2장 당원과 그의 의무 및 권리

제5조 20세에 달한 남녀는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에 가입코저 하는

경우에는 당원 2명의 보증서를 첨부한 개별적 입당원서를 당세포에 제출할 것. 보증인은 당년한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피보증인과 적어도 1년 이상 함께 사업하면서 서로 아는 사람이라야 하며 보증인은 피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제6조 지원자의 입당인정은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에 대하여 결정하며 그 결정을 시(구역)·군 당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후 비로소 확입함.

제7조 당원의 의무는 아래와 같음.

- 가. 조선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립을 위하여 북조선에서 이미 얻은 민주개혁의 성과를 더욱 튼튼히 하도록 부단히 투쟁할 것.
- 나. 조선인민정권기관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국가 및 사회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인민경제건설에 모범적 역꾼이 될 것.
- 다. 당 상급기관의 결정과 위임을 철저히 충실하게 실행하며 또는 당규약을 엄격히 준수할 것.
- 라. 항상 자기의 정치 문화수준을 제고하며 또는 자기 맡은 사업과 기술에 정통한 능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
- 마. 일상적으로 근로군중과 연결을 가지며 비당원군중에게 당의 영향을 주며 인민정권의 정책과 결정을 해설 선전할 것.
- 바. 의무적으로 당회의에 참가하며 또는 당기관에서 진정하는 문제를 토의, 함께 참가할 것.
- 사. 입당금, 당비 및 의연금으로서 당에 물질적으로 원조를 할 것.

제8조 당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음.

- 가. 당의 각급기관에 있어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음.
- 나. 당회의와 당출판물에 있어서 당사업의 실질적 문제토의에 참가할 수 있음.
- 다. 당원은 당각급기관 및 당중앙위원회에까지 각항 문제의 신청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라. 자기의 활동과 행동에 관한 토의결정이 있는 일체 경우에는 친히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마. 당회의에서 근거와 리유가 있는 한 어떠한 당일꾼을 물론하고 비판할 수 있음.

## 제3장 당의 조직체와 그의 의무

### 제1항 중앙조직

제9조 당의 최고기관은 전당대회이고 그의 정기대회는 1년에 1회를 중앙위원회가 이를 소집함.

비상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 혹은 전당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함. 당대회의 대표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함.

제10조 전당대회 사업은 아래와 같음.

가. 강령 및 규약의 접수와 그의 수정

나. 당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의 선거

다. 당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의 결산보고의 청취 및 승인

라. 기본적 정치문제에 관한 당로선의 결정

마. 당 경리의 규정

제11조 중앙위원회 성원은 당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선거됨.

중앙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당대회에서 선거된 후보위원 중에서 보충됨.

후보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발언권만 소유함.

제12조 중앙위원회의 의무는 아래와 같음.

가. 대회와 대회 간의 당사업의 지도

나. 각 정당과 각 단체, 기타 기관과의 교섭

다. 당의 하급기관의 지도 및 당을 원조하는 민주주의적 사회단체에서 공작하는 당원의 사업지도

라. 중앙기관지 편집부 임명과 그의 지도

제13조 중앙위원회는 정치지도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정치위원회를 선거하고 정치위원 중에서 전당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선거함.

제14조 중앙위원회는 회의와 회의 간의 일반적 당사업을 지도하며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조직위원회를 선거함.

제15조 당의 실질적 사업지도를 위하여 중앙본부안에 아래와 같은 부

서를 들.

1. 조직부
2. 당간부부
3. 선전선동부
4. 로동부
5. 농민부
6. 사회부
7. 재정경리부

당중앙위원회는 부서변경과 각부의 직무와 의무 및 정원수를 규정함.

제16조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적어도 3개월에 1차씩 개최하여 당의 일상사업을 토의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당위원회 대표들을 참가시켜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함.

제17조 중앙위원회는 당결정의 실행을 검열하며 반당파 및 당강령규약을 위반하는 당원들의 비당적 행위와 투쟁하며 당내 사상통일과 당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위원 중에서 중앙검열위원회를 선거함.

제18조 전당대회는 당중앙본부의 재정경리를 검사하기 위하여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함.

## 제2항 지방조직

제19조 당의 지방기관은 도·시(구역)·군·면·직장·리(농촌) 당부와 세포(당위원회)임.

제20조 도에 있어서는 도당대표회가 도당단체의 최고기관으로 됨.

도당대표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1년 1회씩 소집함.

도당대표회에 참가할 대표인원수는 도당위원회가 정하되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요함.

제21조 도당대표회의 사업은 아래와 같음.

가. 도당위원회와 검사위원회 선거

나. 도당위원회 및 검사위원회의 사업결산보고의 청취 및 승인

다. 전당대회 대표자 선거

제22조 도당대표회의와 대표회 사이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한 위원수에 의하여 도당대표회에서 선거한 도당위원회가 그의 최고기관이 됨. 도당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도당대표회에서 선거된 후보위원 중에서 보충함.

제23조 도당위원회는 정상적 사업의 지도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무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함.

제24조 도당부의 부서는 아래와 같음.

1. 조직부
2. 당간부부
3. 선전선동부
4. 노동부
5. 농민부
6. 경리부

제25조 도당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적어도 2개월에 1차씩 소집함.

제26조 도당대표회는 도당부경리를 검사하기 위하여 도당검사위원회를 선거함.

제27조 시(구역)·군에 있어서는 시(구역)·군당대표회가 시(구역)·군당단체의 최고기관으로 됨. 시(구역)·군당대표회는 도당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함.

제28조 시(구역)·군당대표회의와 대표회 사이의 최고기관은 도당위원회가 결정한 위원수에 의하여 선거된 시(구역)·군당위원회가 됨.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정상적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무위원회를 선거함.

제29조 시(구역)·군당부의 부서는 당중앙위원회가 지정함.

제30조 면당단체의 최고 지도기관은 면당대표회가 되며 면당대표회는 도당위원회가 지정한 인원수에 의하여 면당위원회를 선거함.

제31조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대도시 내의 시당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당위원회를 조직함.

제32조 당의 기본조직은 세포임. 세포는 공장, 광산, 탄광, 철도, 리(농



촌) 농장, 학교, 행정기관, 가두, 기타 공공시설 등에 당원 5명으로부터 조직함.

당세포의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함.

당원 20여명부터 당세포는 당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함. 당원 100명 이상되는 생산, 기업, 운수직장 사무기관 혹은 리(농촌)에는 시(구역)·군당부의 결정에 의하여 적당한 위편으로 초급당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밑에 과, 계, 혹은 고대별로 세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분(分)세포를 조직함.

제33조 생산, 운수, 기타부문의 특수성에 의하여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써 당조직을 구성하며 그 기관의 사업범위는 당중앙본부에서 규정함.

제34조 전당대회 또는 하급기관 대표회와 당총회의 결정 및 선거는 반수 이상 다수의 가결을 받아야 접수되는 것으로 인정함.

제35조 각급 당위원회와 당세포총회는 그 위원회 위원과 세포의 당원 60%이상의 참가로써 성립됨.

## 제4장 당 규률

제36조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당내 종파분자들과 투쟁하며 당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당대렬에 잠입한 반동분자 및 이색분자들과의 투쟁은 각개 당원들과 당단체들의 신성한 임무임.

제37조 당기본단체에서는 당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당원자격을 상실할 만한 죄를 범한 당원들에게 당적 책벌을 적용하되 견책, 경고, 엄중경고 및 출당까지 시킬 수 있음.

출당에 대한 결정은 도당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후에야 확임됨.

(비고) 출당당한 당원들은 그 결정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와 전당대회에까지 상소할 수 있음.

제38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서 당 강령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당적 책벌을 적용하되 출당까지 시킬 수 있음.

제39조 어떠한 당단체를 물론하고, 당의 강령과 규약을 위반하거나 당

상부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그 당  
단체들을 해산시키고 그 당원들을 재등록할 수 있음.

제40조 당의 재정은 입당금과 당비 수입, 의련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함.

수입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수입 500원까지 1%

수입 1,000원까지 2%

수입 1,000원 이상 3%

## 조선로동당 규약(1980.10.13)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적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동동맹을 기초로 한 전 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견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활발히 진행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련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1장 당원

1.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2.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3. 조선로동당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 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 시(구역)·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는 당원 1명의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사회, 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을 진다.

-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 밑에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1개

월 내에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4)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특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5)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진 당원 3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시(구역)·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관할 도(직할시)당위원회가, 도(직할시), 중앙위원회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6)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준비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 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에서 삭제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후보당원이나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된 자의 입당 일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4.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로동과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노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 2)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한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과 로동계급화 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며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체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당의 규률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규률위반에 대하여는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3)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및 기술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주체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경제 및 선진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상황을 료해하며 자신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당원은 혁명적 균중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들을 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 5) 당원은 로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집단의 혁명화투쟁을 지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규률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하며 맡은 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노동생산 능력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솔선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하여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 6)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 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과 함께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어야 하며 국법과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 7)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 8) 당원은 혁명규율과 질서를 준수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안일과 나태함이 없이 혁명적인 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및 군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9)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현상 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당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10) 당원은 규정된 당비를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 5.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수행 및 당사업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2) 당원은 당회의에서의 투표권과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당원은 당회의에서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 막론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한 어떠한 지식의 준수도 거절할 수 있다.
-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에 어떤 신소나 청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6)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 7) 당의 규률을 위반하는 당원은 당의 책벌을 받는다.
    - ①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파벌조성 행위를 하거나 적과 타협하는 등 당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 ②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과오의 경중에 따라 견책,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 ③ 당 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 데 있다. 당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그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 ④ 당 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총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 결정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 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 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자격박탈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 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  
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규를 위반한 경우에 위  
반당원에 대한 책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위원회사업과 직  
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책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6. 종파 및 기타 다른 분파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규를 문제의 심의  
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군 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  
할시)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  
원의 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를 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8. 당세포는 항상 책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로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이 개선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책벌을  
해제하는 데 대한 문제를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이 받은 책벌을 해제하는 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해당 시(구  
역)·군당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받은 책벌의 해제는 그 처벌의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9.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은 당원에 대하여  
당세포는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  
(구역)·군당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10.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  
여 처리된다.

##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11.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 1)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 지도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 보고한다.
  - 2)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 당조직은 하급 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2.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 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지역에 일부를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 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분야의 전체 사업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분야의 일부 사업을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 당조직으로 된다.
13.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총참모부이다.

집단적 지도는 모든 당위원회의 기본활동지침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여 그것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개인적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4.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전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 2)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次하급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직할시)·시(구역)·군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는 당대회가 결정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와 초급 당위원회의 당원 수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당대표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준후보위원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 중에서 선출된다.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세칙에 따른다.

15.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의 제명 또는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원된 수만큼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만약 필요시는 당위원회 결원은 위원회의 후보위원이 아닌 다른 당원으로 보선될 수 있다.

초급 당조직 집행기관위원회의 제명 및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시행된다.

초급당이 하급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총회(당대표회의)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

- 는 초급 당위원회가 결원보충을 위한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급 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 당위원회의 책임비서(비서) 또는 비서(부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각급 당기관의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16.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당위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고 제기된 문제의 결정은 해당 당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17. 각급 당위원회 내에는 필요한 부서를 설치한다.  
 부서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가진다.
  18.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그들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당중앙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하며, 초급 당위원회 및 分初級 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비준하고 소수 당원을 가진 초급 당위원회 또는 부문 당위원회 및 당세포의 조직과 해산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비준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조직의 조직과 해산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을 막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실천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그 당조직을 해산하고 소속당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며 그들을 재등록하여 새로운 당조직을 조직할 수 있다.
  20.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건설의 제반 문제에 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 제3장 당의 중앙조직

21. 당의최고지도기관은 당대표이다.  
 당대표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표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

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 보충

3)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기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4)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23.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 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혁명대렬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기타 정당 및 국내외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24.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한다.

25.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26.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 인사 및 당면문제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 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28.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

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를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29.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30.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의 대표자의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차원을 보선한다.

## 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31. 도(직할시)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 당대표회이다.

도(직할시)대표회는 3년에 1회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대표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도(직할시) 당위원회는 도(직할시) 당대표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2개월 전에 하급 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2. 도(직할시) 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도(직할시)당위원회 및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 선출
- 3) 당대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출

33.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무장시키고 그들이 당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

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전결히 투쟁하도록 감독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 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 조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소관 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4.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전원회의를 4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며, 비서처를 조직하고,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도(직할시)당위원회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회의는 1개월에 2회 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비서처는 인사행정 등 당내문제에 대해 필요시마다 토의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35. 도(직할시)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를문제와 관련된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제의 및 출당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며 당규를 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 제5장 시(구역)·군의 당조직

36. 시(구역)·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시(구역)·군당대표회이다.  
시(구역)·군당대표회의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3년에 1회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시(구역)·군당대표회는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시(구역)·군당대표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1개월 전에 산하 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7. 시(구역)·군당대표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시(구역)·군당위원회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
  - 2) 시(구역)·군당위원회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 선거
  - 3) 도(직할시)당대표회의에 파견할 대표자 선거
38.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수행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을 무장시키고 그들이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보장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간부대렬을 강화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한다.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핵심을 연구 주지시키고 그대렬을 확대시키며 당원확대사업을 정기적으로 조직, 수행하며 당의 력량을 적절히 배치하고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과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

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농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 두리에 결속시킨다.

당기층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초급 당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매일 같이 지도·방조한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을 강화하고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지시하며 그 리행을 감독한다.

행정 및 경제 사업을 정확히 지도하여 혁명사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의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9.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하고 행정 및 경제 사업을 지도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개월에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문제제기시마다 인사행정 등 당내 사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그 결정을 집행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40. 시(구역)·군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반혁명적 중과행위 등 당의 유일 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를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심의 처리한다.

## 제6장 당의 기층조직

41. 당의 최하 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고 당 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고 대중 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42. 당의 기층조직의 조직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한다.  
당원 5명 미만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두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은 인접 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작업성격과 린접 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 단위의 당원을 합병하여 1개의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 3~4명이 있는 단위 또는 30명 이상의 단위에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 3명 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 2)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 당조직을 둔다.
  - 3) 초급 당조직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는 부문(마을)당 조직을 둘 수 있다.
  - 4) 초급당, 부문당 또는 당세포의 조직형성만으로는 당기층 조직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초급 당조직과 부문 당조직 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분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 5) 이상의 모든 당조직 형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실정에 맞는 다른 당조직 형성을 취할 수 있다.
43. 당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조직의 총회(대표자)이다.
  - 1)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마을)당의 총회(대표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초급 당조직이 500명 이상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산하조직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급 당

조직의 총회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44. 당의 기층조직은 1년 임기의 해당조직의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는 총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 부문(마을)당위원회는 각각 당총회(대표회)에서 선거하며 비서와 부비서는 각각 당위원회 회의에게 선거한다.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3회 이상,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당위원회는 1개월에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 이상 소집한다.

3) 중앙기관의 당조직은 당지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45. 당기층조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옹호 관철하도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2) 하급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핵심을 주지, 교양하며 부단히 그 대렬을 확대, 강화한다.

3)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한다.

당원들 속에 당규약 학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항상 혁명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고 모든 활동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의 임무를 부여하며,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의 당회의와 당생활 총화를 수행하며 당원의 당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고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한다.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를 방조한다.

- 4) 당원 적임자를 발견 등록하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며 심사 후 자격자를 입당시키며 후보당원과 새로 입당한 당원들을 교양 훈련시킨다.
- 5)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 두리에 결속시킨다.
- 6)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모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적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 7)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지시하며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 8) 모든 사업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및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행정 및 경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혁명운동을 촉진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법령에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 절약하도록 그들을 조직, 고무한다.
- 9)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 때 항상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10)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며 당비를 각출하며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7장 조선인민군대 내 당조직

46.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47. 조선인민군대 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8. 조선인민군대 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 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간부대렬을 강화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 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대렬을 확대, 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 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 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히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로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증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토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에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 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 조선인민군대 내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진행한다.
50. 조선인민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 지역의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공장 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8장 정치기관

51.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 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 수행하며, 해당 단위 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 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5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 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는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3. 중앙기관 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 정치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련결을 가져야 한다.
54.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동원키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5. 정치기관들을 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 제9장 당과 근로대중의 조직

56.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

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引轉帶)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 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57.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렬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동맹원들을 당 두리에 결속시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
58. 각급 당조직들은 근로대중의 간부대렬들을 강화하고 근로대중조직의 매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근로대중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제 10장 당의 재정

59.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60.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 공포일자미상의 법령목록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헌정관계	<b>〈헌법일반〉</b> 도·시·군(구역) 인민회의선거에 관한 규정 인민회의대의원선거절차에 관한 규정	
	<b>〈권력구조〉</b> 시(구역)·군행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인민회의 선언서 인민회의 창립에 대한 인민위원회대회 결 정서 임시인민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	
행정관계	<b>〈재무〉</b> 1947년도 인민경제부흥과 발전에 대한 예 정수자에 관한 결정서 198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4년 국 가예산에 대하여 6개년계획수행총화와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 거래세개정에 관하여 설계료규정 재정부에 관한 규정 중앙은행에 관한 규정 가마니(叭)검사규칙	
	<b>〈농림수산〉</b> 곡물검사규칙 농림국 임시조치시정요강 농촌로력관리규정 도급임금제·상금제 및 식량특별배급제에 관한 결정서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행정관계	수산부에 관한 규정 수산업에 관한 규정 특용작물 및 소채현물세 검사규칙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b>〈건설〉</b> 건설부문의 로력기준량 국토건설총계획에 관한 규정	
	<b>〈교통〉</b> 牛馬車 下車 及 自轉車團束規則 자동차 기타 차량교통단속규칙 해운법	
	<b>〈문교〉</b>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 대외문화연락위원회에 관한 규정 혁명사적지도국에 관한 규정	
	<b>〈과학기술〉</b> 국가기술자격심사위원회설치에 관한 결정서	
민사관계	<b>〈민법일반〉</b> 재산관리법	
	<b>〈민사소송법〉</b> 민사소송법(초안)	
형사관계	<b>〈법원 법무〉</b> 군사행동구역에서의 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 재판소 및 검찰소에 관한 규정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경제관계	<b>〈경제〉</b> 상품류통의 원활을 위한 결정서 섬유공업관리소령	
사회관계	<b>〈사회보장〉</b> 검역소직제에 관한 건 결핵보건소 직제 사회보험·휴양소·물자공급소규정 성병보건소 직제 수의방역사업에 관한 규정 아편공업관리소령 전염병연구소직제	
	<b>〈노동〉</b> 노동정원 및 로력기준제정에 관한 규정 평균임금계산규정 협동농장노동보수규정	



북한법제분석 94-2 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

---

1994년 12월 25일 印刷

1994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7,000 원

